

# 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모색

- ◆ 일시 : 2003년 11월 5일(수) 15:00~18:30
-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 ◆ 주최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 주관 :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진행 순서

14:50~15:00	등 록
15:00~15:05	개회 선언
15:05~15:20	인사말 및 경과 설명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15:20~15:30	참석자 소개
15:30~16:50	주제 발표 ▶ 발표1 :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교육의 정책방향 (이대훈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연구원) ▶ 발표2 : 공공기관 및 인권시민단체의 인권교육 실태와 과제 (허상수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교수) ▶ 발표3 : 초·중등 정규학교의 인권교육 실태와 과제 (고병헌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발표4 : 국가인권교육계획의 세계적 맥락과 외국의 실태 (한홍구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소장)
16:50~17:00	휴 식
17:00~18:00	인권교육 관계자 토론 ▶ 토론1 : 국가인권교육계획의 배경과 추진 방향 (강순원 한신대 교수/김중섭 경상대 교수) ▶ 토론2 : 인권시민단체 인권교육의 현실과 과제 (정선애 인터넷시민학교 사무국장/ 권혜진 전 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 담당) ▶ 토론3 : 학교의 인권교육 현실과 과제 (김한민 안암초교 교사/이범희 양평고 교사)
18:00~18:30	종합토론
18:30	폐 회

# 목 차

## 주제발표

-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교육의 정의와 정책방향 ..... 1
- 정부기관 인권교육 실태와 과제 ..... 15
-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교육 실태와 과제 ..... 39
- 초·중등 정규학교의 인권교육 실태와 과제 ..... 73
- 국가인권교육계획의 세계적 맥락과 외국의 실태 ..... 111

## 부 록

- 공공기관 인권교육 실태조사 질문지 ..... 123
-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교육 실태조사 질문지 ..... 133
- 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질문지 ..... 145
- 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분석표 ..... 155

## 참고자료

- 유엔 인권교육 10개년계획 요약 ..... 177
-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유엔 가이드 ..... 183
- 유엔 인권교육 10개년계획 사후조치 연구(E/CN.4/2003/101) ..... 199

#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교육의 정의와 정책방향

이 대 훈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연구원)

## 순서

1. 인권과 국가인권교육 ..... 3
2. 국가인권교육의 일반적 정책원리 ..... 5
3. 민주사회의 연관성 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의 정책원리 ..... 7
4. 대상 분야별 국가인권교육 정책원리 ..... 8
5.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수준의 정책과제 ..... 10

#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교육의 정의와 정책방향

-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

이 대 훈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연구원)

(요약) 이 글에서는 국가인권교육의 의의, 기본목표, 일반적 정책원리, 주제별 정책원리, 대상별 정책원리, 정부의 역할, 단계별 정책목표와 우선 검토과제를 제안하는 바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 토론회에서 검토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검토과제)
1. 국가인권교육계획의 의의
  2. 국가인권교육의 일반적 정책원리의 타당성과 종합성
  3. 주제별 정책원리와 대상 분야별 정책원리에 대한 접근방법의 타당성
  4.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5. 단계별 정책목표
  6. 우선 검토과제

## 1. 인권과 국가인권교육

### 가. 인권의 의의

인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을 누구나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 및 이를 제약 없이 제공할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다. 동시에 인권은 한 사회가 모든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 및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통하여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적 문화적 공유(인식적 규범적 공동체)**의 원리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과 양대 국제인권규약 및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등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합의되었듯이, 인권은 다른 모든 법적 권리에 앞서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규정한다. 때문에 이러한 국제법에서 규정된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 (비엔나 선언 3절)을 갖는다. 이러한 모든 인권을 무조건적으로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때문에 인권은 그 보편적, 불가분적, 불가침적, 총체적 의미를 특성으로 갖고 있으며 이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갖는 기본적인 권리규정이다. 때문에 국가의 의무 조항이나, 보편적 적용 등의 특성을 외면 또는 경시하는 접근은 온전한 인권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 보편적 적용은 최소의 필수적인 기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의 가치 기대치를 담는 일반적인 사회윤리 역시 인권적인 접근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인권은 보편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권리의식 역시 인권적 접근과 차이가 난다. 이러한 특성들은 인권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온전한 인권교육으로 인정되기 힘들다.

## 나. 인권 교육의 의의

인권을 보호, 신장하는데 요청되는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모든 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곧 인권의 하나이며,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권교육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 역시 국가에 있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에서는 인권교육을 다음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서,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인권교육의 목표>

-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 추구
-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 국가, 민족, 종교 및 언어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증진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세계인권선언 26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조,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29조, 여성차별철폐조약 10조, 인종차별철폐조약 7조, 비엔나 선언 33-34항, 비엔나행동프로그램의 78-82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는 결코 방기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다.

또 인권의 의의로부터 인권교육은 인권적 접근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과 다르게, 인권 교육은 인권적 접근이 갖고 있는 특성(국가의 의무, 보편적 적용, 상호 불가분성, 불가침성 등)을 가장 밑바탕에 두는 교육이어야 한다.

동시에 인권 교육은 인권의 보장과 실현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계각층 시민 및 국가기관 및 사회기관의 인권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통하여 무언가 변화를 야기하는 행동과 분리될 수 없다. 즉 인권의 불가침성, 보편성, 국가와 사회의 인권보장 의무 및 국제인권법의 규범과 기준의 국내화를 실현하도록 하는 국가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과 별도로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 교육은 일정한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를 추구하고 촉진하는 교육의 성격을 가진다.

## 2. 국가인권교육의 일반적 정책원리

### 가.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이 강조하는 인권교육 원리

첫째로, 각 국제인권법에 담긴 모든 규범, 개념, 가치에 대한 최대한의 인식과 이해를 창출하여, 사회와 개인의 삶 전체 속에서 인권이 갖는 핵심적인 역할과 위치가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로, 종종 무시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권이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갖는다는 점이 공유되는, 포괄적 교육이어야 한다.

셋째로, 인권교육은 정규, 비정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연령 집단과 사회 모든 부문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넷째로,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상황의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로, 인권교육은 민주주의, 발전(development), 인권 등의 영역이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또 서로 강화시켜 나가는 관계에 있다는 성찰로부터, 민중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되는데 기여해야 한다.

여섯째로, 인권교육은 모든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하여 학습자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 나. 한국 인권교육의 일반적 정책 원리

이상을 기초로 추가적인 논의와 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인권교육의 정책원리를 이렇게 정식화할 수 있다.

### (1) 적용의 보편성

인권교육은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생활공간에서의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2) 인권 특성의 인지

인권교육은 다른 일반적인 사회규범과 달리 인권 규범이 갖고 있는 기본권적 성격, 불가분성, 불가침성, 보편성, 국가의 의무, 공동체성에 초점을 둔 인지향상을 추구한다.

### (3) 연관성의 교육

인권규범은 민주주의, 합리적인 개발전략, 법치, 환경보호, 평화, 남북한 화해와 통일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이에 공통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권론이 각 과제와 갖는 연관성 속에서, 그 연관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인권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 (4) 예방으로서의 교육

인권교육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중추적인 방법이다.

### (5) 갈등해결의 규범 창출

인권 규범은 다양한 사회갈등의 원천으로서 차이에 대한 폭력적 접근 (각종 차별 및 대립적 이해충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갈등조정의 공통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사회갈등의 합리적 조정에 기여한다.

### (6) 제도적 지원과 인적 축적

인권교육이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인적 역량을 양성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포함된 계획이 인권교육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 (7) 권한부여(자력화, empowerment)

당사자가 처한 현실에서 당사자와 공동체가 인권문제를 인권규범에 의거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참여와 의사표현의 권리등 기본권의 완전한 보장 및 결정과정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8) 유기적 협력

교육관련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기관과 집단간의 다층적 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구현해야 한다.

(9) 사회변동과의 조응

사회변동에 따른 인권과제에 대한 대비와 신축성

(10) 민주적 검증

민간단체의 참여, 실행의 투명성, 공적 책임성

### 3. 민주사회의 연관성 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의 정책 원리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은 인권교육이 민주주의 및 개발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교육이 갖는 연관성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적시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회적 의제 (social agenda) 속에서 인권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주제별 인권교육의 정책원리'라고도 부를 수 있다.

(1) 탈냉전시기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2) 민주주의 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3) 평화추구의 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4) 시민/주민 자력화(empowerment) 전략으로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5) 사회갈등 조정의 기초로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6) 여성을 사회발전의 주역으로 세우는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7) 공교육 개혁에서 인권교육이 차지하는 의미

(8) 총체적 인성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9) 필수 성인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10)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11) 법집행상의 정의를 위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12) 군대와 사회의 관계정립을 위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13) 사회보장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14)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정립을 위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15) 언론개혁을 위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16) 신 통신기술시대의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 (17) 사회발전과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 (18)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 (19) 세계화시대의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예시)**

(1) 탈냉전시기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 냉전이라는 국제-국내 갈등이 원천으로서 인간적인 삶의 조건(인권)에 대한 욕구의 추구 및 해결방법의 폭력화에 대한 이해
- 불가분의 인권 (삶의 조건)에 대한 이념, 안보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의거한 임의적 선택이 가지는 반인권성
- 인권과 갈등조정, 평화, 참여, 자력화에 대한 정책상의 분절적 접근이 갖는 폐해성
- 인간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평화적 총체적 접근으로서 인권론이 갖고 있는 필수성

(3) 평화추구의 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의 의의와 원리

- 차이의 폭력적 해소와 대비되는, 차이의 이해 및 인정을 바탕으로 두는 평화적 접근으로 인권규범이 갖고 있는 평화지향적 성격
- 폭력의 근원으로서 차별,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권의 의의
- 국내적 차별과 국제적 폭력으로서 전쟁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평화국가·평화사회의 기초로서 인권교육
- 유엔 및 국제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증진, 외교 및 국제이해의 감수성 및 지성향상으로서 인권교육

**4. 대상 분야별 국가인권교육 정책 원리**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은 인권교육의 대상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

- (취약집단) 여성, 아동, 노인, 소수자, 난민, 선주민, 극빈자, HIV보균자/에이즈환자 등
- (특수지위)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국제 공무원, 개발담당 공무원, 평화유지단, 민간단체, 언론, 행정 공무원, 국회의원 등
- (기관) 교육기관, 교육자, 민간단체, 노동자와 피고용인 조직, 노동조합, 대중매체, 종교단체, 지역사회조직, 가족, 독립적인 정보화센터, 자원센터, 훈련센터 등

기존의 국제인권법 체제는 사회의 주요 구성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기준을 풍부히 담고 있다. 이러한 대상집단별 인권기준은 모두 종합되어 각 대상의 인권교육 시행의 기본 원리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여기에 분야별 인권단체들이 축적한 인권교육 경험을 통하여 각 집단의 인권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 유의할 점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집단의 인권교육에서는 상기 인권교육의 10가지 정책원리가 항상 반영되어야 한다.

### (예시)

#### <아동의 인권 기준>

-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성장에 필요한 기본 의식주 조건의 보장
- 나이, 성별, 인종, 언어, 종교, 국적, 종족 기타 신분 및 아동의 부모의 신분과 지위에 따른 차별의 폐지
- 충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
- 교육받을 권리 (무상 초등교육, 차별 없는 중등 및 고등교육 기회)
- 사회적 경시 등 물리적·심리적 학대의 금지
-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정에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 <노인의 인권 기준>

- 기본 의식주 조건의 보장
- 사회보장, 안전 보호, 의료서비스의 제공
- 고용, 주거,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 폐지
- 사회적 경시 등 물리적·심리적 학대의 금지
-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활동 참여의 권리
- 노인 복지정책 결정에의 참여의 권리

#### <여성의 인권 기준>

- 기본 의식주 조건의 보장
-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
- 충분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
-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 폐지
-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기회
- 임금, 수당, 구직기회, 승진에서의 평등한 기회
-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생활적 직업상의 배려
- 평등한 사회보장 서비스
- 폭력과 착취 및 멸시를 당하지 않을 권리
- 여성관련 정책과 결정에 참여할 권리

## 5.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수준의 정책과제

### 가. 정부의 역할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은 각국 정부 및 각 행위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정부: 국가인권교육계획 개발  
정규 교육 체계에 인권교과과정을 도입 또는 강화  
인권 정보화 캠페인의 주도  
인권자원, 정보, 훈련센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 개방  
기금 모금, 지원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조정, 이행에 중심적 역할

민간단체와 전문가그룹: 적극적 참여를 위해 기술 및 재정 지원, 훈련 제공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유엔 교육 프로그램과 인권분야 공공 정보화 프로그램을 조정

유엔 인권센터: 각 정부에 인권교육, 훈련, 정보, 특별장학기금, 자문서비스프로그램 등을 제공. 국제분야와 개발 관련 관료와 평화유지단에 대한 인권 훈련

유엔 인권조약 모니터 기구, 인권위원회, 인권소위 등: 인권교육의 증진 장려

유네스코: 인권교육 프로젝트를 구상, 이행, 평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

기타 유관 기구: 유엔사무국, 인권교육활동 관련 프로그램, 유엔아동기금, 국제노동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유엔개발계획, 유엔자원봉사자, 유엔환경계획, 유엔인간정주센터, 사회개발과 인도주의 센터, 유엔대학, 기타

여기서는 우선 정부의 역할에 관해 주목하고자 한다. 정부는 인권교육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1) 국가인권교육계획 개발, (2) 정규 교육 체계에 인권교과과정을 도입 또는 강화, (3) 인권 정보화 캠페인의 주도, (4) 인권자원, 정보, 훈련센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 개방, (5) 기금 모금, 지원 강화 등의 의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필수 과제로서 이러한 요소의 구비 없이는 인권교육의 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인권보장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된다.

## 나. 국가인권계획상의 단계별 정책 목표 설정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에서 상술한 인권교육의 정책원리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외국의 국가인권계획 및 실행 실태를 참조하면서 실제 여건을 고려한 초기, 중기, 지속 과제를 설정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위에서 상술한 모든 정책 원리에 충실하여야 하며, 초기 추진 주체가 특히 이러한 정책 원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본 연구진의 중간검토로서 다음과 같은 초기 중기 과제가 제시될 수 있다.

참고로 해외 국가인권교육 실행사례로부터 우리는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판단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 \* 부처간 협의 체제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추진 기구 형성 또는 기존 인권기구의 영역 확대
- \* 이 추진 기구 또는 확장된 기구에 민간부문의 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
-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방차원의 공식 인권교육활동으로의 확산, 그 제도화
- \* 인권교육의 교재, 프로그램, 강사진, 전문연수를 전담하는 '훈련·자료센터'의 설치 여부
- \* 정기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인권교육 보완 강화의 기제

### ○ 초기 과제

- 인권교육실태 파악 (현황, 수요, 문제점, 잠재력, 프로그램, 교재, 인적 자원, 재원 등)
- 인권교육 정책방향의 협의 과정 (광범위한 청취 과정, 참여 유도: 대상 주제별 집단별)
- 인권교육 장단기 우선 분야의 설정
- 정부의 인권교육 의무규정 세부화 (공교육내 인권교육, 각종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교육관련 기구 및 사회 각 전문분야에서 인권교육 증진, 인권교육에 대한 공공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
- 주제별, 대상별 인권교육 전략의 수립
-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전문가-실천가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 전반적인 교육개혁 프로젝트와 인권교육 심화를 연계시킴
- 인권교육자료 아카이브 형성
- 재정 확충 계획
- 국가인권교육계획의 수립과 공표
- 인권의식 향상 공공캠페인
- 인권교육 인력양성 훈련프로그램 가동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

○ 중기 과제

- 인권교육훈련센터 설립
- 중앙 및 지방 부처-기구간 조정 협력의 체계화
- 인권 연구 지원 강화
- 국가인권교육 초기 평가 및 계획의 수정 보완
- 인권교육백서 정기적 발간
- 공교육 인권커리큘럼 전문지원 체계 형성

○ 지속 과제

- 인권전문 연구기관, 연구자의 지원 (전문연구소, 인권학술지, 인권석좌교수제 도입 등)

#### 다. 국가인권교육 추진 주체의 형성 문제

유엔 인권계획 10개년 계획은 인권교육 국가위원회를 먼저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한 뒤 국가적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권고하고 있다. 동 계획은 인권교육 책임기관의 설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 정부기구의 대표, 민간부문, 교육자 참여로 구성
- 대안으로서 옴부즈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훈련과 연구를 위한 국가기관 등 기존의 기관 등 가능
- 국가 계획 개발, 재정 확충, 국제 기구와 협력, 인권고등판무관에 보고
- 정보와 지원사항이 지방과 풀뿌리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함
- 국가 차원의 인권 자원과 훈련센터를 수립하도록 장려함
- 국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하여 유엔 및 여타 국제기구, 기부국, 국제 정부간 기구, 민간단체가 인권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

이를 참고로 할 때 국가인권교육 추진 주체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 정부 각부처 대표, 민간단체 대표, 교육전문가가 모든 수준에서 참여하는 협의체
-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관의 협력을 통해 인권교육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 초기의 느슨한 협력체제와 교육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통한 국가인권교육기구의 단계적 설립

어느 형태이던 국가인권교육 기구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취하고 그 기능을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특히 인권교육의 정책원리가 강조하는 대로, 광범위한 민간 참여, 교육대상의 자력화, 현실적 변화를 추구하는 실질적 교육을 감안할 때 기구 설립 자체가 시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각 분야의 인권교육 수요를 청취하는 광범위한 참여-협의 과정을 통한 기구 형성
- 산하에 교육분야별로 실무단(working group) 구성 (초등, 중고등, 대학, 성인, 직능, 시민사회 지원, 우선분야 특별팀 등)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담당자들간의 협력체제와 정례적인 협의와 토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교육전담반을 구성하도록 권장
- 실무단과 별도로 인권교육지원팀 구성: 자료와 프로그램, 인적 지원, 재정지원 조정
- 공공 인권의식 향상 캠페인의 추진
- 공청회와 연계된 정기적인 인권교육 백서 발간 주관

#### 라. 1차 인권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 작성

-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현황과 여건 및 활성화 요인과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인권교육 관련 활동 현황을 충실히 판단하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유엔 권고안에서 제안하는 대로 국가인권교육 계획의 수립과 추진 이후로 인권교육 실태조사보고서를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계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인권교육백서 형태의 실태조사보고서를 조기에 발간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과 광범위한 참여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후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사항 파악은 정례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권 의제의 우선순위와 당면 과제를 국가기관과 시민사회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미 정례화되어 있는 인권규약 실행 정부보고서 작업에 연계되어 인권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이행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마. 인권교육훈련센터 설립의 방향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은 체계적인 인권교육실태에 대한 조사 이전에 이미 수요가 매우 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확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센터는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 인권교육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자의 육성, 인권교육자료의 수집과 생산, 배포,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워크샵, 수요층(고객)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조직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연구, 훈련, 자료실, 의견수렴, 프로그램 개발, 대중교육**을 종합한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요구된다.

현재 상당수의 인권교육이 기획단계에서부터 비체계적으로 진행되며, 부족하고 덜 훈련된 강사진 및 눈높이에 맞는 교재의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으로 겪고 있다. 이는 그 만큼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권교육 지원센터가 존재할 경우 인권교육의 수준과 깊이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수요를 생산해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 지원활동은 비정기적으로, 몇몇 기관과 단체의 부정기적 협의로 진행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 상설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존재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 국가인권교육계획과 독립적으로도 인권교육의 확산과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위에서 적시한 인권교육 상에서 정부가 갖는 역할을 염두에 둘 때 국가인권교육계획 속의 하나로 추진될 때 가지는 강점 역시 경시될 수 없다.

# 정부기관 인권교육 실태와 과제

허 상 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문 은 미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연구원)

여 수 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

## 순서

1. 서론 .....	17
가.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나. 연구대상 및 방법	
2. 정부기관 인권교육 실태조사 : 설문조사 .....	20
가. 설문조사 분석 대상기관 현황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다. 설문조사의 한계	
3. 정부기관 인권교육 실태조사 : 면접조사 .....	31
가. 면접조사 대상 기관	
나. 면접조사 결과	
4. 요약 및 제언 .....	35

# 정부기관 인권교육 실태와 과제

허 상 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문 은 미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연구원)

여 수 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

## 1. 서론

최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법령,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 정치적 상황으로 보아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으나, 그 의미는 되새겨볼직하다.

천정배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국가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이나 제도 정책을 제·개정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인권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역사를 짓고자 할 때 해당 국가기관 등 사업 주체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건물 안 화장실의 남녀차별 요소 등과 관련한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를 반영한 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겨레 2003.10.2).

이러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의 여부를 떠나 인권영향평가제가 논의되는 맥락을 고려해보면 그만큼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법령, 정책 등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법령과 정책의 주요 행위자로서 정부기관에 소속된 이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과 태도 또한 중요한 문제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된다. 최근의 전자주민카드, NEIS 관련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집단들의 다양한 인권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정책과 법령을 제 개정하는 주체인 정부기관의 인권 의식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불어 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함께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세계평화 및 협력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 변화의 과정을 일구어내는 힘이라는데 동의하고 있

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일상적 삶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개인적, 제도적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침묵과 굴종의 문화를 극복하고 정의와 인권에 기초한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인권교육이라고 했을 때, 교육의 내용과 대상이 가장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가 중심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인권교육의 대상은 정규, 비정규 교육 모두를 통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대중에게 인권교육의 목적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하며, 인권교육은 장애인, 빈민, 노숙자 등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검찰,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공무원과 군인, 공무원, 그리고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인권활동가, 교사, 사회복지가,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의 내용을 가르치고 인권을 옹호하는 가치와 태도를 길러내며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권교육이 특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집단으로, 이들은 그 신분이 갖는 영향력 또는 책임지는 위치 때문에 인권교육이 '긴급'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에 속한 이들이 인권교육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권의식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인권 상황을 신장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인권교육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실시되는 정부기관에 대한 '기초현황 및 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과 수준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가.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기관의 인권교육 현황과 실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를 통한 기초현황을 살펴보고 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 구체적 장애요인과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심층 면접조사를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설문조사의 목적은 면접조사에 들어가기 전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면접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 나. 연구 대상 및 방법

현재 정부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종합적인 인권교육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대하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 가치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부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여 그 문제점과 기회요인을 살피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법무부, 노동부, 여성부 등 중앙행정부처 및 위원회, 공무원 연수원 등 인권 관련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104개 기관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얼마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기관의 교육담당자의 의식이 실제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대상을 해당 기관의 교육담당자로 한정 한 것은 연구의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기관 등 설문지 응답의 특성을 고려해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에 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장애요인과 기회요인, 인권교육 발전의 현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① 설문조사 대상 기관

- 중앙행정부처, 위원회, 중앙 및 지방 공무원교육원, 교육연수원 포함 104개 기관

### ② 면접조사 대상 기관

- 사법, 경찰 등 법집행기관, 교육연수원, 공무원 교육원, 그 외 기관 등 5개를 범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을 선정.

### ③ 실태조사 일정

2003년 8월까지 : 정부기관에 대한 기존 연구물이나 문헌연구

2003년 9월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설문조사대상을 조사, 확정

2003년 10월 :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 분석, 심층면접조사 대상기관선정

2003년 10월-11월 :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 대상기관 검토 및 수정

## 2. 정부기관 인권교육 실태조사 : 설문조사

### 가 설문조사 분석 대상 기관 현황

전체 104개의 대상기관 중 49개 기관이 설문에 응하였으며(10월 24일 현재), 이중 22개 기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과 현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A(현재 실시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		B(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	
국방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통계청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법무연수원(2)	경기도울곡교육연수원	대전교육연수원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국가보훈처	충남교육연수원	국립수사과학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부)	병무청	제주 지방공무원교육원	대구 교육연수원
기획예산처	전북교육연수원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경상북도 교육연수원	경찰청		
경상남도 교육연수원	제주탐라교육원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대검찰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A.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답한 기관(17개 기관) B.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분석(10개 기관) C. 인권교육 담당자에 대한 기초조사 분석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의 목적이 면접조사를 위한 기초현황조사인 만큼 배경변인을 살펴거나 교차분석을 시도하기보다는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A.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설문조사 분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들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명 혹은 주제'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이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답하고 있으며(00%), 그 외 '업무상 인권침해 방지', '교원의 자질과 역할', '인성지도',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 등이 있었다.

○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여지를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조직원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라는 항목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설문조사의 대상이 정부기관으로 일반 시민대중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많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이 대민 업무의 성격을 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1>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새로운 법령 및 국가기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	-	-	-
조직원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해	7	41.2	41.2	41.2
직무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여지를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10	58.8	58.8	100.0
합 계	17	100.0	100.0	

○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동기

인권교육이 정부기관에서 실시되는 동기에 대해서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라는 답이 전체의 58.8%에 달했다. 실제 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외에 직무교육 형태로 운영되는 모든 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 교육부, 법무부 등에서 지시하는 지침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 및 남녀평등' 프로그램 역시 법으로 교육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경우 <2003년도 교원연수 운영방향>에서 연수 교육과정 편성 시 반영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원의 책무성 및 교직윤리 제고', '국가기강 확립업무 및 반부패 의식 고양', '양성 평등의식 및 성희롱 예방교육', '바람직한 교직원단체활동 정착' 등이다. 이는 별도의 연수 과정 개설이나 자격, 직무연수 교육과정에 과목 혹은 시간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교육연수원에서 전공 외 교양 과목에 배정된 시간에 한정 되어 있으므로 교육 기획담당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권교육 등 새로운 과목(과정)을 개설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담당자가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행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29.4% 있었는데, 이러한 응답이 인권교육 담당자의 인식이 실제교육의 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려면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및 구성원의 특성, 교육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항에 관하여는 면접조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평가되

며, 실질적으로 정부기관의 인권교육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표2>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동기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	10	58.8	58.8	58.8
조직내부 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	2	11.8	11.8	70.6
담당자의 사회변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인식으로	5	29.4	29.4	100.0
타 조직의 운영 성과로 인해	-	-	-	
합 계	17	100.0	100.0	

○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성격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 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연수나 정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52.9%). 특이한 것은 업무를 위한 직무교육보다는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으로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많았다(23.5%). 이는 앞서 살펴본 '인권교육의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여지를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는데, 정작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교육의 목적과 교육과정편성의 괴리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보겠다.

<표3>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성격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직원의 정규연수 교육의 일환	9	52.9	56.3	56.3
임시로 개설되는 특별교육형식	1	5.9	6.3	62.5
업무를 위한 직무교육의 일환	2	11.8	12.5	75.0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일부과정	4	23.5	25.0	100.0
시스템 결측값	1	5.9	-	
합 계	17	100.0	100.0	

○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인권교육이 실시된 기간은 2년-5년(52.9%)가 가장 많았으며, 일년 평균 교육 일수도 하루(52.9%), 하루 시행되는 강의 시수는 3시간 이하(88.2%)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성희롱 예방' 교육의 의무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교수방법은 강의식 교육이 가장 많았고, 강의 중에 VTR이나 TV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일수와 교육시간이 상당히 짧고 부족하고, 1회 교육대상인원이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적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심도 있는 면접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4>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항 목	가장많은 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권교육이 실시된 기간	2년-5년(52.9)	1년 이하, 5년-10년, 10년 이상(11.8)		
일년 평균 교육 일수	하루(52.9)	3일 이하(11.8)	한달이하(5.9)	-
하루 시행되는 강의 시수	3시간 이하(88.2)	1시간이하, 5시간이하(5.9)		-
평균 1회 교육 참석인원	51-100명(29.4), 21-50명(29.4)	200명이상(23.5)	100명이상(17.6)	
교수방법	강의(76.5)	위탁교육(11.8)	현장체험(5.9)	-
교수 활용 기자재	파워포인트, VTR · TV(35.5)	OHP,실물화상기(5.9)		-

○ 인권교육의 대상

인권교육의 대상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인권교육의 대상은 조직 내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련 조직의 일반직원이 인권교육의 대상이라 응답하였다. 이것은 설문에 응답한 정부기관 중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각 기관들의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수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전제 조사 대상기관 중 일반 시민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한 기관은 없었다.

<표5> 인권교육의 대상(복수응답 가능)

Dichotomy label	Name	Count	Responses	Cases
조직내 간	V2_1	2	8.7	14.3
조직내 일반직원	V2_2	10	43.5	71.4
관련조직의 간부	V2_3	3	13.0	21.4
관련조직의 일반직원	V2_4	8	34.8	57.1
Total responses		23	100.0	164.3

3 missing cases; 14 valid cases

○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교육자(강사)

실제 인권교육 강사는 다양하게 그 응답이 나왔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위촉한 교수(강사)로써 43.5%를 차지하였다. 프로그램 교수 방법 중 강의식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위의 결과로 보아 강사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실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의 경우, '양성평등과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해당 지역 강사 목록을 작성해 각 기관별로 배포해 해당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는 이후 다시 논의되겠지만,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에 가장 많은 피면접자들이 인권관련 과목의 강사 목록 등을 필요로 한다고 답했다.

<표6>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교육자(강사)

Dichotomy label	Nam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조직내 교육 담당자	V9_1	7	30.4	50.0
자체 위촉 교수	V9_2	10	43.5	71.4
정부 인권기구의 교육전문가	V9_3	3	13.0	21.4
인권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V9_4	3	13.0	21.4
		-----	-----	-----
Total responses		23	100.0	164.3

3 missing cases; 14 valid cases

○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단계에서 어려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는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는 교재의 부족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외부기관과의 연결성 부족을 장애요인으로 꼽았는데,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다양한 문헌이나 정보자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는 해당 기관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맞물려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7>프로그램의 기획·개발 단계에서 어려움

Dichotomy label	Nam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교재 부족	V12_1	6	33.3	42.9
동료교사의 인식 협조 부족	V12_2	1	5.6	7.1
외부기관과의 연결성 부족	V12_3	4	22.2	28.6
담당자의 지식 부족	V12_4	1	5.6	7.1
시간부족	V12_5	6	33.3	42.9
		-----	-----	-----
Total responses		18	100.0	128.6

3 missing cases; 14 valid cases

○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어려움은 인력과 교재의 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예산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인권시민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더라도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이다. 차후 면접조사를 통해 인력의 부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살펴보고, 교재의 부족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기획·개발 단계부터 운영의 단계까지 필요로 하는 교재의 성격과 내용들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표8>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

Dichotomy label	Nam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예산부족	V13_1	3	13.6	21.4
인력부족	V13_2	6	27.3	42.9
교재부족	V13_3	6	27.3	42.9
인식부족으로 인한 협조부족	V13_4	2	9.1	14.3
외부기관과 협조체제 미비	V13_5	5	22.7	35.7
Total responses		22	100.0	157.1

3 missing cases; 14 valid cases

Ⅱ.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분석

현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총 10기관으로, '인권 제대로 알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교육 현장에서 인권침해 방지(3개기관)', '우리나라 인권실태와 전망', '노동조합 설치와 인권', '개인의 기본권', '인간다운 삶 영위', '인간의 존엄성' 등으로 주 내용이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비해 이후 계획을 가진 기관들의 프로그램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과 정부기관 별로 요구되는 인권교육의 목록 등의 상관관계 등뿐 아니라 그러한 인권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발생 요인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실시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실시될 인권 교육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여지를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조직원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표9> 실시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새로운 법령 및 국가기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1	10.0	10.0	10.0
조직원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해	4	40.0	40.0	50.0
직무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여지를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5	50.0	50.0	100.0
합 계	10	100.0	100.0	

○ 계획하고 있는 강의 시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경우 계획하고 있는 강의 시수는 어떻게 되는가를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3시간 이하의 교육프로그램이라는 답이 전체의 80%, 1시간 이하의 프로그램이라는 답이 20%를 차지하였다. 이는 기존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인권교육의 실태와 환경이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 교육 대상자

인권교육의 대상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표10> 교육 대상자

Dichotomy label	Nam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조직내 일반직원	VB2_2	5	41.7	50.0
관련조직의 간부	VB2_3	1	8.3	10.0
관련조직의 일반직원	VB2_4	6	50.0	60.0
		-----	-----	-----
Total responses		12	100.0	120.0

0 missing cases; 10 valid cases

<표11>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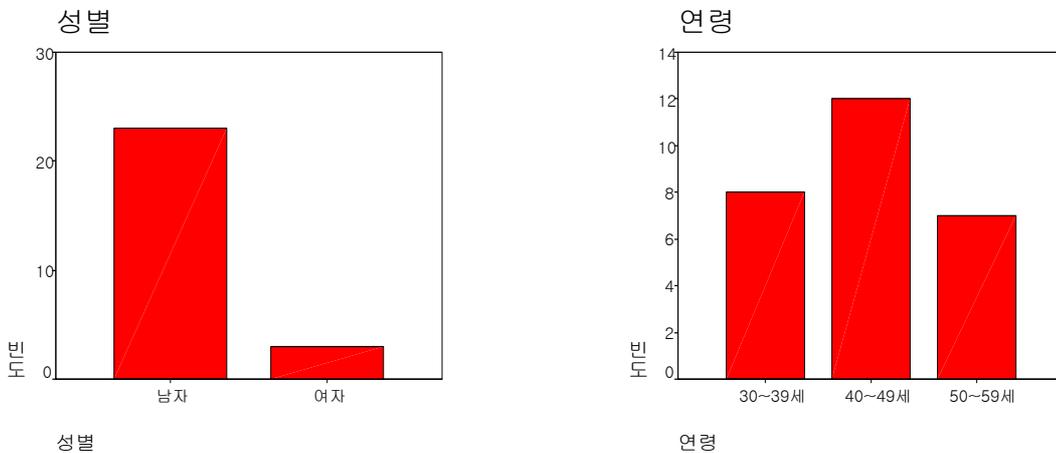
Dichotomy label	Name	Count	Pct of Responses	Pct of Cases
정규 직원연수 교육의 일환	VB3_1	4	36.4	40.0
임시의 특별 교육형식	VB3_2	3	27.3	30.0
업무 소양교육의 일부과정	VB3_3	1	9.1	10.0
자기개발위한 프로그램 일부과정	VB3_4	3	27.3	30.0
Total responses		11	100.0	110.0

0 missing cases; 10 valid cases

### C. 전체 교육담당자에 대한 기초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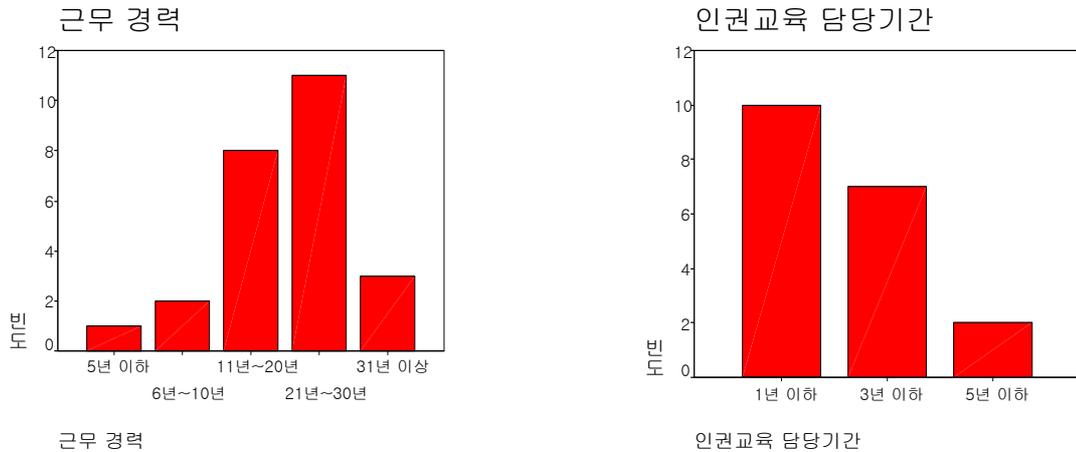
교육담당자에 대한 분석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1>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분포



성별 분류는 남성이 85.2%, 여성이 11.1%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고, 연령은 40-49세 사이가 전체의 44.4%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중년이상의 남성이 교육 담당자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2> 근무경력과 인권교육업무 담당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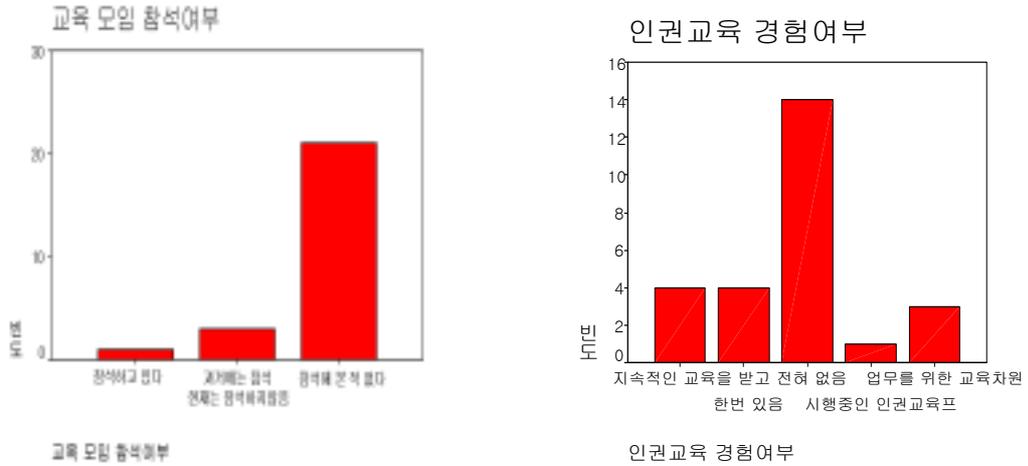
근무경력은 21년-30년 사이가 전체의 40.7%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11년-20년 사이가 29.6%를, 3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1%를 차지하였고, 10년 이하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1.1%였다. 오랜 근무 경력에 비하여 실제로 인권교육을 담당한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는 인권교육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공공기관의 교육의 한 부분으로 편성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것과 둘째, 정부조직의 특성상 각 업무별 부서의 이동이 몇 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인권교육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담당자의 인권교육에 대한 업무의 경력이 전체적으로 짧다는 것보다 인권교육을 담당함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좀더 확연히 알 수 있다.

○ 인권교육 담당자의 인권교육의 경험에 대한 분석

아래의 두 항목 중, 교육 모임에 참석은 인권교육 담당자가 자발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적 인권의식을 받아들이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이고, 인권교육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상 교육을 받은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래프3> 인권교육 담당자의 인권교육의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인권교육담당자들이 업무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답이 전체의 51.9%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를 위한 교육차원에서 한번정도 교육을 받았다는 답이 25.9%를 차지하였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는 답은 14.8%에 불과 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교육 모임(시민단체, 일반 조직성원 모임 등)에 참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참석해 본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77.8%로 나타났으며,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14.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정부기관의 인권교육 담당자들이 업무의 기본개념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함으로 인해 인권의식이 부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인권’의 개념에 대해 각자 다른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최우선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실제 인권교육 담당자의 역할이 교육과정을 일정부분 결정할 수 있고, 교육 강사를 섭외해야 하고 교육의 내용과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업무의 막중함으로 볼 때 인권교육담당자의 인권의식 부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인권교육 담당자의 인권의식에 대해 살펴보고, 인권의식의 함양이나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가를 심도 있게 탐색해 볼 것이다.

## 다. 설문조사의 한계

설문조사를 수행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과 연구원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났다. 우선은 정부기관이 그 기관의 업무특성상 다양한 특성과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하나의 설문조사지로는 조직의 특성과 함께 인권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면접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을 업무성격상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좀더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의 현황이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각 조직에 따라 문제점이 다르고, 문제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합의된 정의를 제시하지 못하여,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식에 따라 임의적으로 해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존엄’을 의미하는 광의의 인권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적 권리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어적, 소극적 권리로서의 인권인지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설문대상자 중 일부는 직무교육에서 실시되는 직장내의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인권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일부 진행된 면접조사 결과 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계획도 없다고 답을 한 이유가 ‘인권’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내용이 합의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직원교육프로그램 안에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타났다.

“ 인권에 관련되어 따로 교육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직원들 직무교육에 있어서 양성 평등에 관한 부분을 교양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권교육이라고 따로 분리되거나 시행되진 않았지만, 사실 조직이 맨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꾸준히 교육되어 왔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인권’이라는 제목을 달고 교육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이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감독기관이 신설된 것이 올해 초 일뿐이지 예전부터 실시되긴 했습니다.”

후속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각 정부기관의 특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나 면접조사를 시행하고, 인권에 관한 대략적인 정의를 제시 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3. 정부기관 인권교육 실태조사 : 면접조사

#### 가. 면접조사 대상 기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연수원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  
사법연수원(2)  
국가보훈처  
제주탐라교육원

#### 나. 면접조사 결과 분석

##### ○인권 교육의 정의 및 내용 관련

인권 교육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본 연구팀이 설문지 구성에서도 이후 추가 항목 조사를 위한 면접조사지에서도 문항이 제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 연구팀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의 하나가 인권 교육의 정의와 내용에 관한 질문이었다. ‘도대체 인권교육이 뭐냐. ‘성희롱 예방 교육도 포함될 수 있냐?’ 등의 질문부터 ‘우리 부서는 인권과 관련 없는 부서라 설문에 응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인권 교육의 정의와 그 내용에 대해 많은 혼란 있었고 이것이 이번 실태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교무계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직원들에 대한 연수나 직무교육은 서무계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인권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고, 교육부서에서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인권 교육이라고 하면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어떤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이리이러한 것들을 인권교육이라고 한다고 정의해주면 몰라도 막연해서 설문에 응하기 어렵다”

## ○ 인권교육 담당자의 인권의식 관련

각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기관의 교육담당자들이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 등과 관련해 직무 교육 기획, 개발과 관련해 체계적인 훈련 및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는 개인차라기보다는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 압력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뷰에 응한 인권교육 담당자의 인권의식은 인권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는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인권교육이 모범적으로 잘 실시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관인 A의 경우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00부에 관련된 일의 특성상 인권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인권교육이라는 개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각 기관에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일부 기관은 담당 부서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담당 부서의 신설이나 교육의 실시와 같은 행정적인 조치의 진일보와 함께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가양성이나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형식상 인권교육 담당 기관이나 부서가 생겨났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실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가를 담당부서에 배치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다만 ○○연수원의 경우 인권교육담당자는 전문적인 교육학을 공부하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받고 있었다.

## ○ 인권교육 과정 편성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여지를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교육으로 제시되는 직무교육의 일부로 인권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가능한 일반 연수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해서 대부분이 시간과 인력, 예산의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편성된 교육내용들도 교육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교육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 ..기존에 주어진 교육프로그램이 이미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한 달에 한두 번 실시하는 교육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다 실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이러한 내용은 실상 인권에 관한 교육을 논하기 이전에 정부기관의 조직성원에 대한 재교육의 현실이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교육들이라 판단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시간과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응답이었다.

#### ○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설문조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교재부족, 인력부족, 예산부족 및 외부기관들과의 연계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마찬가지로 면접조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이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전문가가 너무 부족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과정과 교재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단 조직내에 전문가가 부족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웃소싱을 하려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걸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에 교육받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가 적절하고 그래야 교육의 효과 있는 적정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에 50명 이상 많으면 100명 이상까지도 한꺼번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인권교육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형식적인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이나 예산 등 기초적인 요소의 어려움 외에도 각 조직의 특성이나 기관의 위치 등과 같이 현장에서의 독특한 문제들도 프로그램의 운영에 큰 장애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저희 기관이 보시다시피 ○○에 있습니다. 강사분들한테 한 두 시간 강의 해 달라고 이곳까지 와달라고 하면 다들 바쁘고 힘들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강사를 구하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강사비를 더 줄 수도 없고..”

“ 사실 조직의 성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는 그 사람이 근무하는 관할에 가장 적절한 인권교육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불법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나 사창가가 있는 곳이나 뭐 이런 곳은 이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우선 철저히 해야 하는데, ○○○에서 나온 강사나 교수들은 언제나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권활동을 해온 운동가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알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 ○ 기 타

면접조사를 통해 만난 인권교육 담당자들은 직원들의 재교육에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되지 못하는 이유를 예산편성권자들의 인권의식과 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육은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은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부분은 자꾸 뒤로 밀리고 밀리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교육이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후속 조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언제나 교육하는 시점에 맞춰서 편성되고 그걸로 더는 어렵다고 하니까요.”

또 한가지 면접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정부조직의 특성은 비록 여러 가지 현실여건이 어려워도 상부기관의 명령이나 정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면 실시해야죠.”

“ 인권교육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실은 이렇게 인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권교육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정부에서 인권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따로 인권교육을 한 부분으로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받는 사람들이 좀더 인식하게 될 것 같고.. 그냥 교양교육에 한 과목 개설되어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 4. 요약 및 제언

이번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 기관의 인권교육 실태는 매우 초보적 수준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낙후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화 교육 등 다른 부문의 직무교육 등에 비교하여 볼 때 인원과 예산, 교육 시간에서 많은 열세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인권교육 내용이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s)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1세기 인권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 공공기관에서의 바람직한 인권교육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인권의식의 열위와 저급한 인권지식은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민의 공복이 도리어 권리침해와 유린의 한 주체로 등장하게 만드는 아이러니와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에 대한 가치전환(value change)과 함께, 인권 부재 상황을 잉태하고 있는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행태나 관행을 지양하려는 적극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기관 고유의 조직특성과 조직운영, 집단문화의 차이는 이에 걸맞은 인권교육 과정과 교육방법론, 효율적인 교육기법의 제공과 활용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권교육 내용이 행위 변화로 직결될 수 있는 근무체제나 시스템의 재조정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기관의 지시나 정책 결정자의 의지에 의해서 행정문화의 변화가 가능한 측면에 주목하여 고위 정책 결정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과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어떤 리더십의 소유자인가에 따라 집단 문화가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 국가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 도입과 시행, 그리고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제언

#### 가. 정기적인 인권교육실태 조사 실시

정부기관의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인권교육 관련 정책의 실시에 대한 평가, 문제점 등을 다음 해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인권교육의 평가와 피드백,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태조사 작업은 중요하다.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에서조차 사실상 교육의 여건이나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교육 지원 체계 마련과 더불어 평가체계에 대한 제도적 정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정부의 인권교육 의무규정 제정 및 세부화

정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교육은 크게 공무원연수원과 직장 내 직무교육 형태로 이루어진다. 각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해당 기관 별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등의 교육 관련 지침에 따라 그 해 교육훈련 계획이 세워진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한 내부적인 필요성과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기관 내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그해 공무원 교육에 대한 지침에 반영되는 것 등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확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장조사를 통해 많은 기관들이 인권교육에 할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정해진 교육의 내용과 시간들을 가지고 인권에 대한 개별주제들을 교육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에 대한 의무규정이나 정기적인 인권교육의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내용과 목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막연한 인권교육에 대한 의무 부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와 업무 부담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인권교육에 대한 의무규정과 더불어 인권교육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인권교육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각각 관련 인권내용에 대한 교육의 지침을 만들어 하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부처별 인권교육의 관리는 전체적인 인권교육의 관리와 그 내용의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전체 공공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의 인권교육 의무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그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 다. 예산과 전문 인력의 확보

국가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다. 실태조사 결과분석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고려해 볼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확대 편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에 교육훈련 담당자의 인권교육에 대

한 관심과 필요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권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기획하고 담당할 교육담당자의 확보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실제 각 기관별로 교육 담당자가 공무원 직무 교육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인권교육 인력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하다.

#### **라. 전문 강사진 및 다양한 교재의 확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형태는 일회성,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강의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교육 담당자들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인권교육 관련 전문 강사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교재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각 지역별로 전문강사 목록과 비디오, 관련 책자 등 각 기관별로 교육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다양성과 수준에 대한 교육담당자의 문제제기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권교육에 필요성과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 **마. 인권교육자료 아카이브 형성**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인권교육 자료가 아직 한정된 분야이기는 꾸준히 발간되고 있지만, 정부기관 교육 담당자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각 기관별로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교육 자료를 마련해 강의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부기관 전체가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인권교육자료 아카이브를 형성해 필요로 하는 이들이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교육 자료를 공유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우선 과제이다.

#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교육 실태와 과제

허 상 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최 재 훈

(국제민주연대)

## 순서

1. 서론 .....	41		
가. 조사의 배경			
나. 조사의 목적			
2. 조사방법 .....	42		
가. 조사준비			
1) 대상의 선정	2) 면접조사지 개발 및 구성		
나. 조사 실시			
1) 기간	2) 방법		
다. 조사의 한계			
3.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교육 현황 .....	47		
가. 자유권	나. 아동 및 청소년	다. 성적 소수자	라. 장애인
마. 언론	바. 정보인권	사. 난민	아. 평화교육
4. 조사결과 .....	68		
가. 기회요인	나. 장애요인	다. 국가의 지원	
5. 정책과제 및 제언 .....	70		

# 1. 서 론

## 가. 조사의 배경

1994년 12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유엔 인권교육10개년 행동계획, 1995-2004 :인권교육-삶을 위한 교훈(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 Human rights education-lesson for life)'에서는 인권교육을 "기본적인 인권"이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격과 인간존엄성의 완전한 발전 등을 추구하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주요 행위자'로서 정부나 국가인권기구, 공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풀뿌리조직, 전문가협회, 관심 있는 개인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제 프로그램·정부·인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타 기관들이 이들 단체에 기술 지원 및 훈련, 시민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인권교육에 있어서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민간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인권교육이 단순히 인권에 대한 지식과 기술만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가치를 모두의 가슴과 삶 속에 심어주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을 인식해내고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또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사회 속에서 인권의 내용도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기존의 가치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새롭게 정의내리는 가운데 끊임없이 다양해지고 확장되어 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 폭력, 환경파괴, 빈곤 등에 맞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인권교육의 실천자이자 담당자로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인권활동이 그 자체로서 교육적 성격을 지니지만, 이 모든 것을 인권교육이라고 부르는 어렵다. 인권교육이 인권활동과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인권에 관한 지식과 기술, 가치 등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교육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설계된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하고자 하는 활동가는 인권교육 그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을 길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sup>1)</sup>

물론 이러한 전문성을 길러내는 데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자기개발이 가장 중

1) 인권운동 사랑방 홈페이지([www.sarangbang.or.kr](http://www.sarangbang.or.kr)) '인권교육실-인권교육이란' 중에서

요하겠지만, 또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인권교육 발전계획의 수립 및 법제도적인 뒷받침, 전문가 집단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전반의 인식확대 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유엔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을 다시 인용하면,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정규 교육 체계에 인권교과과정을 도입 또는 강화, 인권 정보화 캠페인의 주도과 인권자원·정보·훈련센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 개방, 자발적인 기금과 국제·국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자 지원 강화” 등의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인권교육 발전의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시민사회단체 영역의 인권교육의 경험과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각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기본원리, 특성, 인력 및 교재현황, 예산, 평가, 장애요인 및 기회요인 등을 수집해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전략, 특성,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통해 국내 인권교육의 단기·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더불어, 향후 각 단체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모은 사례집을 발간해,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경험과 내용,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에게 앞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민사회영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정리, 분석한다.
-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경험과 자료, 평가를 공유한다.
-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토대로 활용한다.

## 2. 조사 방법

### 가. 조사 준비

#### 1) 대상의 선정

본 조사에서는 인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익히게 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자유, 평등, 생명, 평화, 정의, 사회적 연대, 환경 등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재구성하여, 궁극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모든 교육을 인권교육의 범주에 넣고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선정 작업은,

- 문헌조사를 통한 선정(인권교육 관련 단행본, 자료집, 사례집, 논문 등)
- 시민사회단체의 인권교육 담당자들의 추천을 통한 선정
- 단체의 성격과 목적, 활동 등에서 인권교육과의 관련성을 조사자가 판단  
(유의표집, purposive sampling)

등의 근거로 이루어졌다. 영역별로는 크게 나누어 ▲자유권, ▲아동 및 청소년, ▲성적 소수자, ▲장애인, ▲언론, ▲정보인권, ▲이주노동자, ▲난민, ▲여성, ▲평화교육<sup>2)</sup> 등으로 분류해 총 46개 단체들을 1차로 선정하였다.

< 표1> 1차 선정단체<sup>3)</sup>

번호	단체명	분야	번호	단체명	분야 <sup>4)</sup>
1	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 아동·청소년	1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동·청소년
2	천주교 인권위원회	자유권	16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센터 '하자'	아동·청소년
3	인권실천시민연대	자유권	17	서울지역공부방 연합회	아동·청소년
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자유권	18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적 소수자
5	울산인권운동연대	자유권	19	끼리끼리	성적 소수자
6	전북평화인권연대	자유권	20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성적 소수자
7	군가협	자유권	21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장애인
8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자유권	22	장애인실업자 종합지원센터	장애인
9	다산인권센터	아동·청소년	23	노들장애인 야간학교	장애인
10	마들주민회	아동·청소년	24	서울 DPI	장애인
11	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	아동·청소년	25	장애여성공감	장애인, 여성
12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청소년·평화	26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
13	안산 YMCA 아동인권센터	아동·청소년	27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
14	대전 YMCA 아동인권센터	아동·청소년	28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

- 2) 이러한 영역 분류 중 ▲환경과 ▲노동이 1차 조사에서는 빠져 있다. 이는 조사자의 시간과 역량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추후 2차 조사에서 이들 영역에 속한 단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밝혀둔다.
- 3) 실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1차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2차 조사에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 4) 여기서의 분류는 단체의 활동 전반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단체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번호	단체명	분야	번호	단체명	분야
29	한국언론재단	언론	38	북한인권시민연합	난민
30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	39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난민, 자유권
31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 노동자	40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
32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센터	이주 노동자	41	여성민우회	여성
33	안양 전진상 복지관	이주 노동자	42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34	노동인권회관	이주 노동자	43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 노동
35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이주 노동자	44	서울 여성노동조합	여성, 노동
36	피난처	난민	45	평화인권연대	평화
37	좋은 벗들	난민	46	굿 네이머스	아동·청소년

조사자는 이들 46개 단체를 대상으로 먼저 전화를 통해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유무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권교육의 원리와 내용적 특성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혹은 운영한 경험을 가진) 단체들 중 현재까지 면접조사가 이뤄진 단체들은 총 16개 단체로, 단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2> 면접조사 완료 단체**

번호	단체명	분야	프로그램명
1	군가협	자유권	군·경 의문사 및 폭력실태 근절방안 교육
2	인권실천 시민연대	자유권	경찰 대상 인권교육
3	다산인권센터	아동·청소년	인권평화학교/청소년 인권평화캠프/교사인권워크숍
4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아동·청소년	갈등해결과 평화, 인권
5	마들 창조학교	아동·청소년	인권아! 친구하자!
6	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	아동·청소년	청소년 인권신장 및 청소년 사회참여를 위한 청소년 포럼
7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	성적 소수자	'동성애 바로 알기' 강좌
8	동성애자 인권연대	성적 소수자	대학 및 시민인권단체 강좌 /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장애인	장애우 인권학교 / 장애우 대학 / 장애체험순회교육
10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장애인 노동자 권리찾기 교실
11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	소수자 인권찾기를 위한 방송모니터 교실
12	한국언론재단	언론	인권분야 담당기자 전문연수
13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	정보화와 인권
14	피난처	난민	국제난민학교 / 자유터학교-북한자유이주민 통일학교
15	북한인권시민연합	난민	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
16	평화인권연대	평화	평화캠프

<표1>에 포함된 단체들 중 전화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권교육의 내용적 특성을 가지고 현재 혹은 최근에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는 단체들은 면접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외 아직 면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체들은 이번 중간보고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3> 면접조사 미 실시 단체별 사유

번호	단체명	분야	이유
1	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 아동·청소년	내부결정에 따라 조사에 응하지 않음
2	천주교 인권위원회	자유권	해당 프로그램 없음
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자유권	조사 예정
4	울산인권운동연대	자유권	조사 예정
5	전북평화인권연대	자유권	조사 예정
6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	자유권	조사 예정
7	안산YMCA 아동인권센터	아동·청소년	조사 진행 중
8	대전YMCA 아동인권센터	아동·청소년	조사 예정
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아동·청소년	과거 학생 자체세미나는 있었으나, 해당 프로그램 없음
10	서울시립직업청소년센터 '하자'	아동·청소년	해당 프로그램 없음.
11	서울지역 공부방연합회	아동·청소년	연합회 산하의 공부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12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성적 소수자	3개월 단위로 동성애 문화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아직 조사에 응하지 않음
13	노들 장애인야간학교	장애인	조사 예정(한달에 1회, 여성주의에 대한 교육)
14	서울 DPI	장애인	조사 예정(사이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 차원의 교육)
15	장애여성공감	장애인	단체 일정상 조사 연기
16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	해당 프로그램 없음
17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	해당 프로그램 없음
18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 노동자	조사 예정
19	서울 외국인노동자 센터	이주 노동자	조사 예정(자원활동가들을 위한 노동법 교육)
20	안양 전진상 복지관	이주 노동자	조사 예정
21	노동 인권회관	이주 노동자	조사 예정 (여성이주 노동자 대상으로 노동법·성폭력 대처방안 교육)
22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이주 노동자	조사 예정
23	좋은 벗들	난민	해당 프로그램 없음(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 역사 교육)
24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난민	해당 프로그램 없음
25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	단체 특성상 여성 단체들을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자체 교육사업은 없음
26	여성민우회	여성	조사 예정 (상담원 대상으로 기능교육·성희롱 대처방안 교육)
27	여성의 전화연합	여성	해당 프로그램 없음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기능교육)
28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 노동	해당 프로그램 없음
29	서울여성노동조합	여성, 노동	조사 예정 (조합원 대상으로 법적권리와 노동권에 대한 교육)
30	굿 네이비스	아동·청소년	조사 예정

## 2) 면접 조사지 개발 및 구성

### ■ 조사지의 개발

조사지의 개발 단계에 있어서 본 조사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선행연구를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문헌조사 결과 시민사회단체의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팀 내의 자체 논의를 거쳐 예비 면접조사지를 제작한 후 인권교육활동을 하는 2명의 현장 활동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 면접조사지를 완성하였다.

### ■ 면접조사지의 구성

본 면접조사지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단체의 기본정보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등을 묻는 ▲기본항목과 ▲평가항목, 그리고 취지와 특성, 효과, 교재의 적합성, 장애요인 등을 객관식으로 질문하는 ▲추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 기본 항목 문항 : 단체명, 단체 정보, 인권교육 프로그램명, 시행기간, 담당자, 프로그램 장소, 대상, 모집 및 홍보, 강사진, 교재, 연속교육 여부, 예산, 교육내용 및 방법 요약, 평가 방법, 교육효과가 높았던 교재의 예·특징·효과, 교육효과가 높았던 세부 프로그램의 예·특징·효과
- ▲ 평가 항목 문항 : 단체 평가, 담당자 평가, 참가자 평가, 강사진 평가, 사회적 평가
- ▲ 추가 항목 문항 : 기본 취지, 필요성, 결정과정, 방법적 특성, 긍정적 효과, 장애요인과 대안, 전문가 참여, 인력, 교재의 활용도, 시청각 자료의 활용도, 교재의 적합성, 우수 교재, 우수 프로그램, 후속활동,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지원이 필요한 부분, 지원 현황

\* 면접조사지 별첨

## 나. 조사 실시

### 1) 기 간

본 중간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면접조사는 2003년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 2) 방 법

처음에는 각 단체의 인권교육 담당자를 방문하여 바로 면접조사를 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조사지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충분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즉흥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에 미리 교육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사지를 발송해 답변을 기입하게 한 후 방문면접을 통해 설명을 듣고 보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 다. 조사의 한계

먼저, 조사대상 단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애초에 계획했던 인권교육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문가와 활동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추천을 받다보니 단체 정보의 폭이 한정되는 측면이 있었고, 상당부분 문헌조사와 신문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취합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단체 인권교육 담당자들이 사전에 조사지를 작성해 보내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전체 조사기간에 비해 조사가 이루어진 단체들의 수가 적어지게 되었다. 특히, 환경, 노동, 여성 분야의 단체들과 지방에 소재하는 단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번 중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이들 단체들을 포함해 애초 조사대상 단체로 선정되지 않은 단체들 중에서 이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가조사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 단체에 따라 면접조사 시간과 집중도의 편차가 존재하였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사가 이뤄진 단체가 있는 반면, 조사 대상자가 본 조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을 듣지 못하고 조사를 마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 3. 인권교육 현황

### 가. 자유권

#### ■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

① 단체정보 : 군가협은 과거 군대내 의문사 사건의 피해가족들이 진상규명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난 2000년 결성돼 현재는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군인 인권옹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운동과 군인의 전화 운영을 통한 군대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이다.

▲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19 천주교인권위원회 1층

▲ 전화 및 팩스 ; 02)777-6602, 02)775-6267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www.armyngo.org](http://www.armyngo.org) ,

[armyngo@hanmail.net](mailto:armyngo@hanmail.net)

▲ 담당자 ; 서석원 간사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군·경 의문사 및 폭력 실태 근절방안 교육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2002년 2회, 2003년 5월 1회, 대학 신문사 기자들과 단체 활동가, 일반 시민들 대상(이 외에 매월 마지막 수요일 회원들 대상으로 교육 실시)

- ④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단체 회의실, 대학 강의실
- ⑤ 모집 및 홍보 : 주로 보도자료 배포나 온라인 홍보를 위주로 하며, 대학교나 외부 기관에 공동기획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하다고 함.
- ⑥ 주요 강사진 : 황학수(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오창래(천주교인권위원회 조사상담실장), 주종우(군가협 대표), 강숙희(군가협 홍보위원장)  
- 군인권에 관한 전문 강사진이 부족
- ⑦ 교재 : 없음
- ⑧ 연속교육 여부 : 일회성 교육(단, 회원 교육프로그램은 월 1회 정례화)
- ⑨ 예산 및 조달방법 : 회당 약 20만원 정도 지출, 자체 조달
- ⑩ 교육 내용 및 방법 : 군·경 의문사 및 폭력의 실태와 양상, 원인, 개선 방안, 구조활동 소개 등을 주로 강의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다. 보조 자료로 비디오와 사진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⑪ 교육효과나 독창성이 높았던 교재 :  
▲ 예 - 관련 문제를 적절히 다룬 TV 시사교양프로그램(PD수첩 “자살 통지서의 진실”)  
▲ 특징 -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으며, 제도적 약자의 편에 선 프로그램  
▲ 효과 -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 ⑫ 교육효과나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  
▲ 예 - 사례발표  
▲ 특징 -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 피해 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과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 발표  
▲ 효과 - 일반인들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유사 피해자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인식을 하게 됨.
- ⑬ 평가 : 유사 피해자들의 경우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성의 장이 되었으며, 일반참가자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단체 차원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참석률 저조와 언론 및 시민사회의 무관심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정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교육담당자는 실무자가 한 명 뿐이라 인력이 부족하고, 현 집행위원회 구조 속에서는 실질적인 업무 분담이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단체 내 구조적 역량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강사진들은 새로운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 ■ 인권실천시민연대

- ① 단체정보 :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감옥, 군대 등의 인권관련 정부기구에 대한 감시 및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과 인권분야 전반에 대한 실천활동을 벌이는

단체이다.

▲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44번지 삼우빌딩 503호

▲ 전화 및 팩스 ; 02)3672-9443, 02)3672-0438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www.hrighs.or.kr](http://www.hrighs.or.kr) , [hrighs@chol.com](mailto:hrighs@chol.com)

- ② 교육 방법 및 평가 :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없고, 단체의 사무국장이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강사로 나가 지금까지 260여회 1만 6천여 명의 경찰에게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주로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직원조회 시간을 활용해 한두 시간 특강을 하는 방식이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와 특성, 현장에서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에 대한 피교육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지난 5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차원에서 3일 과정의 인권강좌를 개설하는 등 경찰 내에서 인권교육이 점차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기타 : 지난 2001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인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제목 하에 인권캠프를 개최한 적이 있으나, 이후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은 중단되었다. 그 외에 현재 청소년 인권교육 자료집을 준비 중에 있다.

## 나. 아동 및 청소년

### ■ 다산인권센터

- ① 단체정보 : 다산인권센터는 1993년 다산법률사무소의 부설기관인 인권상담실로 출발해 그동안 경기남부지역에서 노동문제, 공안관련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한 상담과 법률구조 등을 주요한 활동으로 해 왔다. 1996년부터는 본격적인 인권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자유권, 노동권, 지역운동, 평화운동, 인권교육, 인권영화제 등 인권운동의 대중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00년에는 '인권상담소'를 '다산인권센터'로 단체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을 지향하는 운동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1-6 법전빌딩 313호
- ▲ 전화 및 팩스 ; 031)213-2105, 031)215-4395
-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www.rights.or.kr](http://www.rights.or.kr) , [humandasans@hanmail.net](mailto:humandasans@hanmail.net)
- ② 교육 프로그램명 : 인권평화학교/ 청소년 인권평화캠프/ 교사인권워크샵
- ③ 시행기간 및 대상 : · 인권평화학교 - 1998년, 일반시민 대상  
· 청소년 인권평화캠프 - 2000년, 2001년  
· 교사인권워크샵 - 2002년
- ④ 장소 : 수원기업은행강당(시민 대상), 수원청소년 문화센터(청소년 대상), 기타 수련시설
- ⑤ 모집 및 홍보 : 홍보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과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위주로 하며, 교사 등의

지인들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기도 한다.

- ⑥ 주요 강사진 : 주로 자체 인력으로 강사진을 구성, 박 진, 송원찬(이상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칠준(변호사) 등.
- ⑦ 교재 : 자체 교재 발간('1회 인권평화학교 Human Rights', '2002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워크샵-인권과 함께하는 선생님), 그 외 평등과 차이, 차별교육 교재인 '애들이 인권공부하자' 등을 활용
- ⑧ 교육 내용 및 방법 : 인권의 정의와 아동인권의 역사와 개념, 인권의 다양한 가치 체험 등을 내용으로 평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학습 지 방식, 모둠 토론, 견학 및 방문학습, 강의, 공동체 놀이 등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 ⑨ 예산 및 조달 방법 : 자체 조달
- ⑩ 교육효과나 독창성이 높았던 교재 : · 인권의 개념과 역사 교재 - "인권교육 역사워크샵" 中  
· 평등과 차이, 차별 교육 교재 - "애들이 인권공부하자" 中
- ⑪ 교육효과나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 청소년 간 폭력과 따돌림 극복을 위한 교육교재 '얼어 붙은 교실'(참교육 영상집단) 시청 -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영상으로 현실적인 표현과 문제의식이 도출되었고, 청소년들 스스로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할 수 있었다.
- ⑫ 평가 : 현행 입시제도의 벽을 넘어서 학교 내의 청소년들에게 인권교육을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고, 때로는 그냥 좋은 교육, 내용적으로 올바른 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든다고 한다. 또한 그때그때 성과들이 외화되고 축적된다는 느낌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앞으로 청소년 인권동아리와 교사 및 활동가 대상의 인권교육연구모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점차 이러한 교육을 제도교육 밖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민적 권리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 ⑬ 기타 : 2001년부터 수원시 청소년과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공모와 시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외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학교에 들어가서 창의재량수업과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활용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외부 단체로도 인권교육을 나가고 있다.

##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① 단체정보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토대로 전쟁과 군사적 충돌을 막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며, 분단으로 조성된 적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군사주의 문화를 평화문화로 전환시키는 등의 활동을 위해 1996년 11월 결성되었다. 그동안 북한동포 돕기 운동과 평화운동 여성지도자 교육, 평화교육방법론 개발, 갈등해결과 증재훈련 프로그램, 반전평화운동을 주로 벌여왔다.
  - ▲ 주 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번지 여성평화의 집 4층
  - ▲ 전화 및 팩스 ; 02)2275-4860, 02)2275-4861
  -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www.peacewomen.or.kr](http://www.peacewomen.or.kr) ,

wmp@peacewomen.or.kr

-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갈등해결과 평화, 인권'
-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인권시범학교로 지정된 관악고등학교 3개 학급 110명을 대상으로 창의재량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④ 주요 강사진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실시한 갈등해결 강사 트레이닝 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팀을 나눠 강사진을 구성, 조영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청소년교육팀장), 박인혜(희곡작가), 여혜숙(즐거운학교 체험학습 전문강사), 최정현진
- ⑤ 교재 : 갈등해결과 인권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 자체 제작, 10월말에 갈등해결과 평화인권 교육 매뉴얼 발간 예정
- ⑥ 연속교육 여부 : 3개 학급을 6개 반으로 나누어 주당 6회 실시
- ⑦ 예산 및 조달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단체협력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 조달하고 있다.
- ⑧ 교육 내용 및 방법 : 주로 아이들 간, 교사와 아이들,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나갈 것인지를 교육하고 있다. 강의 위주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방식을 지양하고 참여자들의 토론과 연산게임, 질문, 그림 등을 활용한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⑨ 평가 :
  - 단체의 평가 - 수업방법이 참신하고 갈등에 대한 학문적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이나 주어진 시간 내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갈등해결 사례 개발, 진행자의 재교육 기회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담당자 평가 - 민간단체에서 개발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학교교육현장에 결합한 점과 타학교에서의 활용가능성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강사진에 대한 사례 수준의 열악함이라든지 교재를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참가자 평가 - 기존의 수업방식과 달리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고 내용이 참신해 흥미로웠으며,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 주를 이루었다. 한편, 학생들은 별도의 수업 평가서를 회지로 엮어서 발간하기도 하였다.
- ⑩ 기타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관악고등학교 이외에 양강중학교(CA), 장위중(창의재량), 이대부중(CA)에서도 갈등해결 강사 트레이닝 과정 참가자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마들 창조학교

- ① 단체정보 : 마들 창조학교는 노원구에 위치한 마들 주민회의 산하기관이다. 마들 주민회는 10

년 전 상계어머니학교라는 이름으로 상계 4동 지역의 빈민여성 교육을 시작해 98년부터 동화교실, 나들이 반, 여름캠프 등, 지식 습득위주의 교육에 지친 지역 아이들에게 창조적 소양을 심어주고 나눌 줄 아는 공동체 정서 함양을 위한 마들 창조학교를 열었다. 현재 마들 창조학교는 서울지역 공부방연합회 소속 단체로서 인권교육과 일대일 멘토링 사업, 장학사업, 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이다.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137-3 송림빌딩 2층 마들주민회

▲ 전화 및 팩스 ; 02)938-2609, 02)952-0995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madlejumin.netian.com, madleadong@korea.com

-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인권아! 친구하자!!
-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2003년 5월~2003년 9월, 중학생 16명/고등학생 2명의 지역 청소년 대상.  
대부분 정부지원금을 받는 가정 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다.
- ④ 장소 : 마들창조학교, 공간이 모두 교실 형태로 활동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⑤ 모집 및 홍보 : 올 해 처음 인권교육을 진행하여 별도의 모집 및 홍보없이 마들창조학교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후 지역 인권교육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⑥ 주요 강사진 : 홍자영(서울시 대안교육센터 프로젝트 매니저변호사), 최석필(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이병준(한양대 법과대학 학술동아리 비무장지대)
- ⑦ 교재 :
  - ‘평화, 인권, 교육’, 강순원, 2000, 한올아카데미
  - ‘땅콩선생 드디어 인권교육하다’, 전국가사회사모임 인권교육분과, 2003, 우리교육
  - ‘인권교육 길잡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1999, 사람생각
  - ‘교육방법론 워크샵 자료집’, 고상준, 2002, 불런티어21
  - ‘인권의 역사’, 스키하라 야스오, 1995, 한울
  -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1999, 사람생각
  -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 오름
- ⑧ 예산 및 조달방법 : 마들 주민회 재정에서 예산 조달, 강사진이 모두 자원활동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비가 들어가지 않으나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다.
- ⑨ 교육 내용 및 방법 : 인권에 대한 놀이식 강의를 통해 인권에 대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minority)의 생활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세미나, 캠페인, 서명작업, 조사활동 등을 전개한다.
- ⑩ 교육효과나 독창성이 높았던 교재 : 교육방법론 워크샵 자료집, 고상준, 2002, 불런티어21 -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자신을 타인에게 소개할 때 나이나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항 뿐 아니라 꿈이나 버릇과 같은 주관적이고 잘 관찰이 안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질문해 나가면서 상대의 보다 내면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더욱 가까운 느낌을 느끼게 된다.

⑪ 교육효과나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 “터부토론” - 맥도널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는데, 다른 역할게임과 비교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보다 명확해 지고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체득할 가능성이 월등하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과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논리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⑫ 평가 :

- 단체의 평가 - 인권운동 전문단체가 아닌 일반 교육단체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역 내에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점과 다른 인권단체와의 연대, 빈곤층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점 등에 의미를 두고 있다.
- 담당자 평가 - 청소년들의 흥미를 충분히 유도해내지 못한 교육 내용상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으려는 마들 창조학교 청소년들의 개별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못했다.
- 참가자 평가 - 마들 창조학교 청소년들의 평가는 첫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겠다, 둘째, 내용이 너무 어렵다, 셋째, 재미가 없다 등으로 요약된다. 마들 창조학교 청소년들의 개별적 특성일 수도 있고, 교육 준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평가로 인해 자원 활동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 사회적 평가 : 마들 창조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역 공부방 연합회에서는 인권교육이 지역내 곳곳에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 연합회 내에서는 마들 창조학교 이외에 ‘푸른 교실’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홍사단 청소년인권센터

① 단체정보 : 홍사단(興士團)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의 자주 독립과 인물 양성을 위해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민족 운동 단체로,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 독립 운동 단체로서 국권 회복에 기여할 인물 양성에 노력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국민 계몽 운동 단체로서 금요강좌의 개최와 새벽지의 발간 등을 통하여 자유와 민주 사상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창단 50주년을 맞은 1963년부터는 미래 한국 사회 지도자와 홍사단 후계 세대 양성을 위한 청년 학생 운동으로 ‘홍사단 아카데미 운동’을 전개하였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사명감을 가진 지도적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회원 수련 활동’을 해오면서 국민 의식 향상을 위한 ‘시민 사회 교육’, ‘청소년 지도 육성’과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3대 시민운동으로 ‘민족통일운동’, ‘투명사회운동’, ‘교육·청소년운동’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 부설기관으로서 청소년인권센터를 운영하였으나, 2001년 센터가 해소되고 지금은 교육운동본부로 전환하여 청소년의회 등 민주시

민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

-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28
- ▲ 전화 및 팩스 ; 02)743-2511~4, 02)743-2515
-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www.yka.or.kr

-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청소년 인권신장 및 청소년 사회참여를 위한 청소년 포럼
-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2000년 5월~12월, 연인원 500명 가량의 청소년들과 청소년 관련 지도 대상(홍사단 아카데미, 녹색연합,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등)
- ④ 장소 : 홍사단 강당
- ⑤ 모집 및 홍보 : 각 참가단체의 청소년들을 통한 개인 홍보와 언론 홍보
- ⑥ 주요 강사진 : 권혜진(홍사단 전 청소년인권센터 실장)
- ⑦ 교재 : 청소년 인권프로그램집 1(1999년) -> 이 후 내용을 보완해 2권(2001년)을 펴냄
- ⑧ 연속교육 여부 : 1년간 매월 1회씩 총 6회
- ⑨ 예산 및 조달방법 : 총 1,200만원 정도 소요, 서울시 공모사업과 회원 회비를 통해 재정 마련
- ⑩ 교육 내용 및 방법 : 두발 자유화, 청소년 보호법의 존폐 논의, 학생의 날 공휴일 제정운동, 청소년 놀이문화, 고등학교 학생회 활성화 방안, 공동체 놀이 등을 주제로 주로 포럼 방식으로 진행
- ⑩ 교육효과나 독창성이 높았던 교재 : 자체 개발한 청소년인권교육 프로그램집이 청소년 정서에 접근이 용이하게 짜여져 있으며 다양한 측면이 있어 좋았다.
- ⑩ 교육효과나 반응이 높았던 세부 프로그램 :
  - 청소년 포럼 -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 문제의 사회적 접근이 용이했으며 청소년들의 참여율도 좋았다.
  - 학생 인권선언문 작성 - 학생의 날을 통해 선언문을 발표, 언론 쪽이 관심이 증대되었고, 작성과정에서의 교육적 효과가 높았다.
- ⑫ 평가 :
  - 단체의 평가 - 청소년 문제를 성인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하였다는 평가이다. 초기에는 청소년의 토론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찬반 형식의 배심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점차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 담당자 평가 - 단체별 참여를 통한 학생기획단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단체별 지도자들의 참여 역시 좋아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 폐지 논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보호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측의 토론으로 청소년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학생의 날 공휴일 제정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포럼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한다.

- ⑬ 기타 : 청소년 인권신장 및 청소년 사회참여를 위한 NGO 탐방활동(2000. 5), 청소년 인권교육 전문가 과정(2001. 11)

## 다. 성적 소수자

### ■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 '끼리끼리'

- ① 단체정보 : 성적 소수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만들어진 여성 성적 소수자들의 모임으로서 주로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 학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성애 바로알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 ▲ 주소 ; 서울시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 ▲ 전화 및 팩스 ; 02)703-3542, 02)703-3543
  -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www.kirikiri.org](http://www.kirikiri.org) , [kiri9411@chollian.net](mailto:kiri9411@chollian.net)
-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동성애 바로 알기' 강좌
-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연중 내내 교육을 진행.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4,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참가자들은 학생, 일반인, 상담원 교육 이수자, 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YMCA 성문화센터를 비롯해 30여개 단체에서 강연을 진행하였다.
- ④ 모집 및 홍보 : 인권단체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문안을 발송하고, 끼리끼리와 한국동성애자인권연합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있다.
- ⑤ 주요 강사진 : 여울, 박통, 시로, 아자, 케이(이상 끼리끼리의 활동가들)
- ⑥ 교재 : 각 강의의 담당자들이 각자 맡은 분야를 정리해서 교재를 만든다
  - 교재 내용 - '동성애 바로알기'가 필요한 현실, 동성애 관련개념 및 어휘 정리, 커밍아웃은 무엇인가, 아웃팅은 무엇인가, 호모포비아, 동성간 성폭력, 인권운동진영에서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소외 등.
- ⑦ 연속교육 여부 - 일회성
- ⑧ 예산 및 조달방법 : 단체 자체 재정으로 충당.
- ⑨ 교육 내용 및 방법 : 위에 서술한 내용에 기반해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에 팽배해 있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실제 경험자의 입으로 구체적인 현실을 알리는데 주요한 목표를 두고 있다. 방식은 대상과 인원수에 따라 세미나 방식과 강의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 ⑩ 평가 : 가능한 강사 이외의 1인이 모니터 요원으로 동행하고 강의 진행 후 강사와 모니터 요원이 함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 단체의 평가 - 2000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동성애 바로알기' 사업은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

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성교육 상담 활동가, 교육 활동가, 그리고 대학 여성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교육을 통하여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불식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

- 담당자 평가 -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기관에서 교육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이는 그만큼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좌사업이 일회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이는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야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 소수자 인권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게 하는 한계를 낳기도 한다.
- 참가자 평가 - 수강자들은 대부분 활동가이거나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경우 자발적인 수강이 아닌 형태이므로 대부분 주제의 접근도에 있어 자발성과 적극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성교육 활동가, 혹은 상담기관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강좌의 경우에는 참여도와 적극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1회에 지나지 않는 강좌시간을 통해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강사진 평가 - 성 소수자 인권운동단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안정적인 강사진을 조직하고, 지속적인 내부 세미나 등을 통한 준비 작업이 수월하지 않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소수의 강사진으로 많은 단체에서 일관된 강의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 동성애자 인권연대

- ① 단체정보 :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동성애자 억압에 반대하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그리고 이성애자가 함께하는 단체로서 동성애자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연대활동과 인권캠프, 세미나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이다.
  -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토종왕순대 건물 5층
  - ▲ 전화 및 팩스 ; 02)778-9982, 02)775-9983
  -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outpridekorea.com, lgbtpride@empal.com
-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대학 및 시민인권단체 강좌 /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 인권캠프를 개최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④ 모집 및 홍보 : 포스터, 웹사이트 홍보
- ⑤ 주요 강사진 : 정윤(동인련 대표), 장병권(동인련 교육국장)
- ⑥ 교재 : 자체적으로 출판한 교재 사용
- ⑦ 연속교육 여부 : 인권캠프는 연 2회, 내부 회원교육 프로그램은 월 2회

- ⑧ 예산 및 조달방법 : 인권캠프는 6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동인련 자체 회원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 ⑨ 교육 내용 및 방법 : 아직 자기 정체성에 대해 긍정하지 못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기 정체성을 긍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월 2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방식은 주로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강연자를 중심으로 회원34명과 함께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는데 2주~4주간의 프로그램은 '환영식', '용어로 풀어가는 동성애', '프라이드 프로그램', '억압이란', '교육 M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⑩ 평가 : 먼저 활동가 회의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회원들과 월1회 공유한다.

## 라. 장애인

### ■ (사)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 ① 단체정보 :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법 등 장애우 정책운동과 장애우의 인권을 확보하고 소송을 통해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이다. 현재 올곧게 장애 문제를 알려내기 위해 장애우 전문잡지 '함께 걸음'을 발간하고 있으며, '장애우의 참모습 세우는 장애우대학'은 2003년 5월까지 23기 총 1,2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해 장애 문제에 대한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 ▲ 전화 및 팩스 ; 02)521-5364, 02)584-7701
  -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www.cowalk.or.kr](http://www.cowalk.or.kr) , [psk328@hanmail.net](mailto:psk328@hanmail.net)
-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장애우 인권학교
-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수시교육, 매년 9~10월 중 인권학교 개최, 장애인권에 관심 있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 ④ 모집 및 홍보 :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회원들과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 동아리 학생들, 장애인 기관 종사자들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 ⑤ 주요 강사진 : · 인권단체 - 류은숙, 김영원(이상 인권운동사랑방),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정수(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장애인 단체 - 박경석(장애인이동권연대), 조 옥(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정책부장)
  - 자체 강사 - 김정열(소장), 박숙경(인권센터), 박옥순(정책실), 여준민(전 인권센터)
- ⑥ 교재 : '일상에서 인권찾기 - 내안의 인권, 사회속의 인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2
- 교재 내용 -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운동
3. 한국장애인인권운동의 역사와 의의
4.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정에서 바라본 이동보장 법률제정의 의미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6.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에서 세상바라보기
7. 소송운동을 통해 본 장애인 권리찾기
8. 인권, 평화감수성 훈련

⑦ 연속교육 여부 : 연 1회

⑧ 예산 및 조달방법 : 연 1천만원 정도의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⑨ 교육 내용 및 방법 :

- 1회 - 각 장애영역별 인권침해사례와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직능별 장애단체, 장애당사자들이 나와서 강의하고 하루종일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 2회 - 주당 2회의 강의방식(부분별 시청각자료 활용)으로 진행하였으며, 내용은 위의 인권자료집 목차와 같다.
- 3회 - 2박3일의 캠프형식으로 진행하였다.

⑩ 교육효과나 반응이 높았던 세부 프로그램 :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 진행한 인권침해토론과 시창작, 인권마을짓기등 다양한 방식은 모든 성원의 수준에 상관없이 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비디오를 통해 강의실에서 경험할수 없는 투쟁현장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더 적극적 관심을 갖게 하였다.
-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콘서트를 통해 반전과 평화, 인권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들고(콘서트 이야기손님으로 반전이라크평화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서 참여함), 반전의 노래를 함께했다. 또한 전쟁과 장애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음으로서 더 효과가 높았다.

⑪ 평가 :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실무자간의 평가회의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 단체의 평가 : 주제와 내용이 시기 적절하였으나, 일반참가자들이 주제를 무겁게 느낄 수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은 좋았으나, 참석자들의 부족으로 예산이 초과되어 앞으로 홍보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담당자 평가 : 준비시기가 늦어 홍보에 주력하지 못하였고, 추석 다음 주라는 일정이 참가에 무리가 따랐다. 전체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은 의도한 바에 맞게 잘 진행된 편이고, 강사진과 호흡도 잘 맞았다.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서울, 경기 근방의 저렴한 장소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다.
- 참가자 평가 : 설문조사시 거의 만족이나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참가자들은 그동안 서울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가하기가 어려워 캠프 형식을 선호하였다.

## ■ 장애인실업자 종합지원센터

- ① 단체정보 : 장애인실업자 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노동자를 실업자로 내모는 사회구조, 장애는 곧 노동 무능력으로 규정하는 사회편견, 노동현장에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장애인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자 만들어졌다.
  -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3
  - ▲ 전화 및 팩스 ; 02)702-1574, 02)702-1573
  -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www.jscenter.or.kr](http://www.jscenter.or.kr) [webmaster@jscenter.or.kr](mailto:webmaster@jscenter.or.kr)
-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장애인 노동자 권리찾기 교실
-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2003년 8월~11월, 장애인 노동자 및 장애인 실업자 25~30명 대상
- ④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현교회,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함.
- ⑤ 모집 및 홍보 : 포스터제작, 인터넷 장애인신문 배너광고, 장애인단체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
- ⑥ 주요 강사진 : 박경석(장애인 이동권연대), 문상민(한신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유의선(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안태현(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 최진협(민주노총 법률센터 노무사)
- ⑦ 교재 : 공동작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료집 제작
  - 교재 내용 - 1주제 : 장애인 노동자 권리찾기
    - 1강: 오리엔테이션
    - 2강: 장애인노동자의 삶과 현실
    - 3강: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보기
    - 4강: 노동과 여성
    - 5강: 노동법바로보기
    - 6강: 노동자와 노동조합
    - 7강: 장애인 노동권과 장애인 노동조합
  - 2주제: 나에게 떠나는 여행
  - 3주제: 장애인 노동자의 올바른 권리주장하기
- ⑧ 연속교육 여부 : 주당 2회씩 월 8회 교육
- ⑨ 예산 및 조달방법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12,153,000원을 지원받음. 그 외 단체 재정으로 3백만원을 추가로 조달하였다.
- ⑩ 교육 내용 및 방법 : 위의 자료집 내용을 토대로 2시간 강의 후 1시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 ⑪ 평가 : 교육이 끝난 후 토론회를 통해 평가작업을 진행하였다.
  - 단체의 평가 : 강사들이 대부분 현장 활동가들이라 섭외가 너무 어려웠고 전반적인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 담당자 평가 : 시간의 부족과 단체 내부 문제로 준비가 미흡했다.
- 참가자 평가 : 대중교통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종종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미흡했다.
- 강사진 평가 : 토론을 통하여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 마. 언론

### ■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① 단체정보 :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은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을 목표로 1984년 창립된 언론운동 단체이다. 그동안 '언론학교', '모니터교실', '대학언론강좌', '다큐멘터리 사진강좌' 등의 대국민 언론교육과 언론 모니터, 언론교육자료집 등 언론관련 문헌발간, 토론회 개최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연대활동으로 방송개혁국민회의와 시청자연대회의,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조선일보 반대시민연대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한국 기사연빌딩 1층
- ▲ 전화 및 팩스 ; 02)392-0181, 02)392-3722
-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www.ccdm.or.kr](http://www.ccdm.or.kr) , [ccdm1984@hanmail.net](mailto:ccdm1984@hanmail.net)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소수자 인권찾기를 위한 방송모니터 교실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2003년 5월 20일~6월 10일, 매주 화, 목요일(총 7강), 대상은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단체의 활동가들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④ 장소 : 민언련 교육관

⑤ 모집 및 홍보 : 인터넷 및 전화 홍보

⑥ 주요 강사진 :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 박웅진(방송진흥원 연구원), 이송지혜(민언련 모니터부장), 최한성(문화평론가), 김유진(민언련 기획부장), 김택수(변호사, 민언련 정책위원)

⑦ 교재 : 없음

⑧ 예산 및 조달방법 : 자체 조달

⑨ 교육 내용 및 방법 : 교육은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교육내용 - 5/20(화)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 이주영 (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
- 5/22(목) 방송프로그램 속의 소수자 / 박웅진(방송진흥원 연구원)
- 5/27(화) 보도·교양프로그램 모니터 방법 I-보도 / 이송지혜(민언련 모니터부장)
- 5/29(목) 보도·교양프로그램 모니터 방법 II- 시사교양/최한성(문화평론가)
- 6/3(화) 모니터 실습 / 이송지혜 (민언련 모니터부장)
- 6/5(목) 모니터 보고서 작성법 / 김유진(민언련 기획부장)
- 6/10(화) 언론관련 인권침해 구제 방법 / 김택수(변호사, 민언련 정책위원)

⑩ 교육효과나 반응이 높았던 세부 프로그램 : 실습분야, 실질적인 방송모니터링 진행을 통해 인권을 침해 사례를 지적.

⑪ 평가 :

- 단체의 평가 :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유의미한 활동이었다는 평가와 앞으로도 다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지속화시켜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담당자 평가 : 다른 단체와의 연대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방송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강좌 상에는 인권교육과 실습보충이 필요하고, 모니터링 또한 좀더 과학적인 방식이 요구된다.
- 참가자 평가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했고, 방송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 강사진 평가 : 인권교육과 관련된 깊이 있는 토론이 부족했고, 별도의 토론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사회적 평가(언론 및 타단체 등) : 방송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무관심을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타 단체에서도 방송모니터링을 통한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 ■ 한국언론재단

① 단체정보 : 한국언론재단은 언론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언론인 연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 언론문화 선진화를 위한 언론지원 및 행사개최, 언론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언론관련 연구 조사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또한 언론정보화 사업과 출판사업, 그리고 정부 등 공공기관의 홍보와 광고를 위한 정부광고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언론인의 취재와 상호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위해 한국프레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 주 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2-15층

▲ 전화 및 팩스 ; 02)2001-7833, 02)2001-7830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www.hrights.or.kr](http://www.hrights.or.kr) , [hrights@chol.com](mailto:hrights@chol.com)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인권분야 담당기자 전문연수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2003년 9월 29일~10월 2일, 17명의 전국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기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연수를 실시하였다.

④ 장소 : 양평 남한강 연수원

⑤ 모집 및 홍보 : 각 언론사 대표이사에게 참석자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하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하였고, 미디어오늘에서 관련 기사를 제공하였다.

⑥ 주요 강사진 : 박경서(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효제(성공회대 교수), 김창석(한겨레21 사회팀장), 김희수(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황금명륜(한국여성단체연합

기획국장), 오동진(전 시네버스 편집장), 홍석천(연예인)

- ⑦ 교재 :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였다.
- ⑧ 연속교육 여부 : 2000년부터 연 1회씩 실시하였다.
- ⑨ 예산 및 조달방법 : 총 예산은 8백 8십만원으로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 ⑩ 교육 내용 및 방법 : 인권분야 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인권분야' 전문연수는 종합일간지 10명, 지상파 방송 5명, 케이블 방송 1명, 인터넷 매체 2명 등 총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9. 29(월)부터 10. 2(목)까지 3박 4일 동안 연수센터 및 남한강 연수원에서 총 8강좌 21시간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좌구성은 인권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국가인권위원회 박경서 상임위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와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강좌(김창석 한겨레21 팀장), 인권영화 이해 강좌(오동진 전 시네버스 편집장) 등을 개설하였으며, '개인인권과 언론보도' 강좌에서는 2000년 커밍아웃 이후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에 당한 연예인 홍석천씨를 강사로 초빙하였다.
- ⑪ 교육효과나 반응이 높았던 세부 프로그램 : 연예인 홍석천 씨를 강사로 초빙한 것은 기자들이 취재원과 교감을 나누면서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바. 정보인권

### ■ 진보네트워크센터

- ① 단체정보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본과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자유롭기 위해 투쟁하는 진보운동의 독자적인 정보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 진보운동의 각 부문간,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되살려 사회적 연대전선을 재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또한, 진보운동의 개별화를 극복하고 진보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겪고 있는 네트워크 활용 상의 어려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분산되어 있는 진보운동의 정보화 성과물들을 모아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 ▲ 전화 및 팩스 ; 02)7744-551, 02)7744-553
  -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www.jinbo.net](http://www.jinbo.net) , [jinbonet@jinbo.net](mailto:jinbonet@jinbo.net)
-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정보화와 인권
-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2001년 9월 15일~10월 15일/ 2003년 7월, 주 2회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하며, 5명~20명의 단체활동가, 학생, 일반인들이 주요 참가자들이다.
- ④ 장소 : 단체 교육실

- ⑤ 모집 및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사회과학 서점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 ⑥ 주요 강사진 : 장여경(진보네트워킹센터 사무국장), 윤현식(지문날인반대), 이은우(변호사)
- ⑦ 교재 : 1회 - '2001 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 <http://act.jinbo.net/education> /  
2회 - '내가 꼭 알아야할 정보화시대의 인권' <http://rights.jinbo.net>
- ⑧ 연속교육 여부 : 연 1회
- ⑨ 예산 및 조달방법 : 1회 때는 한국인권재단에서 후원, 3회는 강의수강료로 조달
- ⑩ 교육 내용 및 방법 : 강의 후 토론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 1회 - 감시와 프라이버시/ 4개 강좌
    -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4개 강좌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4개 강좌
    -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 4개 강좌
    - 정보화와 사회운동/ 4개 강좌
  - 2회 - 정보인권 개요
    - 표현의 자유/ 반감시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공유의 권리/ 정보접근권
    - 감시와 프라이버시/ 2개 강좌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2개 강좌
    - 보편적 서비스와 접근권
    - 전체 토론
- ⑩ 평가 :
- 참가자의 평가 - 정보인권의 내용이 생소하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교육 방식이 강의 위주라 단조롭다는 평가도 있었다.
  - 강사진의 평가 - 교육내용이 참가자별로 세분화되지 않아 강의수준을 맞추기가 힘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 사. 난민

### ■ 피난처

- ① 단체정보 : 피난처는 자원활동을 통하여 난민, 외국인노동자, 인권피해자 등 고난 당한 국제사회 소수자와 약자들을 구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부여받은 존엄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건설하는 국제기독교 자원활동가들의 모임이다. 1999년 6월 14일 창립되어 국제난민들이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과 국제난민문제와 인권문제, 해외탈북난민과 국내북한이주민문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문화의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쿠르드 난

민, 버마 난민, 방글라데시 난민등 여러 난민그룹과 국제적 소수자와 약자들을 위한 인권보호 자원활동을 개척해 가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5-1 고려 3층

▲ 전화 및 팩스 ; 02)525-7105, 02)523-7381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pnan.org, pnan@pnan.org

-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국제난민학교 / 자유터학교-북한자유이주민 통일학교
-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제난민학교는 10명의 한국대학생들과 난민, 자유터학교는 15명의 북한이탈주민들과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④ 장소 : 구로동의 지하방, 약 8평 정도의 월세 15만원짜리 방
- ⑤ 모집 및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와 개인 홍보
- ⑥ 주요 강사진 : 없음.
- ⑦ 교재 :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 교재 내용 - (1) 국제난민법, (2) 국내난민보호절차, (3) 세계난민의 실태와 현황, (4) 세계 각국의 인권정보, (5) 북한난민과 인권, (6) 쿠르드난민과 인권, (7) 버마난민과 인권, (8) 줌난민과 인권, (9) 피난처 난민보호활동
- ⑧ 연속교육 여부 : 연 4기로 나누어 1기당 10주씩, 월 5회 교육(매주 토요일)
- ⑨ 예산 및 조달방법 : 월 150만원, 회원회비와 교회 후원금으로 충당.
- ⑩ 교육 내용 및 방법 : 교육은 피난처 자원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강사로 발표하는 세미나식으로 진행된다. 국제난민학교는 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난민그룹을 중심으로 세계난민의 실태와 난민발생국 인권상황을 교육하되, 피난처 자원활동가들이 위 각 주제별로 준비하여 발표하는 세미나식으로 매주 토요일 14시-16시에 10주과정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수별로 수료시킨 뒤 난민지원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게 한다. 그리고, 자유터학교는 대학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영어(기초와 중급), 중국어를 기본으로 야학형태로 운영한다.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과 과목에는 유연성을 두고 있다. 탈북 청장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일반상식이나 문화부분은 따로 수업을 만드는 것보다 영어와 중국어 시간이나 문화체험 시간에 수업내용에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월 1회 이상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참여와 노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화, 연극, 뮤지컬, 전통문화의 감상을 통해 남북한의 다른 문화를 체험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알도록 하여 통일 후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들을 토론해 보고, 외국인노동자, 난민, 수해 복구, 집짓기, 노약자 장애인 목욕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남한의 건강하고 선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계절 프로그램으로는 모내기, 추수하기, 여름, 겨울 수련회, 조개채취, 밤따기, 언어잡기, 명절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함께 나누며 땀흘리며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고 있다.
- ⑩ 교육효과나 반응이 높았던 세부프로그램 : 탈북이주민에 대한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참여시킨 영

어와 중국어 교육이 탈북이주민들의 필요와 자부심에 맞아 떨어져 탈북자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동기가 되어 일반적으로 모이기를 꺼리고 고립되어만 가던 탈북자들 간의 벽을 허물고 이런 교육공동체를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끄집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 ① 평가 : 국제난민학교는 수료시 작성하는 에세이를 회원들이 상호평가하고, 자유터학교는 과제물을 교사가 평가하고 있다.
- 단체의 평가 : 국제난민학교는 비교적 활발하고, 자유터학교는 아주 활발하다. 즉, 둘 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담당자 평가 : 자유터학교 교사들이 아주 헌신적이고, 특히 외국인 자원활동가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다.
  - 참가자 평가 : 자유터학교에 참여하는 북한이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 ■ (사) 북한인권시민연합

- ① 단체정보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6년 5월 인권운동가·지식인·탈북자가 중심이 되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북한난민을 돕기 위해 발족한 단체이다. 그동안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NKHR)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계간지, '편지쓰기운동', 이메일을 통한 캠페인과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 및 재외탈북자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 이를 알리기 위해 『뉴스레터』(월간), 『생명과 인권』(계간), 자료집을 국문, 영문, 일문으로 간행하고, 학술토론회와 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으며, 재외 탈북동포들에게 생활비와 물품을 지급하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구호활동과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교복동 10-22 심지빌딩 401호

▲ 전화 및 팩스 ; 02)723-2671, 02)723-1671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www.nkhumanrights.or.kr](http://www.nkhumanrights.or.kr) ,

[international@nkhumanrights.or.kr](mailto:international@nkhumanrights.or.kr)

-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
-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2002년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대학생, 유관단체 관계자, 정부 관계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회당 30여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다.
- ④ 장소 : 단체 교육실
- ⑤ 모집 및 홍보 : 북한학, 국제학, 법사회복지학등 관련 학과들과 북한관련 단체홈페이지 게시판에 수강생 모집 공고를 내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이메일 홍보도 하고 있으며,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진행한다.
- ⑥ 주요 강사진 : 정영선(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과), 장복희(가톨릭대학 교수), 진희관(동국대

북한학대학원 책임연구원), 이원웅(관동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병로(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⑦ 교재 : 강의별로 강사가 준비.
- ⑧ 연속교육 여부 : 연 3회 실시.
- ⑨ 예산 및 조달방법 : 연간 6백 35만원 소요, 일부는 통일부 인권환경팀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 조달하고 있다.
- ⑩ 교육 내용 및 방법 : 정해진 주제에 대해 강사를 섭외하고, 강의 담당자가 강의안을 준비하여 한시간은 강의를 하고 한시간은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강의내용 - 1강 인권의 정의와 역사/ 2강 21세기와 인권/ 3강 난민의 정의와 인정절차/ 4강 북한일반 / 5강 북한의 인권실태/ 6강 재외 탈북자 실태/ 7강 남북한 사회통합/ 8강 탈북자와의 대화/ 9강 북한인권 난민문제 해결의 접근 방향/ 10강 북한인권시민연합의 목표 및 성과
- ⑪ 교육효과나 반응이 높았던 세부 프로그램 : “인권의 정의와 인권운동의 역사”(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강의 - 수강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예와 기초부터 접근한 수업방식이 수강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주었다.
- ⑫ 평가 :
  - 단체의 평가 - 2002년 1,2,3기와 2003년 4기에 이어 실시하고 있는 5기 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는 회를 거듭할수록 등록 수강생뿐만 아니라 개별 수강생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5기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본부 파견예정자등 정부기관 연구소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계층의 북한인권과 난민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주고 있다.
  - 담당자 평가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관련 연구자 및 활동가, 북한이탈주민 등의 강의와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난민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 북한인권난민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수강생들은 물론 강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학생 및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참가자 평가 - 수강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통일에 관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북한인권에 관한 보수와 진보간의 논쟁에 휩싸여 올바른 북한인권관을 갖기 힘든 현실 속에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 강사진 평가 - 사회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보편적인 인권과 난민의 정의, 그리고 북한의 일반적인 상황을 시작으로 해서 교수, 언론인, 국제기구 담당

자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줄 수 있는 현재의 아카데미는 매우 유익하며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 사회적 평가(언론 및 타단체 등) - 현재 연합뉴스 등 언론사를 통하여 아카데미를 홍보하고 있고, 또한 북한관련 유관단체나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참여가 계속 증가 하고 있다. 이는 아카데미에 관한 여러 언론과 단체들의 증가되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아. 평화교육

### ■ 평화인권연대

- ① 단체정보 : 평화인권연대는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저항하고, 차이와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는 평화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98년 5월 창립된 단체로, 핵심 중점사업으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운동을 들 수 있다.
  -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5층
  - ▲ 전화 및 팩스 ; 02)393-9085, 02)363-9085
  - ▲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peace.jinbo.net](http://peace.jinbo.net), [peace@jinbo.net](mailto:peace@jinbo.net)
- ② 교육 프로그램 명 : 평화캠프
- ③ 시행 기간 및 대상 :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여름 고등학생, 대학생, 병역거부자, 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평화캠프를 진행하였다(2002년에는 대만의 대학생들도 참가).
- ④ 장소 : 시골학교, 난지 캠핑장, 비용이 안드는 곳과 캠프 마지막에 진행될 행진 및 캠페인이 용이한 장소로 정하였다.
- ⑤ 교재 : ‘갈등해결 배우기 : 이론, 방법, 적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Help Increase the Peace’, 미국 친우봉사회
- ⑥ 연속교육 여부 : 연 1회 교육
- ⑦ 예산 및 조달방법 : 회당 약 100만원~300만원 정도 소요, 참가자들의 회비와 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 ⑧ 교육 내용 및 방법 : 캠프는 크게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공동워크샵과 개별 워크샵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올 해의 경우 공동워크샵 주제로 ‘비폭력이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진행되었고, 개별워크샵은 ‘평화체조’, ‘실뜨기, 바구니 만들기’, ‘티셔츠도 미디어다’, ‘살고싶은 마을 꾸미기’, ‘우와족 이야기’, ‘의사소통워크샵’, ‘갈등해결 워크샵’, ‘중재자 훈련’ 등이 있었다. 개별워크샵의 참가여부는 전적으로 참가자 개인에게 달려 있고, 캠프의 마지막에는 행진이나 비폭력캠페인을 진행한다.
- ⑨ 교육효과나 반응이 높았던 세부 프로그램 :
  - 의사소통워크샵 -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느낌 나누기 워크샵, 2명이 짝을 이루어 ‘느낌’을 전

달하고, 상대의 '느낌을 수용하는 느낌언어로의 대화방식 익히기

- 비폭력 트레이닝 - 폭력분석(군사주의를 떠받치는 기동 분석), 자원모으기(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캠페인 building(분석한 기동 중의 하나를 가진 자원을 활용해 무너뜨리기 위한 아이디어 모으기)

## 4. 조사 결과

본 보고서는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의 중간보고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서 조사의 한계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단체의 수가 16개 단체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2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다. 그래서, 표본집단의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면접조사에서 객관식 문항의 형태로 조사한 추가항목 조항들은 이번 중간보고서에서는 별도의 통계처리와 분석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시민사회 영역의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되는 기회요인과 장애요인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얻어진 결과와 각 단체 인권교육담당 활동가들과의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보았다.

### 가. 기회요인

면접조사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인권교육 담당자들은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로 '경험과 자료의 축적 및 개발'과 '참여자들의 인권의식 고취'를 주로 꼽았다. 이는 한국의 짧은 인권교육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197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KNCC 인권위원회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계 인권단체들과 민가협, 유가협 등의 군사독재에 맞선 양심·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 중심의 인권운동이었다. 그 뒤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20여명의 인권운동가들이 참가한 것을 계기로 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이 후 사회권 영역으로 인권운동의 범위를 넓혀나갔으며, 종합적인 인권센터를 지향하는 단체, 국제연대운동을 하는 단체, 지역인권운동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하였다.<sup>5)</sup>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인권교육을 위한 시도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이며, 그렇다면 한국의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의 역사는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각 단체 내에 인권교육을 기획하고 전담할 담당자가 거의 없어 대부분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단순한 형식이었으며, 교재도

5) '한국 인권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 박래군, 2002 인권활동가대회 자료집

외국자료를 그대로 번역한 자료들을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90년대 중후반 이후 많은 단체들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인권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활동가들이 양성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법들이 시도되었고, 교재도 직접 집필해서 스스로 만들어 낼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인권교육의 '경험과 자료의 축적'은 이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의 토대가 되고, 그것은 결국 인권교육의 전사회적인 확산과 인권의식의 고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 인권교육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 나. 장애요인

반면,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부분은 '사회적인 인식과 참여 부족'과 '예산의 부족', '교육 인력의 부족' 등이다. '사회적인 인식과 참여 부족'은 거의 모든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단체들은 대학입시 위주의 우리나라의 교육풍토에서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아직까지 인권교육은 '하면 좋지만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교육'으로 인식되거나, 필요성에는 동의하더라도 아이들이 참여하기는 힘든 교육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성적 소수자, 난민문제를 교육하는 단체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기보다 말 그대로 '소수'의 문제라는 인식이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단체 활동가들에게도 여전히 자리잡고 있어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일반시민들과 타 단체 활동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예산의 부족' 문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애요인으로 정부나 외부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 재정과 참여자들의 회비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데,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꼭 필요한 강사를 섭외할 수 없거나,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단체 내에 인권교육을 전담할 활동가를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한 재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가 내실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단체들도 있었다. 즉, 재정의 확보는 인권교육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측면들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제1의 과제가 되어서는 안되며, 인권교육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 인력의 부족' 또한 상당수 단체들이 경험하고 있는 장애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인력'이란 인권에 대한 지식과 기술, 올바른 태도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활동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실제 현장에서는 각 분야별로 극히 제한된 수의 인권교육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단체에서 행해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강사와 진행자로 나가고 있다. 그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이 다양한 교육방식과 내실 있는 교재, 새로운 인권운동의 흐름들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게 되고, 이는 인권교육의 폭과 깊이, 다양성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단체별로 인권교육을 기획

하고 준비하는 담당활동가들은 인권교육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내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좀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장애요인들은 일정부분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들로, 즉, '사회적인 인식과 참여'가 부족하다 보니 '예산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새로운 교육인력과 교재를 발굴하고 양성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는 다시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 다. 국가의 지원

이번 조사에 참여한 16개 단체들 중에서 인권교육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1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매우 그렇다'-10개 단체, '그런 편이다'-5개 단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자료의 공개와 지원', '정규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추가',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시설 개방'의 순으로 답하였다.

면접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자료의 공개와 지원은 주로 국가기관의 통계와 문서 등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규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의 장애요인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과 참여를 넓히는 것이 단체의 인권교육 활성화에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5. 정책 과제 및 제언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한국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은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로 일정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나간 권위주의 시기, 인권유린과 침해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온 시민사회 성원들이 민주화 이행기에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특히 여성, 장애인 등이 불리한 사회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권리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과 헌신은 이들 부문의 인권교육이 유망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요인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강화와 심화, 인권교육 담당자의 교육과 같은 내부적 한계 등은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시민사회단체 인권교육을 위한 정책과제

1. 시민사회단체의 특성과 활동에 맞는 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풀(pool) 제공
3. 교육방법론 개발과 인권교육 강사의 교육과 재교육
4.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시민교육, 민주주의 교육과 연계 실시
5. 인권교육 자료(Kits, Resources) 확보와 제공
6. 인권교육 평가 방법론 개발
7. 인권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8. 인권교육 예산과 교육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 수립
9. 교육 대상자 모집과 홍보 방안 개발
10. 시민사회단체 간 유대 강화와 지리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권 교육 단체간의 네트워킹(networking)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메일링 리스트(mailing list) 및 리스팅(listing) 구축
11. 교육경험을 공유하고 정보와 자료의 교환과 인권교육 지식과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인권교육 담당자들 대상의 정기 워크숍(workshop)

# 초·중등 정규학교의 인권교육 실태와 과제

고 병 헌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 혜 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

## 순서

1. 서론 : 연구배경 .....	75
2. 연구방법 및 한계 .....	76
가. 연구목적	
나. 설문조사	
다. 연구의 한계	
3. 연구결과 .....	85
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나. 장애요인	
다. 활성화를 위한 제안	
4. 요약 및 제언 .....	107
가. 요약	
나. 제언 :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시 학교와 관련 논의되어야 할 과제	

# 초·중등 정규학교 인권교육 실태와 과제

고 병 헌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 혜 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

## 1. 서론 : 연구배경

교육이란 궁극적으로 개인 각자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가치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즉, 기존의 삶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선택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삶의 목표와 의미가 어떤 절대적 가치관이나 권력, 권위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육의 궁극적 원리는 인권의 기반 위에서 실현된다.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국가 행동계획 가이드라인'(1994)은 인권교육을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개발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인간의 자유, 존엄, 평등을 세계의 보편가치로 설명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학교 교육내용과 교수방법들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인권'이라는 말은 붙지 않았지만, 학습자의 타인 존중과 자기존중, 협동, 배려 등의 덕목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령, 영국의 경우, 인권관련 지식과 기능을 그 자체 목적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인권교육의 이념을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성 속에서 통합적으로 구현하고 있다<sup>1)</sup>. 미국의 경우에는 인권교육의 이념과 운영원리를 교사평가의 준거로 사용하는데, 대표적 교원양성 평가기관인 NCATE<sup>2)</sup>, NPPTS<sup>3)</sup>, INTASC<sup>4)</sup> 등은 교사의 기본자질 및 능력으로서 교사는 학습자의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성별, 인종적 차이를 존중해야 하며,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를 위한 교수방법을 가져야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인권교육이 활성화되면 교사의 권위가 무시되거나, 학생통제가 어려워져 학업성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한국의 경우와 달리, 영국과 미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성 여부를 학교와 교사 평가의 준거로 삼고 있으며, 인권교육의 가치가 교육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세계 보편가치로서의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권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학교교육이 인권의 원리

1) DFES(영국 교육청 훈령)의 QTS(Qualified Teacher Standard) 전문

2) NCATE((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교사양성기관에 대한 인증

3) NBPTS(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 경력교사 대상 국가수준의 자격증 부여

4) INTASC(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 초임교사 대상 교사자격 부여

속에 놓여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교육의 체계적, 공식적 장으로서의 학교는 인권교육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불모지가 아닌, 교육의 규범적 범주 속에 이미 내재해있는 잠재적 가치를 실현시켜야 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및 가치를 사회의 보편윤리로 상승시키고, 민주적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장기적 과제보다는 당장 돌출되어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하게 퇴치하기 위한 단기적 해결전략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권교육의 잠재적 실현지역이 할 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학생은 노출된 인권침해 피해자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육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학교문화, 입시중심의 교육풍토, 남북분단에 따른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 및 군부독재로 인한 반인권적 사회풍토 등에서 종합적으로 기인한 현상이다. 그러함에도 학교는 사회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문화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교육지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인권교육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기 위해 학교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법적, 제도적 정비만으로 인권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연구방법 및 한계

### 가. 연구목적

본 설문조사는 학교의 인권교육 운영 현황과 인권교육 운영과정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되었다. 대개의 교사대상 인권교육 설문조사가 전국의 일반교사들의 인권의식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본 설문조사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목적은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

- 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은 어떠한 형태의 인권교육을 운영하는가.
- ②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은 무엇인가.
- ③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활용되는 기자재, 교구, 교재의 유용성은 어떠한가.
- ④ 교육프로그램 진행 이후 평가과정은 어떠한가.
- ⑤ 초등, 중등학교 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 ⑥ 교육경력 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나.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과정의 장애요인을 파악한다.

- 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② 인권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다.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의 요구를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① 설문응답 결과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② 학교급 별로 개선점은 어떻게 다르게 제안될 수 있는가.

라.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학교의 인권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검토되어야 할 기초 과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설문조사

### 1) 설문조사지 개발

설문조사지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선행연구 분석

질문지의 제작을 위해 우선 교사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인권교육 관련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관한 단편적인 조사를 찾을 수 있었고, 일반 교사대상의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한 대단위 설문지 역시 간헐적으로 제출되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자료 중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연구」(2002,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과 「인권교육의 도입 및 활성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2001, 설훈 국회의원)이 도움이 되었다.

#### ② 인권교육 관련 교사 면담

본 설문의 목적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운영현황과 장애요인 이해에 있다. 따라서 학교환경의 다양한 영역 중 질문되어야 할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학교현황에 대한 개괄적 이해가 요청되었다. 이에 2003년 8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현장 교사들 중 일부에게 인권교육의 활성화가 저해되는 요인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 활성화가 저해되는 이유

대상·자료 등이 풍부해 인권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제 수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많다.

- 1) 대부분 교사들의 인권교육 인식이 낮다.
- 2) 학교 관리자들의 비협조, 학교 관리자 역시 인권마인드가 부족하다.
- 3) 학교 내의 관료적 분위기 및 권위적 문화
- 4) 학생들의 요구와 방법을 무시 vs '교권' 이 대치되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인권, 교사인권의 갈등 발생
- 5) 교사가 가지는 신분상의 이중성
  - 통제자로서의 교사 vs 인권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주체

③ 예비도구 제작

선행연구와 교사면담을 바탕으로 인권교육 경험 교사에게 제공될 설문지를 예비 제작하였다.

④ 수정, 보완

제작된 설문지를 연구팀 내 논의와 검증을 통해 자체 수정했으며, 현장 교사 2인에게 의견을 구해 검토하도록 하였다.

⑤ 도구완성

이상의 과정을 거쳐 설문지의 질문지가 확정되었으며, 해당 설문지는 주관식 질문유형이 많은 관계로 처음 방문 수거에서 이후 E-Mail 발송을 통해 수거되었다.

2) 설문조사지 구성

본 설문조사는 인권교육의 경험이 있는 교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데 주력하고, 자유반응형 질문지를 통해 구체적인 제안을 얻고자 구성되었다. 전체 질문 문항은 20개로 구성되었고, 이 중 자유반응형 주관식 질문은 3개 문항이며, 각 객관식 질문에 추가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타” 의견과 추가 주관식 질문을 강조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내용구성

구분	영역	문항수	관련문항
영역 1	개인정보	8	기초질문 1,2,3,4,5,6,7,8
영역 2	인권교육 경험수준	4	본질문 1,2,3,4
영역 3	인권교육 운영현황 - 특성 - 운영형태 - 자원의 여건 - 평가	11	5, 6, 10 7, 7-1, 8, 8-1, 9 11, 12 15, 16, 17
영역 4	인권교육 장애요인	3	13, 14, 18
영역 5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안	2	19, 20

① 영역 1 : 개인정보

「개인정보」에는 성별, 연령, 지역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인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 교사의 교육운영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변인이라고 논의된 근무학교(초등/중등)와 교육경력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 ② 영역 2 : 인권교사 사전경험

설문응답 교사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전 경험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수행된 기존의 인권교육 현황을 묻는 학교용 설문조사지의 대부분이 묻고 있는 문항들이나, 기존 설문지의 가장 큰 오류는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이 확인되지 않은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의 현황을 질문한다는 데 있다. 즉, 교사의 직전교육(pre-service education)에서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표집 과정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③ 영역 3 : 인권교육 운영현황

영역 3에서는 인권교육 교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게 되는 운영과정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사가 수업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개발·계획-운영-평가의 세 부분으로 접근하고자 했으며, 세부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유형, 운영형태, 자원의 여건,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과정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연구팀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추가답변을 고려하여, 7-1, 8-1, 9-1의 자유반응형 문항을 포함시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

## ④ 영역 4 : 인권교육 장애요인

영역 4의 인권교육 장애요인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질문에 대한 보충 의견을 얻기 위해 18번 자유반응형 의견란을 추가하였다.

## ⑤ 영역 5 :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현실적 개선점과 과제가 필요한 지를 묻는 문항으로 전체 두 문항이 구성되었다. 주관식 의견조사 문항에서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이 다소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고 data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 문항에 답변을 요청하는 하위 항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에 19번 문항은 제언의 수준을 교과과정 및 수업운영 측면/ 교과서 및 교재수준 측면/ 학교 관리자 및 교육청 단위 수준/ 국가단위 수준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고, 20번은 19번 문항에서 제시된 제언을 단기/장기적 과제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 3) 설문대상

설문대상의 표집방법 및 선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 표집방법

- 목적표집(proposal sampling)
-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의도적 표집

■ 표집근거

- ① 초·중등 단위에서 인권교육단체로서 그 성격, 목적이 자명한 교사모임
- ② 인권교육 영역의 대표성을 갖춘 교사모임과 개인
- ③ 기타 - ①,②에 부합하는 단체 및 단체구성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사와 개인

■ 선정대상<sup>5)</sup>

- ① 초등단위 :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소속 교사  
「인권교육 소모임」(가칭) 소속 교사
- ② 중등단위 : 「전국사회교사모임」 내 인권교육 유경험 교사  
「인권교육을 통한 학급운영 동아리」 소속 교사 - 경기도  
서울시교육청 지정 인권교육 시범학교 교사  
기타 소규모 인원의 「인권교육 소모임」(가칭)에 소속된 교사
- ③ 개인: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 참여했던 교사 연구진 중 인권교육 유경험 교사  
①, ② 소속 교사의 추천을 받은 교사

■ 표본수와 설문 응답자

표본대상으로 연구초기에는 67명이 선정되었으나, 추후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학교현장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낸 교사 15명이 제외되어, 최종 52명이 표본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초등·중등별 선정된 표본수와 설문응답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표본수에 비해 설문지 수거 비율은 78.8%이다.

<표 2. 표본수와 설문지 회수 정도>

	표본수(명)	설문지 회수 정도(명)	설문지 오류
초등	20	14	0
중등	32	27	2
전체	52	41	2

5) 정식 명칭으로 활동하지는 않으나 소규모 모임 혹은 동아리 형태로 연구, 활동하는 교사모임의 경우, 연구자의 편의상 [인권교육 소모임(가칭)] 이라고 적습니다. 초등 단위에서는 1개 모임, 중등 단위에서는 2개 모임을 연구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 설문응답자 표본의 사전 인권교육 및 경험 정도

표본 52명 중 설문지에 응답한 교사는 전체 41명이며, 오류 처리된 결측 인원은 2명으로 전체 39명의 인권교육 교사가 설문에 참여했다. 39명의 응답자가 지닌 인권교육 사전경험은 다음과 같다.

<표 3. 인권 관련 교육 및 연수를 받은 횟수>

		교육횟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2회	18	43.9	46.2	46.2
	3~4회	6	14.6	15.4	61.5
	5~6회	2	4.9	5.1	66.7
	7회 이상	9	22.0	23.1	89.7
	받은 적 없다	4	9.8	10.3	100.0
	합계	39	95.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9		
합계		41	100.0		

<표 4. 인권관련 교육장소>

		인권교육받은 기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시민단체 혹은 인권관련단체	10	24.4	26.3	26.3
	교원단체	6	14.6	15.8	42.1
	교사모임 등의 자발적 모임	19	46.3	50.0	92.1
	기타	3	7.3	7.9	100.0
	합계	38	92.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7.3		
합계		41	100.0		

<표 3>,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39명의 교사 중 35명이 인권관련 교육 및 연수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장소는 소속된 교사모임이 가장 많은 19명으로 응답했고 다음으로 인권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받은 횟수는 1-2회 받은 교사가 전체 39명 중 1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7회 이상 받은 교사도 9명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사전교육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관련 교육 및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는 2명으로 나타났다.

인권과 관련된 교육모임(시민단체, 교사모임)을 참석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68.3%(28명)가 참석한다고 밝혀, 인권교육에 대한 사전 학습이 대개 교사모임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연한은 2년 이하인 교사가 29명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 연수횟수가 1-2회인 교사가 43.9%, 3-4회인 교사가 14.6%였던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몇 년내에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의 참여 및 관심이 증가했음을 반증하고 있다.<표3. 표 6>참조)

<표 5. 인권관련 교육모임 참석여부>

참석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참석하고있다	28	68.3	71.8	71.8
	과거에는참석했으나, 현재는 참석하지 않는다	9	22.0	23.1	94.9
	1회 이상 참석해 본 적이 없다	2	4.9	5.1	100.0
	합계	39	95.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9		
합계		41	100.0		

<표 6. 인권교육 프로그램 진행년수>

교육진행년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년 이하	15	36.6	38.5	38.5
	1년~2년	14	34.1	35.9	74.4
	2년~5년	9	22.0	23.1	97.4
	5년~10년	1	2.4	2.6	100.0
	합계	39	95.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4.9		
합계		41	100.0		

■ 설문 응답 대상의 기초정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중 여교사는 61.5% 남교사는 38.5%이다. 연령대로는 30대가 39명 중 20명으로 전체 51.3%로 가장 많고 다음은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 교사가 전체 39명 중 34명으로 나타나 젊은 교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경력은 0-5년 교사가 22명 ,56.4%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학교 급별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 교사는 전체의 35.9% 수준이었고, 중등계열 교사(중학교, 고등학교)는 64% 수준이며, 담당과목별로는 사회 및 도덕과 교사와 초등교사가 각각 34%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어과, 과학과, 가정 및 실업교과 순이다. (<표 7> 참조)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근무학교 급별과 교육경력을 중시하였다. 가령 초등학교 근무교사와 중등학교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과정에는 운영형태 및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교육경력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일부 설문문항의 분석결과에서도 교사의 교육경력 및 근무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실시

■ 기간 : 설문조사는 2003년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 방법

설문조사는 처음 두 주는 선정된 교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설문조사지에 주관식 문항이 일반 설문조사지에 비해 많고 자유반응형 질문의 답변요청 수위가 높아 설문응답자의 요청에 의해 이메일 수거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가급적 예상 표집규모와 일치하는 수만큼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표집원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융통성있게 실시되었다. 설문부수가 적은 반면에 설문기간이 오래 소요된 이유는 중간 중간 선정된 표본대상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표집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소요되었다.

■ 분석

인권교육 교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장애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된 본 설문조사는 SPSS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식 차를 알아보았다. 전체 질문지에 대한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분석과 배경변인 중 구체화시켜 알아보고자 했던 근무유형별, 교육경력별 변인을 별도로 살펴보는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자유반응형 주관식 문항은 중복되는 답변에는 중복횟수를 적어 두었고, 가급적 응답한 모든 답변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해당 자료는 모두 보고서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7>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일반적 특징		빈도(명)	퍼센트(%)	유효퍼센트
성별	남자	15	36.6	38.5
	여자	24	58.5	61.5
합계		39	95.1	100.0
연령	20-29세	14	34.1	35.9
	30-39세	20	48.8	51.3
	40-49세	5	12.2	12.8
합계		39	95.1	100.0
교육경력	0-5년	22	53.7	56.4
	6-10년	8	19.5	20.5
	11-20년	9	22.0	23.1
합계		39	95.1	100.0
근무학교	초등학교	14	34.1	35.9
	중등학교	25	61.0	64.1
합계		39	95.1	100.0
담당과목	국어교과	4	9.8	10.3
	사회 및 윤리교과	14	34.1	35.9
	과학교과	4	9.8	10.3
	가정 및 실업교과	2	4.9	5.1
	초등계열 (기타 1명 포함)	15	36.6	38.5
합계		39	95.1	100.0
근무지역 1	특별시 혹은 광역시	26	63.4	66.7
	중소도시	4	9.8	10.3
	농어촌 및 도서지역	9	22.0	23.1
합계		39	95.1	100.0
근무학교 지역 2	서울	22	53.7	56.4
	인천 및 경기	15	36.6	38.5
	그 외 지역	2	4.8	5.2
합계		39	95.1	100.0
비고	시스템 결측값 2명			
총합	41			

## 다. 연구의 한계

첫째, 설문지의 질문 보기를 구성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드러났다.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설문 수거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질문지의 5-6개 보기(선택지) 중 제외된 중요한 보기(선택지)가 드러났다. 따라서 교사의 의견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보기(선택지) 부재로 인해 일부 문항에서의 설문통계상 Missing 값이 늘어났으며, 이러한 한계가 노출된 문항은 12번, 15번 문항이다. 그러나 해당 문항에 대해 설문응답 교사의 대부분이 별도의 보기문항을 만들어 의견을 제시해주어, 결과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둘째, 표본수가 적은 관계로 학교의 인권교육을 보편적으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대개 모집단의 10%를 표본집단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나, 인권교육 경험교사의 경우 모집단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연구결과의 보편화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개선점 제안 및 정책결정을 위한 decision making 과정에 참고자료로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학교인권 교육의 현황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인권교육 경험 교사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학교인권 교육의 장기적인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있어 연구대상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 교원연수기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집단들의 요구조사와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향력있는 여러 집단의 요구조사와 현황파악 기초조사는 집단 간 특성, 교육에 대한 기대,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본 연구진은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책임 주체로서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현재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도 각 집단 별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요구하는 기대 수위와 효과도 다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인권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관계된 타 집단(stakeholder)에 관한 조사도 추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연구결과

#### 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 1) 특성

교사들은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토론유도 방식을 가장 높게 사용(46.4%)하고 있다. 현장체험이나 위탁교육이 절차가 까다롭고 별도의 준비가 많이 필요함에 비해 토론유도 수업은 준비도 비교적 간편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선 교사들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주되게 사용하고 있다.

<표 8> 교사들이 운영하는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Name	Count	Responses	Cases
토론유도	26	46.4	72.2
현장체험	8	14.3	22.2
위탁교육	2	3.6	5.6
기타	3	5.4	8.3
Total responses	56	100	155.6

5 missing cases; 36 valid cases

<표 9> 인권교육 프로그램 특성(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특성(%)					전체
		강의 중심형	참여 유도형	현장 체험형	위탁 교육형	기타	
근무학교	초등	23.8	57.1	4.8	-	14.3	100
	중등	34.3	40	20	5.7	-	100
	전체	30.4	46.4	14.3	3.6	5.4	100
교육경력	0-5년	25	56.3	9.4	-	9.4	100
	6-10년	50	41.7	8.3	-	-	100
	11-20년	25	25	33.3	16.7	-	100
	전체	30.4	46.4	14.3	3.6	5.4	100

(사례수 : 56)

교사들이 어떻게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지는 근무학교가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이나, 혹은 교사의 교육경력이 몇 년인가 하는 변인에 따라 다름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초등교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참여유도형]의 프로그램을 57.1%가 선택하여 강의중심형 프로그램 선택과 약 35%의 큰 차이를 보여 [참여유도형]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역시 [참여유도형]의 선택 비율이 [강의중심형]보다 많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비슷하게 사용됨을 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초등학생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방식의 선택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중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과부담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참여유도형]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교육경력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특성을 살펴보면, 0-5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와 11-20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간의 [참여유도형]프로그램의 운영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젊은 교사일수록 [참여유도형] 프로그램 운영을 자주 계획하고, 반면에 경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현장체험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전자는 젊은 교사가 새로운 교육 방법의 도입에 적극적임을 나타내며, 후자는 경력에 따른 다양한 학습유형의 노하우 축적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운영형태

**<표 1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형태**

Name	Count	Responses	Cases
교과내용	21	31.3	55.3
재량활동	19	28.4	50.0
특별활동	5	7.5	13.2
학급운영	20	29.9	52.6
기타	2	3.0	5.3
Total responses	67	100.0	176.3

3 missing ; 38 valid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교과시간, 학급운영, 재량활동 시간순으로 나타났다. 세 선택지의 비율이 비슷하여 해당 운영형태로 인권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특별활동 시간은 인권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이 아직 특별활동에 해당할 만큼 수업의 프로그램이 확고히 짜여져 있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고 본다. 앞으로 인권교육의 체계성과 완결된 형태의 수업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특별활동 시간에서의 인권교육관련 활동시간이 점점 더 늘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표 11 >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형태(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형태(%)					전체
		교과목 수업시간	재량활동 시간	특별활동 시간	학급운영 과정	기타	
근무학교	초등	11.5	46.2	3.8	38.5	-	100
	중등	44	17.1	9.8	24.4	4.9	100
	전체	31.3	28.4	7.5	29.9	3	100
교육경력	0-5년	26	30.8	7.7	30.8	5.1	100
	6-10년	36.3	18.2	9	36	-	100
	11-20년	41.2	29.4	5.9	23.5	-	100
	전체	31.3	28.4	7.4	29.9	3	100

위의 운영형태를 좀 더 세분화시켜 근무학교별 또한 교육경력별로 살펴본다면, 초등교사는 재량활동과 학급운영 시간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중등교사는 교과목 수업시간에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비율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학급운영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또한 재량활동 시간의 이용률도 높았다.

이를 분석하면 초등으로 갈수록 교과목 수업시간의 비율이 낮고 재량활동 시간 이용이 높아, 이전 표에서 언급했던 참여유도형 인권교육의 비율이 높은 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맞추어 교육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등교사의 경우 교과목 수업 시간에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데, 특히 본 연구에서는 관련 교과목이 사회 교과인 교사 참여가 많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육경력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형태도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경력이 적은 젊은 교사일수록 교과목 수업시간의 비율이 낮고 재량활동의 비중이 높은 반면, 경력이 높은 나이 많은 교사일수록 교과목 수업시간의 비중이 높고 반대로 재량활동시간의 비중이 낮았다.

특이할만한 점은 학급 운영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운영은 비록 경력높은 교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긴 했으나, 대체로 골고루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되고 있다. 이 점에서 학급 운영 시간의 자유롭고 일상적인 분위기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경력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인지되고 있다.

7-1 질문을 통해 운영형태의 선택 이유를 질문했고, 답변의 형태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과목 수업시간의 활용의 경우

- 독자적 수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준비 부족
- 인권교육에 대한 자신감 없음
- 독자적 프로그램 준비 어려움

② 재량활동시간

-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다. 또한 생활 안에서 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캠페인, 현장방문, 봉사활동 등 현장체험형 교육

- 좀 더 의미있는 클럽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 사회현상에 특별히 관심있는 학생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볼 수 있다.

④ 조중례, 학급회의 등 학급운영 과정에서 실시

-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학생 스스로 인권에 대해 깨닫게 해주기 위해
- 인권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록2참조)

<표 12 > 프로그램 실시 장소

Name	N	%	유효%	누적%
학교 내	26	63.4	66.7	66.7
학교 밖	1	2.4	2.6	69.2
둘 다	12	29.3	30.8	100
Total responses	39	95.1	100	100

2 missing cases; 39 valid case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는 학교 내가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교 내 외를 병행하는 경우가 그 다음이었으나 그 격차가 컸다. 이를 통해 인권교육은 아직 학교 내에서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회단체나 외부기관과의 연계는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 프로그램 실시 장소(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

		(%)			전체
		학교 내	학교 밖	둘 다	
근무학교	초등	78.6	-	21	100
	중등	60	4	36	100
	전체	66.7	2.5	30.8	100
교육경력	0-5년	68.2	4.5	27.3	100
	6-10년	75	-	25	100
	11-20년	55.6	-	44.4	100
	전체	66.7	2.5	30.8	100

초등, 중등에 상관없이 학교 내에서 실시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 혹은 사회인권단체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비연계성은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교사의 경력 차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통계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부 학교 외 장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은 사회단체 활동과 수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사회봉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 부록2 참조)

### 3) 자원의 여건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자재는 VTR, TV 등 보편적이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이다. 그 밖에 사용하는 기타 기자재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표 14> 활용하는 기자재

Name	Count	Responses	Cases
실물화상기	2	4.1	5.3
VTR / TV	29	59.2	76.3
기타	18	36.7	47.4
Total responses	49	100	128.9

3 missing cases; 38 valid cases

<표 15 > 활용하는 기자재(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

		활용 기자재					전체
		OHP	실물 화상기	VTR TV	슬라이드	기타	
근무학교	초등	-	1	11	-	8	20
	중등	-	1	18	-	10	29
	전체	-	2	29	-	18	49
교육경력	0-5년	-	1	16	-	11	28
	6-10년	-	-	6	-	4	10
	11-20년	-	1	7	-	3	11
	전체	-	2	29	-	18	49

<표 16> 보급되어야 할 기자재 및 교구

학습자료	인권 관련 파워포인트 자료 및 사진 자료 인권 관련 VTR, DVD 시청각 자료 인권 관련 애니메이션 및 동영상 자료 인권사전, 인권관련 게임도구
기자재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빔 프로젝터 고급 컴퓨터
기타의견	1)현장 교사가 가공하지 않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자료 필요 2)교사 간 정보 공유를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학생의 수준, 교사의 수준에 적합한 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자재 및 학습자료에 대한 8-1 문항의 답변은 <표 16>과 같다. 현장에 직접적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점과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료 요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청각 자료를 제작, 활용하기 위한 기자재를 요청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기타의견 중 일부 교사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교사 간 정보 공유를 위해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8-1 문항은 18번, 19번 문항과 연결되어 교재에 관한 문제점 지적이 나온 첫 번째 문항으로 볼 수 있다.

교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절대적으로 (약 70%) 인권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교사 본인이 직접 개발하기에 여건이나 지식적 부족을 가지고 있고, 교사용 지도서나 시민단체 제공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실질

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표 17 >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과정**

Name	N	%	유효%	누적%
교사용 지도서	1	2.4	2.6	2.6
시민단체 제공 프로그램	3	7.3	7.9	10.5
인권단체 제공 프로그램	29	70.7	76.3	86.8
본인 직접 개발	5	12.2	13.2	100
Total responses	38	92.7	100	

3 missing cases; 38 valid

**<표 18 >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과정(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

		개발과정					전체
		교사용 지도서 활용	국가기관 제공 프로그램	인권관련 시민단체 제공	인권관련 교사모임 제공	본인이 직접 개발	
근무학교	초등	-	-	2	12	-	14
	중등	1	-	1	17	5	24
	전체	1	-	3	29	5	38
교육경력	0-5년	-	-	1	21	-	22
	6-10년	1	-	1	5	1	8
	11-20년	-	-	1	3	4	8
	전체	1	-	3	29	5	38

**<표 19 > 사용하는 교재**

Name	N	%	유효%	누적%
교과서 활용, 참고자료 보완	3	7.3	7.9	7.9
교과서와 참고교재 동일비중으로 활용	3	7.3	7.9	15.8
인권관련 교재 주로 활용	20	48.8	52.6	68.4
별도 인권관련 교재만 활용	12	29.3	31.6	100
Total responses	38	92.7	100	

3 missing cases; 38

valid

**<표 20 > 사용하는 교재(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

		교 재 사 용					전체
		교과서만 활용	교과서 참고자료보완	교과서 동일비중 참고자료	별도의 인권자료 주로 활용	별도의 인권자료만 활용	
근무학교	초등	-	-	1	5	8	14
	중등	-	3	2	15	4	24
	전체	-	3	3	20	12	38
교육경력	0-5	-	1	2	12	6	21
	6-10	-	2	-	3	3	8
	11-20	-	-	1	5	3	9
	전체	-	3	3	20	12	38

인권교육의 교재 또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학교나 교육청의 자료보다는 별도 기관들의 인권 교재를 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교과서나 교과서 참고교재는 거의 인권교육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과서에 인권교육에 활용할 만한 정보나 지식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앞으로 교과서 개발 시 이러한 사항이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좀더 세부적으로 여러 교육자료의 활용 시 유용점에 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표 21> 교육당국 자료(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

		교육부, 교육청 등의 자료					전체
		매우 유용	유용한 편	보통	유용하지 않은 편	전혀 유용하지 않다	
근무학교	초등	-	1	2	2	3	8
	중등	-	2	11	2	2	17
	전체	-	3	13	4	5	25
교육경력	0-5	-	2	6	4	4	16
	6-10	-	-	3	-	-	3
	11-20	-	1	4	-	1	6
	전체	-	3	13	4	5	25

16 missing cases; 25 valid

교육당국 자료는 '보통이다'가 전체의 52%(13/25)를 차지하고, '전혀 유용하지 않다'는 전체의 20%(4/25)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긍정과 부정의 중간적 의미이므로 가치중립적 태도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국가자료를 아직 제대로 본 적이나 이해한 적이 없다고 판단한다.

**<표 22 > 국가인권위 자료(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

		국가인권위 자료					전체
		매우 유용	유용한 편	보통	유용하지 않은 편	전혀 유용하지 않다	
근무학교	초등	-	4	5	-	-	9
	중등	2	9	6	1	-	18
	전체	2	13	11	1	-	27
교육경력	0-5	-	7	9	1	-	17
	6-10	-	2	2	-	-	4
	11-20	2	4	-	-	-	6
	전체	2	13	11	1	-	27

14 missing cases; 27 valid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대해서 교사의 반응은 근무학교, 교육경력에 상관없이 '보통이다'를 포함한 긍정적 상위 반응이 96.3%(26/27)로 나타났다. 앞에서 교사들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계획 시 대부분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의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의 수가 문제가 된다.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질적인 자료들을 앞으로 계속 개발하고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과 국가인권위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유용성 질문은 타 질문과 다르게 오류처리가 되어 잃어버린 정보량이 많다. 교육당국 자료의 유용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16명의 교사가 응답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서는 14명이 응답하지 않았다. 두 정부기관의 자료는 접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서 였는데, 해당 선택지 보기에는 자료의 유용성 여부를 5단계 척도로 물었을 뿐, '접해본 적이 없다'라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료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는 의견은 설문지에 직접 기타란을 만들어 작성해주신 교사들의 의견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인권관련 시민단체 자료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앞에서 이미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던 빈도수와 일치하게 드러났다. ['보통'-'유용한 편이다'-'매우 유용하다']의 긍정적인 인식 상위 3개 항목에 100%(34/34)가 응답했다.

또한 인권관련 교사모임 자료도 보통이상의 긍정적 상위 3개 항목에 100%(37/37)이 응답함으로써 절대적 신뢰를 보이고 있다.

<표 23 > 인권관련 시민단체 자료(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

		인권관련 시민단체 자료					전체
		매우 유용	유용한 편	보통	유용하지 않은 편	전혀 유용하지 않다	
근무학교	초등	3	4	4	-	-	11
	중등	5	15	3	-	-	23
	전체	8	19	7	-	-	34
교육경력	0-5	3	9	7	-	-	19
	6-10	2	5	-	-	-	7
	11-20	3	5	-	-	-	8
	전체	8	19	7	-	-	34

7 missing cases; 34 valid

<표 24 > 인권관련 교사모임 자료(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

		인권관련 교사모임 자료					전체
		매우 유용	유용한 편	보통	유용하지 않은 편	전혀 유용하지 않다	
근무학교	초등	7	7	-	-	-	14
	중등	11	10	2	-	-	23
	전체	18	17	2	-	-	37
교육경력	0-5	12	8	2	-	-	22
	6-10	1	6	-	-	-	7
	11-20	5	3	-	-	-	8
	전체	18	17	2	-	-	37

4 missing cases; 37 valid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교사들의 인권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위 두 표와 같이 인권관련 시민단체나 자체적 교사모임 자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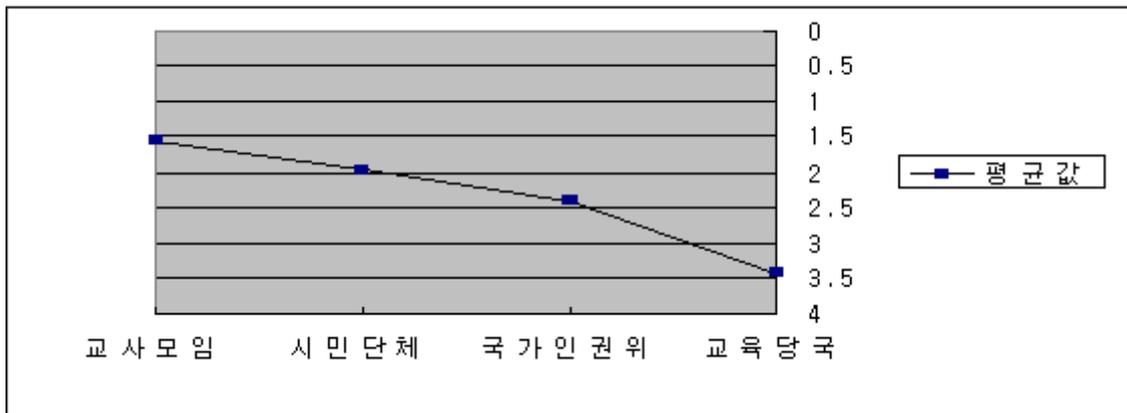
12번 문항은 교사에게 필요한 인권교육 관련 정보의 활용도와 유용성 평가를 보기 위해 제작된 질문이었다. 해당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 교사의 응답내용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그래프로 처리해보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며 활용하시는 자료의 유용성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유용하다 ② 유용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유용하지 않다 ⑤ 쓸모없다)

<표 25> 자료 유용성의 평균값

	퍼센트					N	평균값	표준 편차	Missing
	매우 유용 1	2	3	4	쓸모 없다 5				
교육당국	-	7.3	31.7	9.8	12.2	25	3.44	.96	16
국가 인권위	4.9	31.7	26.8	2.4	-	27	2.41	.69	14
시민단체	19.5	46.3	17.1	-	-	34	1.97	.67	7
교사모임	43.9	41.5	4.9	-	-	37	1.57	.60	4

<그림 1. 자료유용성 그래프>



교사가 생각하는 자료 유용성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인권관련 단체나 교사모임의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 교육부, 교육청 자료> 순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국가의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역할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교육부 및 해당교육청 등의 핵심 교육정부기관이 인권교육의 질 높은 교재 개발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존하는 교사모임 및 단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 4) 평가

인권교육 프로그램 진행 이후 교사들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만족도는 어떠한지 알아보는 질문지 3개를 제공하였고, 해당 결과의 분석을 통해 인권교육의 질적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또한 교사 개인의 평가 만족도가 ‘매우 만족한다’, ‘만족스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교사의 경우에 타 교육주체와 기관 및 평가 빈도가 어떠한지도 평가해보고자 한다.

**<표 26>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Name	N	%	유효%	누적%
교사 본인이 평가	7	17.1	17.9	17.9
교사와 학생과의 공동평가	8	19.5	20.5	38.5
교사와 동료교사의 공동평가	6	14.6	15.4	53.8
교사, 동료교사, 학생의 공동평가	7	17.1	17.9	71.8
이루어지지 않음	11	26.8	28.2	100
Total responses	39	95.1	100	

2 missing cases; 39 valid

평가는 전체의 68.3%가 이루어진다고 대답했다. 평가는 교사와 학생간의 공동평가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나, 각 형태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에 반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28.2%(11명)로 나타났고, 17.1%(7명)이 교사 본인의 평가로 평가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표본대상 수로 판단할 때 프로그램 실시 이후의 안정적인 평가와 학생까지 포괄하는 평가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평가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교육이 계획적, 체계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학교교육 내의 교사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 교사의 교육에 대한 질적 관리를 위해서 교사 스스로의 개인 평가 및 주변평가 특히 학생과의 공동평가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27 >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

		평가 및 피드백					전체
		교사 본인	교사+ 학생	교사+동료 교사	교사+동료 학생	이루어지지 않음	
근무학교	초등	3	2	3	4	2	14
	중등	4	6	3	3	9	25
	전체	7	8	6	7	11	39
교육경력	0-5년	4	4	3	6	5	22
	6-10년	2	3	-	-	3	8
	11-20년	1	1	3	1	3	9
	전체	7	8	6	7	11	39

초등으로 약 86%가 평가를 한다고 답했고, 이에 비해 중등은 64%만이 평가한다고 답해 초등이 중등에 비해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교육경력별 평가는 77.3%로 0-5년 교사들의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11-20년 71.8%, 6-10년은 63% 순이었다. 경력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 정도와 주변 교사 및 학부모, 학생 등의 교육주체가 인권교육 교사의 교육에 대한 평가를 진단한 내용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특징적인 점은, 첫째로 동료교사-학부모-외부기관의 평가에서는 Missing 숫자가 크게 드러나고 있는데, 동료 교사의 경우 14명, 학부모의 경우 20명, 외부기관의 경우 2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설문응답 교사 39명임을 고려한다면, 본인의 수업과 직결되는 교사 개인, 학생 평가만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의 타 교육주체 및 기관과는 연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응답을 오류 처리로 하지 않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12번 자료유용성 여부 문항과 마찬가지로, 설문 참여교사가 설문지에 해당 내용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둘째로, 동료교사-학부모-외부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은 교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8 > 프로그램 평가 - 교사 개인

Nam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한다	3	7.3	10
만족스러운 편이다	15	36.5	50
보통이다	11	26.8	36.7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1	2.4	3.3
매우 불만족스럽다	-	-	-
Total responses	30	73.2	100

11 missing cases; 30 valid

일단, 교사들의 만족도는 보통이다, 만족스러운 편이다의 긍정적 답변이 86.7%로 매우 높게 나

타나 기대 이상의 긍정적 평가 만족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인권교육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29 > 프로그램 평가 - 주변 동료 교사들의 평가**

Nam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한다	1	2.4	3.7
만족스러운 편이다	15	36.6	55.6
보통이다	11	26.8	40.7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	-	-
매우 불만족스럽다	-	-	-
Total responses	27	65.9	100

14 missing cases; 27 valid

주변 동료 교사들의 평가는 보통이다-만족스러운 편이다-매우 만족한다가 100%로 나타나 상당히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는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측값이 14나 된다는 것은 그냥 무응답이라기보다 평가 자체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좀 더 평가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30 > 프로그램 평가 - 학생 평가**

Nam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한다	1	2.4	2.9
만족스러운 편이다	25	61	73.5
보통이다	8	19.5	23.5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	-	-
매우 불만족스럽다	-	-	-
Total responses	34	82.9	100

7 missing cases; 34 valid

학생들의 평가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답변이다. 응답결과는 대체로 보통이다-만족스러운 편이다-매우 만족한다로 국한되어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 교과학습에만 국한되어 있던 학교 수업에서 인권교육 등의 특이하고 새로운 지식을 경험한다는 것에 학습적 흥미와 만족을 제공했다고 보여진다. 해당 결과는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교육효과와의 상관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이에 관한 세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표 31 > 프로그램 평가 - 학부모 평가**

Nam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한다	1	2.4	4.8
만족스러운 편이다	10	24.4	47.6
보통이다	9	22	42.9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1	2.4	4.8
매우 불만족스럽다	-	-	-
Total responses	21	51.2	100

20 missing cases; 21 valid

학부모 평가는 전체의 95.2%가 보통이다 이상의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불만족의 비율이 4.8%로 극히 작아서 대체로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결측값이 역시 20이나 되는 것은 평가 중에서도 특히 학부모 평가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내외에서 계획, 실시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학부모들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교육현장에서 인식 전환도 어렵고 인권교육이 뿌리내리기 힘들다.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법 마련이 시급하며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표 32> 프로그램 평가 - 외부기관 및 타 단체 평가**

Nam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만족한다	-	-	-
만족스러운 편이다	11	26.8	55
보통이다	8	19.5	40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1	2.4	5
매우 불만족스럽다	-	-	-
Total responses	20	48.8	100

21 missing cases; 20 valid

외부기관 및 타 단체 평가는 전체 응답 인원의 95%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결측값이 21이나 되어 결과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인권교육은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따라서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보다 여러 종류의 사회 단체들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만 계획을 진단하고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 후 후속활동을 교사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교사의 자체 평가로서, 인권교육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에 중요한 근거지점을 제공해 준다.

**<표 33 > 프로그램 종료 후 후속활동**

Name	N	%	유효%	누적%
인권관련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	2	4.9	5.1	5.1
인권관련 내용에 대한 감수성 증가	34	82.9	87.2	92.3
변화 없음	3	7.3	7.7	100
Total responses	39	5.1	100	

2 missing cases; 39 valid

가장 큰 후속적 변화는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한 감수성 증가(87.2%)이다. 이는 인권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활동이나 시각에 대한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종합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 평균값을 내면 다음과 같다.

15. 소개해주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만족스런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런 편이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표 34>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균값

	퍼센트					N	평균값	표준 편차	Missing
	매우 만족 1	2	3	4	매우 불만족 5				
교사개인	7.3	36.6	26.8	2.4	-	30	2.33	.71	11
동료교사	2.4	36.6	26.8	-	-	27	2.37	.56	14
학생	2.4	61.0	19.5	-	-	34	2.21	.48	7
학부모	2.4	24.4	22.0	2.4	-	21	2.48	.68	20
외부기관	-	26.8	19.5	2.4	-	20	2.50	.61	21

##### 5) 교사 (개인평가)만족도와 평가 여부의 관계 - 15-17번 문항 교차분석 추가

우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문항은 Missing 처리된 표본이 많은 관계로, 설문응답자의 빈도수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하며, 표 안에 기재된 %는 전체 인원 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도구로 인식해야 함을 전제한다.

15번은 교사 본인이 운영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본인, 주변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묻고자 제작된 질문이며, 17번 질문은 교사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과정을

묻는 문항이다. 15번, 16번, 17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만족도가 낮은 교사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5>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개인 평가**  
교사의 개인적 평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 만족한다	3	7.3	10.0	10.0
	만족스런 편이다	15	36.6	50.0	60.0
	보통이다	11	26.8	36.7	96.7
	불만족스런 편이다	1	2.4	3.3	100.0
	합계	30	73.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	26.8		
	합계	41	100.0		

위 표를 살펴보면,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만족스런 편이다’ 라고 응답한 교사는 18명이며, 보통 이하로 응답한 교사는 12명이다. 독립변수로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응답자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교사로 구분한 후, 동료교사 및 학생, 학부모가 어떻게 자신의 교육프로그램을 인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16번, 17번 문항과 연계하여 평가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36>을 보면 교사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교사의 경우, 학생/학부모가 인지하는 평가만족도가 만족도가 낮은 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주변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외부기관 평가**

15번.			주변 동료 교사들의 평가				전체
			매우 만족한다	만족스런 편이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런 편이다	
교사만족도	만족	빈도	1	11	3	-	15
		%	6.7%	73.7%	20.0%	-	100.0%
	불만족	빈도	-	4	8	-	12
		%	-	3.3%	66.7%	-	100.0%
학생들의 평가							
교사만족도	만족	빈도	-	17	1	-	18
		%	-	94.4%	5.6%	-	100.0%
	불만족	빈도	1	8	7	-	16
		%	6.3%	50.0%	43.8%	-	100.0%
학부모의 평가							
교사만족도	만족	빈도	1	8	-	-	9
		%	11.1%	88.9%	-	-	100.0%
	불만족	빈도	-	2	9	1	12
		%	-	16.7%	75.0%	8.3%	100.0%

			외부기관 및 타 단체의 평가				전체
교사만족도	만족	빈도	-	7	2	-	9
		%	-	77.8%	22.2%	-	100.0%
	불만족	빈도	-	4	6	1	11
		%	-	36.4%	54.5%	9.1%	100.0%

<표 37> 프로그램 종료 후 활동과 평가 및 피드백 방법

			프로그램 종료 후 후속활동				전체	
16번.			학교내 인권 관련 단체 생김	인권 관련 단체에의 참여	인권감수 성 증가	변화없음		
교사만족도	만족	빈도	-	1	15	2	18	
		%	-	5.6%	83.3%	11.1%	100.0%	
	불만족	빈도	-	1	19	1	21	
		%	-	5.1%	87.2%	7.7%	100.0%	
			평가 및 피드백 방법				전체	
17번.			교사본인	교사+학 생	교사+동 료교사	교사+동 료교사+ 학생		이루어지 지 않음
교사만족도	만족	빈도	5	5	2	5	1	18
		%	27.8%	27.8%	11.1%	27.8%	5.6%	100.0%
	불만족	빈도	2	3	4	2	10	21
		%	9.5%	14.3%	19.0%	9.5%	47.6%	100.0%

교사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모두,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들의 후속활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보기 ③ 특별한 활동은 없으나,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한 감수성 증가]로 대부분 답하고 있다. 학생평가 부분에 있어, 교사의 개인평가 만족도가 유효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점과 연결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방법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은 교사의 경우, 교사본인은 물론 주변 동료교사 및 학생과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실행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교사의 경우에는 [보기 ⑤ 피드백 및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로 답변한 교사가 21명 중 10명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설문조사의 표본 대상은 여러차례 밝힌 바처럼, 인권교육에 대한 사전경험이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교사 중 만족도가 높은 교사의 경우, 주변 동료교사 및 학생, 학부모의 평가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피드백 방법에 있어서도 더욱 다양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교사의 경우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을 높게 하고 있다.

위 3개 문항에 대한 교차분석은 연구결과를 확정짓기에 엄밀성은 부족하지만, 교사의 개인평가

만족도 여부가 주변 교육주체들에 대한 교사의 인지와 이후 평가 연속성에 있어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인권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추후 연구가 엄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교사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학교환경과 수업지원에 대한 개선점 모색이 필요하겠다. 이는 교사 개인의 교수 환경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긍정적 평가 결과를 모색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질적 개선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과정이다.

## 나. 장애요인

교사들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을 파악하고자 개발과정의 어려움을 우선 질문하였다. 문항 13번 모든 선택지에 약 20% 수준의 고른답변을 하였다. (<표38> 참조). 복수응답 사례가 94이고 39명 모두가 응답한 질문으로, 설문응답자 1인당 최소 2회 이상 복수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어려움은 교사의 개인적인 지식부족부터 외부기관의 협력 부족까지 폭넓은 범주에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교사본인의 지식부족을 선택한 사례는 약 25%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의 교차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초등단위의 경우 지식부족을 8번 응답했으며, 중등단위의 경우 15번 응답되었다. 물론 복수응답 가능 문항이었으므로, 인원 수는 표본 수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으나, 인권관련 교육 및 연수횟수 경험이 없던 교사가 거의 없던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주지할 만한 점이다.

<표 38>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어려운 점

Name	Count	Responses	Cases
교재부족	18	19.1	46.2
동료교사들의 협조 및 인식부족	19	20.2	48.7
외부기관의 협력 및 연결부족	10	10.6	25.6
교사본인의 지식부족	23	24.5	59.0
개발할 시간부족	24	25.5	61.5
Total responses	94	100.0	241.0

2 missing cases; 39 valid cases

사례수를 중심으로 기술한 아래의 교차분석에서, 초등단위의 교사가 선택한 개발과정 어려움으로 교사본인의 동료교사 협조부족, 교재개발 시간부족, 교사본인 지식부족이 나타났으며 중등의 경우에는 역시 교사본인의 지식부족과 교재개발 시간부족, 교재부족으로 나타났다.

초등단위와 중등단위의 개발 시 장애요인은 유사하게 설명된다. 그러나 초등단위는 중등단위에 비해 외부기관과의 협력부족 응답율이 적으며, 교재부족 보다는 동료교사 협조부족과 교재개발 시간부족을 지적한 점이 특성있게 나타났다. 중등의 경우는 모든 선택지에 고르게 응답하고 있다.

**<표 39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어려운 점(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

		개발과정의 어려움(사례수)					전체
		교재부족	동료교사 협조부족	외부기관 협력부족	교사본인 지식부족	교재개발 시간부족	
근무학교	초등	5	9	1	8	9	32
	중등	13	10	9	15	15	62
	전체	18	19	10	23	24	94
교육경력	0-5년	10	14	4	14	14	56
	6-10년	2	3	3	5	3	17
	11-20년	6	2	3	4	6	21
	전체	8	19	10	23	24	94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연속해서 질문하였다. 전체 78회의 사례수가 나타났으며, 학교 내 협조부족을 지적한 교사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개발 시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교재부족이 나타났고, 학생, 학부모의 무관심과 냉대를 지적한 교사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표 40> 교육프로그램 진행시 어려운 점**

Name	Count	Responses	Cases
예산부족	9	11.5	25.0
인력부족	9	11.5	25.0
교재부족	13	16.7	36.1
학교 내 협조부족	23	29.5	63.9
외부기관과의 협조체제 미비	14	17.9	38.9
학생, 학부모의 무관심과 냉대	10	12.8	27.8
Total responses	78	100.0	216.7

5 missing cases; 36 valid cases

**<표 41>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어려운 점(근무학교별, 교육경력별)**

		진행과정의 어려움(사례수)						전체
		예산부족	인력부족	교재부족	학교 내 인식부족	외부기관 협조미비	학생 학부모 무관심	
근무학교	초등	2	2	5	9	4	3	25
	중등	7	7	8	14	10	7	53
	전체	9	9	13	23	14	10	78
교육경력	0-5년	6	6	7	15	9	8	51
	6-10년	-	-	3	5	2	1	11
	11-20년	3	3	3	3	3	1	16
	전체	9	9	13	23	14	10	78

초등 단위의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학교 내 인식부족이었으며, 개발과정에서 동료교사들의 인권의식 부족과 협조부족을 지적했던 바와 연결된다. 초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학교환경 및 풍토와 밀접하게 연결됨을 이해할 수 있다. 중등 교사들 역시 학교 내 인식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발과정 시 어려운 점으로 외부기관과의 협력부족을 지적했던 것이 진행에 있어서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계획, 진행, 평가의 총체적인 과정에서 교사가 인지하는 장애요인은 그 영역과 범주에 있어서 다양하게 드러났다. 해당 설문조사가 초등/중등, 교육경력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의견의 공통지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나, 양적조사의 한계로 좀 더 충실한 답변을 얻는 것은 어렵다. 이에 해당 설문의 18번 문항은 응답 교사에게 의견 및 견해를 구하도록 준비되었고, 본 설문조사의 표본이 목적표집이었던 관계로 응답 교사들의 반응은 대부분 적극적이었다.

아래는 해당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다양한 답변들이 나타났으나, 해당 답변들은 크게 3가지 유목으로 정리될 수 있었고, 적합한 교재부족, 비인권적 교육환경, 교사의 인권의식 부족으로 드러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3명 이상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 의견 인원을 적어 두었다.

#### (1) 적합한 교재부족 지적

- 지속적,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고 시급(6명)
- 인권에 대해 다루는 부분들이 여러 측면이므로 학교 현장 내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가 늘 고민이다. 그러므로 좀 더 학생수준, 교사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시급.
- 인권을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 체험프로그램이 부재하다
- 다양한 교재 및 자료획득의 어려움 : 폭넓은 고민을 하기 어렵다(6명)

#### (2) 비인권적 교육환경

- 인권관련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혹은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건 미비(14명)

- 편견으로 가득찬 관리자들 : 지속적,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어렵다(5명)
- 교육관련당사자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필요성으로 교육에 임하므로 동기유발이 어렵다.(2명)
- 학생, 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
- 교사가 인권에 대한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않다
- 학교의 비인권적 환경 : 지저분한 교실, 관료적 학교 구조
- 고등학교 2학년 선택과목으로 들어갔으면 한다.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었으면 한다
- 입시위주 교육과 인권교육과의 괴리

### (3) 교사 인권의식 부족

- 인권의식부족(7명)
- 인권에 관한 의식부족으로 학교 내, 외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7명)
-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만 여기는 동료교사들 : 함께 개발, 운영 어렵다
- 교사들의 인권의식 부족, 연수 부족(7명)
- 인권교육이 특정 교사들의 역량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일회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 교사 자신의 인권 지식 부족(4명)
- 수업이나 학교 일정으로 인한 준비부족(3명)
- 일반 수업시간의 인권적이지 못한 교사의 태도

## 다. 활성화를 위한 제안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의 교사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19번, 20번 두 개 문항을 자유반응형 질문으로 제공하였다. 해당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현실적 개선 혹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 내 교과과정 및 수업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점
  - 교과서 및 교재 수준에서의 개선점
  - 학교관리자 및 교육청 단위에 지원해야 할 점
  - 국가 단위에서 지원해야 할 점
- 20. 19번에서 지적해주신 현실적 개선안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추천해주십시오.

19번 질문의 경우, 설문 응답자 인원 수만큼 답변의 범주와 개선내용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날 것을 고려해, 네 개 수준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의 내용은 몇 개의 의견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 19. 현실적 개선안 제안 및 요구

### 1) 교과과정 및 수업운영 측면

-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현재는 전무함).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마인드를 가진 교사들이 있어야 프로그램 연구도 교과과정과도 결합할 수 있다.
- 공식적 교육과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
- 학생수의 과다
- 재량 및 특별활동 등의 선택적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담아야 한다
- 인권은 각 교과와 기본목표가 되어야 하고, 인권을 위한 수업은 과목을 망라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 2) 교과서 및 교재수준

- 인권교과서는 마인드가 부족한 교사가 많은 현 상황에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
- 통합교과적이고 동적인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도록 교재보급, 실제교육장면 시연이 담겨야 한다.
- 현재 인권교재는 교사모임이나 인권관련 단체를 통해 제작되고 교육부 및 교육청 단위에서 제작된 자료는 본 적이 없다. 교육부, 교육청 자체의 제작이 어렵다면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단체,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 교재의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인권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 3) 학교관리자 및 교육청 수준

- 그들에게도 인권에 대한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다.
- 강사 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제공
- 교사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
- 특별실 활용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편의성 지원

### 4) 국가단위 차원

-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학교를 인권실현의 공간으로 바꾸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별 인권센터 혹은 네트워크 구성
- 학력 풍토사회 개선
- 학교 및 교육청 단위의 인권관련 연수를 제도화
- 거시적 안목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 20. 단기적, 장기적 과제 추천

### 1) 단기적 과제

- 인권관련 교사연수
- 학교 및 교육청 단위의 연수
- 교재개발
- 교육과정연구 실시

### 2) 장기적 과제

- 학교와 사회전반에 인권적 교육환경 구축
- 교재개발
- 교육과정 개선 및 학력풍토사회 개선
- 인권을 말하는 교사, 학생을 편견없이 볼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필요

현실적 개선점 및 과제 선정에 대한 답변 결과는 17번 문항에서 제시된 총체적인 문제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7번 문항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1) 적합한 교재의 부족 (2) 비인권적 교육환경 (3) 교사의 인권의식 부족이었다.

## 4. 요약 및 제언

### 가. 요약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인권교육의 운영현황

(1)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강의중심, 참여 유도형 토론방법으로 인권교육을 가르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교과목 수업, 재량활동, 학급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교육의 장을 교사들이 고르게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활동 시간의 활용도는 매우 낮았다.(7.5%)

(2) 초등단위 경우에는 재량활동 시간과 학급운영에 인권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중등 단위 경우에는 학과 수업시간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3)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운영의 과정에서 주로 VTR/TV 등의 시청각 매체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영상자료에 대한 교재 요청을 하고 있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시각적 교재를 원하고 있었으며, 추가 기자재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을 요청하고 있었다.

(4)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유용성으로 인권교육 관련 교사모임 및 시민단체의 자료에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반면에 교육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는 신뢰도도 낮거니와, 애초에 정보를 접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 국가단위 기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었다.

(5)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 중 28.2%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교사는 대개 교사의 개인 평가 만족도에 대해서도 '보통이다-불만족스럽다'로 응답했다.

(6)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 중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기 평가결과가 긍정적인(만족스러운) 교사일수록,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학부모 및 학생 평가에 있어서도 불만족스러운 교사에 비해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평가 정도에 있어 보통 이하를 응답한 교사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은 교사에 비해(1명/18명) 수업 후 평가 및 피드백을 거의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21명)

## ■ 인권교육의 장애요인

(1)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정의 어려운 점으로 초등의 경우, 동료교사 인권의식과 협조 부족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 학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등의 경우에도 학교환경을 이야기하지만, 우선적으로 제시한 것은 활용교재의 부족을 들어 수업의 운영방식 및 형태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초등단위와 다르게 외부기관의 협조부족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18번 주관식 문항에서 응답 내용이 가장 많이 반복된 것을 정리하면, 인권교육 운영의 가장 큰 적합한 교재의 부족/ 비인권적 교육환경/ 교사의 인권의식 부족이다.

## ■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제언

(1) 비인권적 학교환경의 개선을 위해 인권교육 교사들은 학교 관리자 및 동료교사의 인권의식 개선을 대부분 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의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었다.

(2) 교사의 인권교육 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 체계와 학교시설 활용에 있어서의 편의성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1적이 나왔다. 이는 교사의 재량권 확대와 보장에 해당되는 제언이다.

(3)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인권의 관점에서의 통합교과적 교육과정 연구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교재 개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권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

(4) 교재 개발을 위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청각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교사/학생 수준에 적합한 교재 개발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교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5) 국가적 차원, 장기적 과제에는 학력풍토사회 개선과 사회 전반의 인권적 환경 구축,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등 넓은 범주의 제언이 이루어졌다.

### 나. 제언 :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시 학교와 관련 논의되어야 할 과제<sup>6)</sup>

본 기초조사는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지점들을 찾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일회의 설문조사로 학교의 인권교육 개선지침이 확정될 수 없다. 그러나 본 조사를 통해 어떠한 점들이 고려, 모색되어야 하는지 넓은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논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6) 논의과제는 설문의 응답결과에서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를 선별했다.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필요한 지점들에 대한 중간검토 수준이므로, 나열식으로 전개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기술하지 않았다.

(\*\* 중간토론회와 이후, 많은 조언과 논평을 부탁드립니다.)

본 중간 보고서는 추후 연구에 필요한 지점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논의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 과제에 대한 명료화 작업이 추후에 진행될 예정이므로 연구방법은 기술하지 않는다.

## 1)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비인권적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권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인권의식 함양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사교육과정에 인권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교원양성체제 개선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 기능, 운영 원리에 대한 논의는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의 미진한 성과는 교사양성대학을 비롯해서 교육연수원에 인권교육 교과목, 과정을 개설하는데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 ① 교원양성대학에서의 교육과정 개선

#### ■ 기초조사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 교원대,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비사대 교직과정  
해외 사례 비교분석 - 교원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 현황

#### ■ 연구과제

교사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권교육의 내용 - 원리, 개념, 내용, 방법  
교사교육과정에 개설가능한 인권교육 교과목 수준  
교과목 개설형태  
학생에게 요구하는 수행기준(performance-level standard)  
학생 평가 방법

### ② 현직교사의 교사연수과정에서의 개선

#### ■ 기초조사

전국 교육연수원에서의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해외 교육연수원에서의 인권관련 교육 현황

#### ■ 연구과제

현직교사 인권교육 연수시 강조되어야 할 목표, 내용 - 경험 중심  
현직교사에게 요구하는 standard  
현직교사 연수 이후 평가요소 - 수행능력 평가 중심  
현직교사 연수프로그램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법제적 요구 내용

## 2) 교재개발의 수준

### ① 수업 설계와 학교생활

#### ■ 연구과제

교과목 수업 - 교과서 개발, 교사용 지도서 개발

선택적 교육과정 - 재량활동, 특기적성, 특별활동시 활용가능한 매뉴얼 개발

학급운영 - 매뉴얼 개발

### ② 교사의 자기개발 지원

#### ■ 연구과제

인권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서 개발

인권교육 활동의 총서 역할을 하는 인권교육 백서 개발

인권교육 정보공유를 위한 계간지

## 3) 학교평가 기준

#### ■ 연구과제

교육부 평가편람에 대한 재평가 -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편람

단위 교육청 학교평가 준거 평가

인권교육 평가기준의 영역, 요소, 수행기준

## 4) 학교 관련 stakeholder

#### ■ 연구과제

학부모 -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과정에 대한 고찰

학생 -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고찰,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조건 탐색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 -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기타

# 국가인권교육계획의 세계적 맥락과 외국의 실태

한 홍 구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소장)

이 대 훈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연구원)

## 순서

1. 해외 국가인권교육계획과 시행체제를 통해서 본 시사점 ..... 113
2. 해외의 국가인권교육 ..... 114
  - 가. 오스트리아
  - 나. 캐나다
  - 다. 체코 공화국
  - 라. 덴마크
  - 마. 프랑스
  - 바. 독일
  - 사. 노르웨이
  - 아. 영국
  - 자. 일본
  - 차. 필리핀

# 국가인권교육계획의 세계적 맥락과 외국의 실태

: 인권교육 10년 기간을 계기로 한 국가인권교육계획 시행 동향  
(2000년 기준)

한 홍 구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소장)

이 대 훈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연구원)

## 1. 해외 국가인권교육계획과 시행체제를 통해서 본 시사점

- 유엔 인권교육 행동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제안된 인권교육 전담 국가기구의 설립 사례는 거의 없음 (일본과 프랑스 예외). 대다수가 정부 부처간 협의체제 또는 기존의 인권기구(국가인권위, 인권자문위 등)의 주도와 영역확장으로 실시됨
- 일본(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추진본부), 프랑스(국가인권교육훈련위원회)의 경우 정부 부처간 협의체제에 보다 강화된 계획성과 권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오사카부의 선구적인 노력과 일본 정부 차원의 추진기구 설립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노력,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네트워크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단 민간단체 배제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음.
- 이와 별도로, 별도의 인권교육계획 수립 없이 '시민성 교육'으로 인권교육을 포함시켜 공교육내 인권교육의 심화와 확장을 꾀한 영국 사례와 비슷한 맥락에서 외국인혐오증과 차별에 집중하는 일종의 시민성 교육을 공교육 내에서 강조하는 독일의 사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인권교육 활성화에서 정부의 주요 역할을, 정책적 의지, 부처간 협의, 공교육내 인권교육의 체계화, 공무원사회내의 인권교육, 시민사회 인권교육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각국 사례로부터 국가인권교육 추진상의 핵심 검토 영역을 추출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 부처간 협의체제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추진 기구의 형성 또는 기존 인권기구의 영역 확대
- \* 이 추진 기구 또는 확장된 기구에 민간부문의 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
- \* 지방자체단체가 주도하는 지방차원의 공식 인권교육활동으로의 확산, 그 제도화
- \* 인권교육의 교재, 프로그램, 강사진, 전문연수를 전담하는 '훈련·자료센터'의 설치 여부
- \* 정기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인권교육 보완 강화의 기제

## 2. 해외의 국가인권교육

### 가. 오스트리아

- 1997년 외무부, 교육과학문화부가 루드비히 블츠만 인권연구소와 협력하여 「인권교육 서비스센터」를 창설. 주 목적은 공교육내 인권교육 발전과 교사 훈련.
- 교사훈련, 인권자료 개발 배포에 주력. 인터넷 소식지와 네트워킹.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인권교육은 별도의 법령에 의거, 공교육내 시민교육, 법률교육, 역사 철학 및 반차별 교육과정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음.
- 교육과학문화부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당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기념행사와 프로그램 개발 및 권장시행 등 일체를 관장하고 있음.
- 그 성과의 하나로 2001년 2월, 그라쯔(Graz)시 정부가 시를 인권의 도시로 선포, 모든 시 결정과정의 “인권 주류화”를 선언 (인권기준을 최우선 기준을 설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필수로 채택. 시 차원에서 「유럽 인권 민주주의 연구 훈련 센터」를 창설.

- 전국 차원에서는 인권교육 서비스센터가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지원, 훈련을 제공함. 동시에 연방 정부 각 부서별로 인권전담 조정관의 연계망을 구성함. 이들은 정기적인 회동과 세미나를 개최함. 인권교육을 위한 부서간 협의와 협력 활동은 이들이 담당함. 외부부의 국제 인권활동도 여기서 내용적으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음.
- 공무원연수원에서는 1999년부터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선택 과정으로.
- 연방정부 내무부의 치안연수원에서도 타부서와 협력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경찰관계자들이 여기서 인권교육을 받음.
- 1998년의 경우 민간 인권단체에 5백만 실링 (약 5억원) 인권활동 프로젝트로 지원.

## 나. 캐나다

- 국제적인 명성에 비해 매우 소극적.
- 세계 각국 인권보고서 발간, 공개
-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의식향상 캠페인과 행사를 개최.
- 캐나다 국가인권위에서 인권교육을 권장하는 서신을 각계 각처에 발송하고, 국가인권교육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는 의사를 표명함.

## 다. 체코 공화국

- 1998년 정부 시행령으로 「정부 인권협의회」 설립. 각 부서 차관과 민간단체 대표가 동수로 참여. 위원은 총 21명. 주 활동은 국내 인권준수 상황을 감시, 감독하는 것.
- 1999년 인권협의회에서 인권교육전문가 실무단을 구성, 체코의 인권교육 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 작성 제출. 보고서 작성에 정부 각 부서 협력, 자료 제공.

- 현재 인권교육전문가 실무단이 체코의 인권교육 전국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 실무단의 사무장이 정부 인권협회의 사무장을 겸임. 총 17인으로 구성. 이중 민간 단체 대표 4인, 학계 및 전문가 4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대표 1인.
- 2000년, 국가인권계획 수립 (현재 미확인).

## 라. 덴마크

- 교육부와 덴마크인권센터가 협력하여 초중등학교 공교육과정과 청소년 일반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함.
- 이 행동계획의 초점은 주요 교육기관마다 교사 및 교육담당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권교육 훈련가를 양성하는 것임.
- 그 일환으로 1997년 2회의 교사 인권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함. 여기에 교사연수원, 교육자료센터, 교육지원기구, 왕립 교육학대학, 덴마크 적십자사, 덴마크 난민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교회 구호기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함. 이를 위하여 자료 축적 및 교재 개발 발간
- 이후, 각급 학교와 교육관련 기구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확산 진행됨.
- 1998년 교육부 주관으로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덴마크 인권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함.

## 마. 프랑스

- 프랑스 유네스코와 기존의 국가인권자문위원회가 협력하여 국가인권교육훈련위원회를 설립. 여기에 사법부, 교육부, 국방부, 외무부, 사회부, 내무부, 문화부, 청소년부, 인도지원부 등 11개 부서 대표가 참여.

- 국가인권교육훈련위원회의 목적은 (1) 인권교육 실태 조사, (2) 인권교육 수요 평가, (3) 인권교육 발전 계획 세부화로 정해짐.
- 동 위원회 산하에 교육수준별로 4개 실무단이 구성됨 - 초중등 학교, 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 성인 및 직능부문 교육, 시민사회의 교육. 실무단에서 종합적인 인권교육 실태 보고서 제출.
- 1996년, 인권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권정보훈련센터 개설.

## 바. 독일

- 연방 정부 차원에서 3가지 영역에서 인권교육 증진을 위해 노력해옴.
- (1) 공교육내 인권교육 증진. 이는 법률적 제도개선과 주정부간 상임교육위원회(각 주 정부 교육부장간의 상설 위원회)에서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일련의 결의안 채택(주정부는 교육정책에 관한 자치권을 갖고 있음)으로 추진됨. 그 결과, 공교육내 다양한 과정에서 인권교육은 필수적인 분야로 깊이 뿌리내려 있음.
- (2) 공공 홍보 캠페인으로서, 국내 외국인들의 사회 통합, 시민들간의 편견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공보활동, 지역 소식지 의견란 기고, 외국인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 세미나 등이 진행됨.
- (3) 지역공동체와 민간단체의 교육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인권교육 권장.
- 현재 독일정부는 외국인혐오증과 인종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인권교육에 관심. 여기서 주정부간 상임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된 일련의 결의안이 각 주단위로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함. 공교육과 공공캠페인을 병행하는 특징 및 공공캠페인의 경우 민간단체, 노조, 사용자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짐.

- 그 외로, 인권단체들과 유네스코가 협력하여 2001년 창설한 독일인권연구소와 유네스코에서 마그테부르크대학에 신설한 인권교육학 석좌교수제가 인권교육분야 연구와 활동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사. 노르웨이

- 1980년 외무부의 인권자문위원회에서 자문기구로서 인권교육실무단을 구성. 1995년 새로운 역할을 부여, 유엔 인권교육10개년 계획을 전담하게 함. 정부 부처 대표와 주요 민간단체 대표로 구성되면 사무처는 노르웨이인 유엔협회에서 담당함.
- 1999년 인권교육실무단이 “인간존엄성에 대한 초점”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주제로 국가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 이를 계기로 의회에서 정부에 구체적인 국가인권계획 수립을 요구함.
- 의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간 협력실무단이 구성되어 국가인권계획 수립. 주관은 교육부.
- 국가인권계획의 주요 내용: 공교육내 인권교육 증진에 대한 정부의 의무 규정, 각종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행할 정부의 의무 규정, 교육관련 기구 및 사회 각 전문분야에서 인권교육의 증진을 권장할 정부의 의무 규정, 인권교육에 대한 공공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할 정부의 의무 규정 등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적시됨

## 아. 영국

- 1997년 “Excellence in Schools”라는 제목의 국가 교과과정 평가서가 작성됨. 이에 기초하여 공교육내 민주주의와 시민성(citizenship) 교육 자문위원회가 구성됨.
- 2000년 의회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채택함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훈련프로그램과 자료개발을 진행함.

- 교육부에서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2000년부터는 초등학교 공교육에서, 2002년부터는 중등학교 공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음. 전 학교에 교육지침 배포. 국가차원의 교육개혁 계획의 일환을 추진됨. 교육부에서 직접 체계적인 자료 및 지원 제공
- 시민성교육은 주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편견과 차별, 갈등 해소, 시민사회 자발적 시민활동의 역할, 정부의 형태, 공공서비스, 법률 및 형사제도, 여론의 형성, 지역공동체 활동, 경제체제 등을 다루며, 사회교육 종교교육 심성교육 인간관계 교육과 혼합되어 있음

## 자. 일본

- 1995년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추진본부”를 설치, 추진 본부를 중심으로 부서간 협력 체제를 만들고 1997년 국가인권계획 수립 공포. 이에 따라 전국의 도부현에서 각각 프로그램과 체제를 개발하여 시행함. 1998년 관계부처 연합회의의 구성, 여기서 인권교육 활성화 계획이 제안됨. 35개 현 정부에서 인권교육전담 기구(부처간 협의기구로서의 추진본부)를 구성, 26개 현에서 현차원 인권교육계획과 추진기구를 수립. 1996년 오사카부가 가장 앞서서 기구 설치 및 시행.
- 관계부처 연합회의: 부정기적 회동, 의견교환과 예산 조치, 정부 각 부문 직원교육 실시
- 단 추진본부에는 민간단체가 일체 제외됨 - 명분은 각 부처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됨. 그러나 일부 주요 인권단체에서 정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과정에 적극 결합함.
- 학교교육: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습 지도요령’을 1998년부터 시행. 각 교과, 도덕, 특별활동 등에 인권교육 포함. 교원 연수 실시.
- 사회교육 직능교육: 사회교육시설에 공개강좌 개설, 기존 인권단체 프로그램 강화, 미디어를 통한 인권강좌 개설, 지방자치단체 인권 프로그램 지원 및 연계.

- 검찰직원, 교정시설 직원, 갱생보호원 직원, 입국관리 관계 직원, 의료관계자, 사회복지 관계자, 해상보안관, 노동행정 관계자, 소방직원, 경찰직원, 자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 실시
- 인권교육 주요과제(우선순위) 집단으로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부라꾸민, 아이누족, 외국인, HIV감염자, 에이즈환자, 나병환자, 출소자를 설정.
- 2000년 12월 ‘인권교육 및 인권개발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인권교육 제도화. “모든 장에서의 인권교육” 추진을 기본을 함. 정례적인 상황집계 및 보완.
- 2001년, 인권교육 평가 및 국가인권교육계획 개선.

#### 차. 필리핀

- 1986년 ‘체포 및 수사 인력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표. 관련 공무원 연수 교육을 의무화. 동시에 행정명령으로 ‘인권 존중 극대화를 위한 교육’을 발표 모든 학교 교과과정에서 인권학습을 포함시키도록 함.
- 1992년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부가 인권교육 활동 관장, 추진. 정부 주도의 첫 인권교육 활동.
- 1994년 국가인권위, 경찰청, 교정국, 군대가 서로 협력하여 인권연수체계를 제도화, 부처간 약정서 체결로 정례화하고 국가인권정책조정실을 창설함.
- 1995년 대통령령(라모스)으로 ‘법집행인, 경찰, 군대, 교도관의 인권교육훈련’을 의무화함
- 1997년 국가인권위, 정부 관련 부처, 시민단체, 기층 부문단체 등이 참가한 ‘인권교육전국협의회’ 결성. 여기서 인권교육국가행동계획 확정 발표. 1997-2006을 인권교육 10년으로 선포. 국가인권위가 선도적 역할 담당. 인권교육지침서 발간, 초중등 교육기관에 보급하여 실행.

- 우선 집단으로 <여성, 노인, 청소년, 어린이>, <대학, 기초교육>, <농민, 노동자, 외국인 계약노동자, 도시빈민>, <언론, 전문직>, <원주민, 회교도>, <경찰, 군인, 법 집행인>, <수형인, 수감자, 난민>, <장애인> 설정
- 민간단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다양한 부문이 참가하는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 인권교육의 이행 주체로서의 역할, 인권교육 자료의 개발, 계획 실행 평가 등을 주도 (특히 앰네스티 필리핀 지부)

## 공공기관 인권교육 실태조사 질문지

Code No.

--	--	--	--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연구를 위한  
기초 현황 및 실태 조사  
(정부기관용)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입니다. 본 조사지는 현재 정부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종합적인 인권교육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설문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원 : 문은미

☎ : (02) 2610 - 4152

H.P. : 017 - 290 - 9035

e-mail: tothemoon@mail.skhu.ac.kr

2003년 10월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소장 한홍구

※ 다음의 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 근무기관 :
- 소속부서 :
- 직 책 :
- 성 명 :
- 연 락 처 :

※ 다음 문항은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를 하시거나 직접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인권에 관련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 ① 실시되고 있다 ( 2페이지로 가서 B-1번 문항부터 끝까지 응답해주시시오)
- ② 실시되지 않고 있다 ( 아래 문항들에 응답해주시시오)

A-1. 앞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없다. ( 6페이지로 가서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시시오)
- ② 있다. ( 아래 문항들에 응답해주시시오)

A-1-1. 실시될 인권교육의 내용(또는 주제)은 무엇입니까?

( \_\_\_\_\_ )

A-1-2. 앞으로 실시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에 대한 이해
- ② 조직 구성원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함양
- ③ 직무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여지에 대한 인식 및 예방
- ④ 기타( \_\_\_\_\_ )

A-1-3. 교육 대상은 누구로 예정하고 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조직내 간부      ② 조직내 일반직원      ③ 관련조직의 간부
- ④ 관련조직의 일반직원      ⑤ 일반시민      ⑥ 기타( \_\_\_\_\_ )

A-1-4. 계획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매년 실시되는 정규 직원연수 교육의 일환
- ② 임시로 개설되는 특별 교육형식
- ③ 승진이나 업무이동으로 인한 업무 소양교육의 일부과정
- ④ 자기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일부과정
- ⑤ 기타( \_\_\_\_\_ )



- ① 1~20명 ② 21~50명 ③ 51~100명 ④ 100명 이상 ⑤ 200명 이상

B-6. 시행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 ① 매년 실시되는 정규 직원연수 교육의 일환  
 ② 임시로 개설되는 특별 교육형식  
 ③ 승진이나 업무이동으로 인한 업무 소양교육의 일부과정  
 ④ 자기개발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일부과정  
 ⑤ 기타( )

B-7. 1회 시행되는 인권교육의 **교육일수**는 몇 일입니까?

- ① 하루 ② 3일 이하 ③ 일주일 이하 ④ 한달이하 ⑤ 기타( )

B-8. 일반적으로 하루 시행되는 인권교육의 **강의 시수**는 얼마입니까?

- ① 1시간 이하 ② 3시간 이하 ③ 5시간 이하 ④ 5시간이상 ⑤ 기타( )

B-9.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교수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강의 중심 교육  
 ② 토론, 역할극 등 참여유도형 교육  
 ③ 캠페인, 현장방문, 봉사활동 등 현장체험형 교육  
 ④ 인권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통한 위탁 교육  
 ⑤ 기타 ( )

B-10. 운영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교육자(강사)는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조직내 교육 담당자 ② 자체 위촉 교수  
 ③ 정부 인권기구의 교육전문가 ④ 인권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⑤ 기타( )

B-11.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많이 활용하는 기자재는 무엇입니까?

- ① OHP, 실물화상기

- ② 파워포인트
- ③ VTR, TV(Projector TV)
- ④ 슬라이드 영사기
- ⑤ 기타( \_\_\_\_\_ )

B-12. 인권교육을 기획·운영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
- ②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
- ③ 담당자의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 인식
- ④ 타 조직의 운영성으로 인해
- ⑤ 기타( \_\_\_\_\_ )

B-13.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실 때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참고하거나 활용할 만한 교재의 부족
- ② 직장 내 동료 교사들의 인식 부족과 협조 부족
- ③ 직장 외 외부기관의 협력 및 연결성 부족
- ④ 담당자 본인의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부족
- ⑤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 부족
- ⑥ 기타( \_\_\_\_\_ )

B-14.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예산의 부족
- ② 인력의 부족
- ③ 활용할 수 있는 교재의 부족
- ④ 조직내 인식 부족으로 인한 협조 부족
- ⑤ 프로그램에 필요한 외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미비
- ⑥ 기타( \_\_\_\_\_ )

B-15. 시행되고 있는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항목 \ 평가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 교육관련 책임자의 자체 평가					
◦ 주위 동료 직원들의 평가					
◦ 참가자들의 평가(만족도)					
◦ 외부기관 및 타 단체의 평가					

B-16. 귀하가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평가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을 기술해주시시오.

( \_\_\_\_\_ )

B-17.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현실적 개선 혹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별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내 교육과정 및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점

\_\_\_\_\_

자료 및 교재 수준에서의 개선점

\_\_\_\_\_

조직내 교육 책임자 및 조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점

\_\_\_\_\_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점

\_\_\_\_\_

※ 다음은 기초 통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29세 ② 30세~39세 ③ 40세~49세 ④ 50세~59세 ⑤ 60세 이상
  
3. 귀하의 근무 경력은?  
① 5년 이하 ② 6년~10년 ③ 11년~20년 ④ 21년~30년 ⑤ 31년 이상
  
4. 현재 귀하는 인권과 관련된 교육 모임(시민단체, 교사모임 등)을 참석하고 계십니까?  
① 참석하고 있다. ② 과거에는 참석했으나, 현재는 참석하지 않는다.  
③ 1회 이상 참석해 본 적이 없다.
  
5. 귀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음 ② 한번 있음  
③ 전혀 없음 ④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에 참여  
⑤ 업무를 위한 교육차원에서 받음
  
6. 인권교육을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1년 이하 ② 3년 이하 ③ 5년 이하 ④ 10년 이하 ⑤ 기타( )
  
7. 인권교육을 담당하기 전 업무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_\_\_\_\_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설문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연구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교육 실태조사  
질문지

## 〈시민사회단체 인권교육 현황〉

### 1. 기본 항목

단체명		
단체 정보	주 소	(우; - )
	전화 및 팩스	Tel; Fax;
	website	
	전자우편	
	핵심 중점 사업 (간략히 기술)	
	대표 및 집행 책임자	
인권교육 프로그램명		
시행 기간		
담당자	이 름	
	직 책	
	연락처	
	약 력	
	前 담당자 이름, 연락처	
프로그램 장소		
	특 성	
대 상	인 원	
	구 성	
	특성 및 비교	
모집 및 홍보		

강사진	이 름	
	연락처	
	대표논문	
	약 력	
	이 름	
	연락처	
	대표논문	
	약 력	
	이 름	
	연락처	
	대표논문	
	약 력	
	이 름	
	연락처	
	대표논문	
	약 력	

강사진 교육 내용 및 방법 요약	이름	
	연락처	
	대표논문	
	약 력	
교재의 유무		
교 재 교육 평가 방법	저자	
	발행처 및 연도	
목 차		
세약속프교육원부	일회성, 연월성첨연, 월 회)	
예 산	금 액	
	조달방법	

\* 교육 효과나 독창성이 높았던 교재의 예와 특징, 효과 등을 기술해 주십시오.

\* 전체 인권교육 프로그램 중 교육 효과나 독창성, 참가자들의 반응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세부 프로그램의 예와 특징, 효과 등을 기술해 주십시오.

## 2. 평가 자료(세부 평가자료는 별첨, 이 문서에는 개략적인 평가내용만 기술)

2-1. 단체의 평가 :

2-2. 담당자의 평가 :

2-3. 참가자들의 평가 :

2-4. 강사진의 평가 :

2-5. 사회적 평가(언론 및 타단체 등) :

### 3. 추가 조사 항목

3-1. 귀 단체에서 시행한 인권교육의 기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

- ① 직무상 인권보호가 강조되는 직종 종사자들의 교육(예;경찰, 검찰, 교도관 등)
- ② 인권보호 취약 계층의 교육 및 구제(예; 성적 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
- ③ 일반 시민들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교육
- ④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교육과는 별도의 인권교육
- ⑤ 인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 ⑥ 기타( )

3-2. 귀 단체의 인권교육은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개설되었습니까? (복수로 응답 가능)

- ① 해당 분야에서의 인권침해의 빈발로 구제 및 예방의 필요성
- ② 정규 시민교육활동의 일환
- ③ 교육기구/단체의 요청에 따른 보충적 교육협력 활동
- ④ 분야별 인권교육 전문활동가 양성의 필요성
- ⑤ 자 단체 활동과의 연관성 및 회원들의 요구
- ⑥ 기타( )

3-2-보1. 귀 단체의 인권교육 실시는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결정한 사람/기관: )

3-3. 귀 단체가 실시한 인권교육의 방법적 특성은 무엇입니까? (복수로 응답 가능)

- ① 강연 중심의 가치관 및 지식교육
- ② 토론, 역할극 등 참여형 인권교육
- ③ 캠페인, 현장방문 등 현장체험형 인권교육
- ④ 영상물 상영, 자료집 배포를 통한 교육
- ⑤ 기타( )

3-4. 귀 단체가 실시한 인권교육이 창출한 긍정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복수로 응답 가능)

- ① 참가자들의 공통 관심사나 직무에 부합한 교육
- ② 다양한 교재와 자료의 축적 및 개발
- ③ 참여와 체험을 통한 높은 교육효과
- ④ 인권교육 전문 활동가의 발굴 및 양성

- ⑤ 타 단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활용 가능성
- ⑥ 기타( )

3-5. 해당 인권교육의 기획 및 진행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예산의 부족
- ② 교육 인력의 부족
- ③ 사회적인 인식과 참여 부족
- ④ 단체 내 인식과 협조의 부족
- ⑤ 적절한 교재의 부족
- ⑥ 정부 기관이나 교육기구와의 협력 부족
- ⑦ 기타 ( )

3-6. 위 3-5 문항에서 선택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7. 해당 인권교육의 기획 및 진행, 평가 과정에서 해당분야 전문가(예; 교수, 법조인, 인권교육의 경험이 풍부한 활동가 등)의 어떠한 참여가 있었습니까?

- ① 기획과 시행 전 과정에 직접 참여
- ② 부분적으로 직접 참여
- ③ 직접 참여없이 자문에만 참여
- ④ 전문가의 참여가 전혀 없었음

3-7-보1. (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을 선택한 경우) 인권교육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단체 자체 역량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해 필요성을 못 느낌
- ② 해당분야 적절한 전문가의 부재
- ③ 전문가들의 협조와 인식 부족
- ④ 재정의 부족
- ⑤ 기타 ( )

3-8. 해당 인권교육의 기획 및 진행, 평가 과정에 있어 전문 교육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없다

3-9. 귀 단체가 실시한 인권교육에 적합한 교재를 충분히 찾아 활용할 수 있었습니까?



3-12.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후속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 ① 인권활동과 관련된 후속모임의 결성과 참여
- ② 단체 내 다른 활동에 참여 (타 시민, 사회단체 포함)
- ③ 관련 인권분야 전문활동가로 변화
- ④ 후속활동이 없었다
- ⑤ 기타 ( )

3-13. 해당 인권교육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교육의 정례화 및 안정화
- ② 경험과 자료의 축적
- ③ 단체 내 교육전문인력의 발굴
- ④ 회원 및 시민들의 참여도 향상
- ⑤ 사회적 인식의 확대
- ⑥ 인권침해 행위의 감소에 기여
- ⑦ 학교 등 정규 공교육에 실제 적용
- ⑧ 국가기관의 정책에 반영(예;경찰 인권보호 규정 강화 등)
- ⑨ 기타 ( )

3-14. 인권교육을 하는데 있어 국가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14-보1. (위 문항에서 ①번과 ②번을 선택한 경우)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재정 지원
- ② 교육인력의 지원
- ③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시설 개방
- ④ 자료의 공개와 지원
- ⑤ 시설에 대한 접근 보장(예;군 부대, 교도소 등)
- ⑥ 초중고 정규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추가
- ⑦ 기타( )

3-15. 인권교육을 하는데 있어 국가기관이나 재단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정기적으로 받는다
- ② 부정기적으로 받는다
- ③ 거의 받지 않는다
- ④ 전혀 받지 않는다

\* 성실히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 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질문지

Code No.

--	--	--	--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연구를 위한  
기초 현황 및 실태 조사  
(학교 용)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입니다. 본 조사지는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종합적인 인권교육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원 : 이해진

☎ : (02) 2610 - 4152

H.P. : 016 - 283 - 693

e-mail: babybody@hanmail.net

2003년 10월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소장 한홍구

다음 문항은 기초자료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붉은 색 글씨는 엑셀파일로 코딩했을 때 자리위치입니다.(가로축)**

**B**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C** 2. 선생님의 연령은?

- ① 20세-29세 ② 30세-39세 ③ 40세-49세 ④ 50세-59세 ⑤ 60세 이상

**D** 3. 선생님의 교육 경력은?

- ① 0년-05년 ② 6년-10년 ③ 11년-20년 ④ 21년-30년 ⑤ 31년 이상

**E** 4. 선생님은 다음 중 어느 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인문고교 ④ 예체능계 고교 ⑤ 특수목적고  
⑥ 실업계 고교 ⑦ 특수학교

**F** 5. 선생님께서 근무하는 학교의 설립유형은 어떠합니까?

- ① 국공립 ② 종교계 사립 ③ 비 종교계 사립

**G** 6. 현재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 ① 국어교과 ② 사회 및 윤리교과 ③ 과학교과 ④ 외국어교과 ⑤ 수학교과  
⑥ 가정 및 실업교과 ⑦ 예체능 및 교련교과 ⑧ 기타(초등 경우)

**H** 7. 현재 선생님이 근무하는 지역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① 특별시 혹은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및 도서지역

**I** 8. 현재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어느 지역입니까?

- ① 서울 ② 인천 및 경기 ③ 강원 ④ 충북 및 충남  
⑤ 전북 및 전남 ⑥ 경북 및 경남 ⑦ 제주



6. 현재 운영하시는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N** ① 강의 중심 교육
- O** ② 토론, 역할극 등 참여유도형 교육
- P** ③ 캠페인, 현장방문, 봉사활동 등 현장체험형 교육
- Q** ④ 인권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통한 위탁 교육
- R** ⑤ 기타 ( )

- 복수응답 가능 문항은, 각 보기를 별도의 문항으로 간주

- YES/NO 질문형으로 바꾸어서, YES는 1번으로 엑셀 파일에 체크, NO는 2번으로 체크했습니다.

7. 현재 진행하시는 인권 교육프로그램의 운영형태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S** ① 교과목 수업 시간에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T** ②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별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U** ③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내 동아리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V** ④ 조종례, 학급회의 등 학급운영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W** ⑤ 기타 ( )

7-1. 그러한 운영형태를 선택하신 이유를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X** 8.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학교 내
- ② 학교 밖
- ③ 둘 다

8-1. 학교 밖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어떤 장소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많이 활용하는 기자재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Y**① OHP
- Z**② 실물화상기
- AA**③ VTR, TV(Projector TV)

**AB**④ 슬라이드 영사기

**AC**⑤ 기타( )

9-1. 인권관련 교육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할 기자재 및 교구는 무엇인지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AD**10. 현재 운영하시는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무엇입니까?

- ①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 ②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 ③ 시민단체(국제 엠네스티, 유네스코 등)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 ④ 인권관련 교사모임, 인권관련 단체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 ⑤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개발했다.

**AE**11. 선생님께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교재를 사용하십니까?

- ① 교과서만 활용한다.
- ② 교과서를 주로 활용하고, 참고자료로 보완한다.
- ③ 교과서와 동일한 비중의 참고교재를 선정하여, 함께 활용하고 있다.
- ④ 교과서 보다는 인권관련 참고자료 및 교재를 주로 활용한다.
- ⑤ 별도의 인권관련 참고자료 및 교재만 활용한다.

12.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며 활용하시는 자료의 유용성은 어떻습니까?

아래의 각 요소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매우 유용하다    ② 유용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유용하지 않다.  
⑤ 쓸모없다)

**AF** \_\_\_\_\_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서 제공, 발간하는 자료

**AG** \_\_\_\_\_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 발간하는 자료

**AH** \_\_\_\_\_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제공, 발간하는 자료

**AI** \_\_\_\_\_ 인권관련 교사모임 등에서 제공, 발간하는 자료

13.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AJ**① 참고하거나 활용할 만한 교재의 부족

**AK**② 학교 내 동료 교사들의 인식 부족과 협조 부족

- AL③ 학교 외 외부기관의 협력 및 연결성 부족
- AM④ 교사 본인의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부족
- AN⑤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 부족

14.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어려움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 AO① 예산의 부족
- AP② 인력의 부족
- AQ③ 활용할 수 있는 교재의 부족
- AR④ 학교 내 인식 부족으로 인한 협조 부족
- AS⑤ 프로그램에 필요한 외부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미비
- AT⑥ 학생, 학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무관심과 냉대

15. 소개해주시는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아래의 요소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스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런 편이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 AU\_\_\_\_\_ 교사의 개인적 평가
- AV\_\_\_\_\_ 주변 동료 교사들의 평가
- AW\_\_\_\_\_ 학생들의 평가(만족도)
- AX\_\_\_\_\_ 학부모의 평가
- AY\_\_\_\_\_ 외부기관 및 타 단체의 평가

AZ16.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학생들의 후속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학교 내 인권관련 모임의 결성
- ② 인권관련 타 단체나 외부 단체에의 자발적 참여
- ③ 특별한 활동은 없으나, 인권관련 내용에 대한 감수성 증가
- ④ 후속활동 및 변화가 없었다.
- ⑤ 기타 ( )

BA17.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① 교사 본인의 평가
- ② 교사 본인과 참여 학생들의 공동 평가
- ③ 교사 본인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교사모임 참석시 교사모임 포함)
- ④ 교사 본인, 동료 교사, 학생들의 공동 평가

⑤ 평가 및 피드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18. 선생님께서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평가하는 총체적인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을 기술해주십시오.

19.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현실적 개선 혹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별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내 교과과정 및 수업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점

○ 교과서 및 교재 수준에서의 개선점

○ 학교관리자 및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해야 할 점

○ 국가 단위에서 지원해야 할 점

20. 19번에서 지적해주신 현실적 개선안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추천해주십시오. 아울러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 응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당 설문 결과는 인권교육의 활성화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 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분석표

##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 요약

- 규범적 기초와 정의, 일반원칙, 목적, 주요 행위자, 대상집단, 조정과 이행을 위한 구조, 이행 프로그램, 세계적인 중간평가, 행동계획의 종결, 후속작업 등 총 10개의 장, 99개 항목으로 구성됨

※ 영문명칭 :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 Human rights education- lesson for life(이하 UNDHRE)

### □ 인권교육의 정의(제2항)

- 인권교육은 아래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
  - 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 ②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 추구
  - ③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국가·민족·종교 및 언어 집단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 ④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 ⑤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활동의 증진

### □ UNDHRE의 목적(제10항)

-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한 필요성 측정과 효과적인 전략 수립
- 국제·지역·국가·지방 차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능력 개발·강화
- 인권교육 자료의 공동개발
-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할과 능력 강화
- 문해능력·장애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언어로 세계인권선언 보급

□ 대상집단 관련 (제20항 ~ 제26항)

- 여성, 아동, 노인, 소수자, 난민 등 취약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
  
-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국제공무원, 개발담당공무원, 평화유지단, 민간단체, 언론, 행정공무원, 국회의원 및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훈련에 특히 유의
- 정규교육에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 인권교과과정의 개발 등
- 비정규교육에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주요 행위자(제11항 ~ 제19항)

주요 행위자	역 할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 개발</li> <li>○ 정규 교육체계에 인권교과과정 도입·강화</li> <li>○ 인권 정보화 캠페인 주도 및 인권 자원·정보·훈련센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 개방</li> <li>○ 자발적인 기금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자 지원 강화</li> </ul>
인권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기구, 옴부즈맨실, 인권연구와 훈련기관</li> <li>○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조정·이행의 중심적 역할 수행</li> </ul>
민간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단체, 풀뿌리조직, 전문가협회, 관심 있는 개인들의 능동적 참여</li> </ul>
UNHC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교육프로그램과 인권분야에서 공공정보화 프로그램 조정 책임</li> <li>○ 인권관련 정책과 행동의 우선순위 결정</li> </ul>
OHCHR 인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된 정책들의 실현 단위</li> <li>○ 유네스코와 논의, 정부들에 인권교육, 훈련, 정보, 특별장학기금, 자문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li> </ul>
UN 인권기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사항을 이행하는 동시에 인권교육 증진 장려</li> <li>○ 당사국 정부들과 인권고등판무관, 기타 인권교육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권고</li> </ul>
UNES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교육방법론·인권교육에 관한 오랜 경험</li> <li>○ 10개년 행동계획 프로젝트의 구상·이행·평가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li> <li>○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인권고등판무관, 인권센터와 긴밀히 협조</li> </ul>
기타 UN 전문기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능력이 충분히 동원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인권고등판무관과 함께 작업</li> </ul>
기타 국제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분야에 적극적인 정부간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li> <li>○ UNDHRE의 목적을 위해 인권고등판무관의 조정 이용</li> </ul>

#### □ 조정과 이행을 위한 구조(제27항~제28항)

- 각 나라의 조건에 따라 인권교육의 국가적 책임기관 마련
- 각국의 책임기관은 UNDHRE 이행과 인권고등판무관에 대한 보고의 책임을 짐
- 국가 차원의 인권연구 및 훈련센터 수립 및 강화

#### □ 이행 프로그램(제29항~제92항)

- ※ 인권교육 종합 실행계획을 위한 지침 참조

□ 세계적인 중간평가(제93항~제95항)

- 모든 참여자들은 각자 독립적인 평가와 활동에 기반하여 인권고등판무관에 정보 제공
- 특히 각 국가별 책임단위는 자국에 대한 상세한 평가에 기반하여 인권고등판무관에게 보고

□ 행동계획의 종결(제96항)

- 2004년 최종의 해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일반화가 성취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역량이 세계적으로 보증되어야 함

□ 후속작업(제97항~제99항)

- 인권고등판무관 책임 아래 인권교육 현황 최종 보고서 발간
  - 세계인권선언 보급 실태, 인권교육 교재의 수와 유형, 인권교육기관·센터 및 국가별 책임기관의 수, 인권교육을 교과과정으로 채택한 학교의 수, 전문분야와 비정규교육에서 차지하는 인권교육의 수와 종류 등
- UNDHRE 하에 구성된 구조와 네트워크가 항구적인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함
- UNDHRE 중에 개발된 인권자료의 재검토·보완·수정과 지속적 활용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유엔 가이드

## Abstract

: Guidelines for national plans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A/52/496, 1997. 10. 20.)

### 주요 목차

#### I. 서론

1. 인권교육의 정의
2. 인권교육의 필요성
3. 인권교육NAP의 필요성

#### II. 인권교육NAP 관리의 원칙

1. 일반 원칙
2. 조직과 실행의 원칙
3. 교육활동의 원칙

#### III. 인권교육NAP의 주요 절차

1. 1단계 : 인권교육 관련 국가위원회 설치
2. 2단계 : 기초조사의 수행
3. 3단계 : 우선순위 설정과 수요 집단 확인
4. 4단계 : 국가 계획의 개발
5. 5단계 : 국가 계획의 이행
6. 6단계 : 국가 계획의 평가와 수정

## 제1장 주요 전제

- UNDHRE는 정부, 국제적 정부기구, NGO, 전문가단체, 개인, 시민사회 부문 등의 협력을 전제로 함
  - 국가적 인권교육 전략과 이행계획은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개인 등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개발되고 이행되어야 함
- 실행계획의 5가지 목표
  - 수요 측정과 전략 수립
  - 국제·지역·국가·지방적 수준 각각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강화
  - 인권교육 자료 개발
  - 대중매체의 역할 강화
  - <세계인권선언>의 세계적 보급

## 제2장 인권교육 NAP 관리의 원칙

### 1. 일반 원칙(← 기본권에 해당되는 인권교육)

-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인권 존중과 보호를 장려
- 시민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권리, 발전권 등을 포괄하는 인권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보편성 강조
- NAP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 인권을 통합시킴
-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법의 지배, 환경, 평화 등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성 인식
- 인권침해 예방 전략으로서의 인권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
- 오래된 인권문제, 새로이 출현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분석 장려
- 인권보호를 위한 세계적·지역적·국가적·지방적 인권기구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이용방법 홍보
- 각 공동체와 개인이 자신들의 인권적 요구(need)를 이해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강화
- 지식, 비판적 분석, 실천방안 등을 포괄하는 교수법(pedagogies)의 개발
- 교재 연구와 개발 촉진

### 2. 조직과 실행의 원칙

-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다원적 대표성 확보
- 운영과정의 투명성
- 공적 책임
- 민주적 참여의 보장

### 3. 교육활동의 원칙

-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한 반대
- 비차별적 언어와 행동
- 참여적 교수와 학습
- 인권 기준을 일상생활의 행동으로 제시하기
- 트레이너에 대한 전문적 훈련
-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가적 역량과 전문성 개발 및 강화

## 제3장 인권교육NAP의 주요 절차

<b>1단계 : 인권교육 관련 국가위원회 설치</b>
-------------------------------

### 1. 잠재적 구성 범위

- 국가인권기구
- 인권 연구·훈련 센터
- 관계부처 대표(중앙 및 지방)
- 유네스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기구
- 인권 관련 그룹/조직(유니세프, 여성그룹·사회정의 그룹을 포함한 여타 지역사회 기반 조직)
- 국제 인권NGO의 국가지부
- 의회의 교육·인권·개발 관련 상임위 대표
- 노조와 전문가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핵심적 대표들
- 사법부
- 기업 부문

- 교사단체 및 노조
- 문화적·사회적 지도자, 지역사회 지도자들
- 청년조직(예: 연대 교육동아리 '열음')
- 소수자 집단
- 교육가 및 학자
- 대중매체 부문의 대표
-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대표
  - 유엔개발프로그램의 현지 대표, 유엔관련 정보/서비스센터, 난민고등판무관실 대표단 등

## 2. 구성 과정

- 임시 연락사무소 개설 또는 회의 주최자 선정
- 인권교육 분야에서 이미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기구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
  - ※ 국가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인권고등판무관실에 고지

## 3. 기능

- 국가적 실행방안의 개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짐
  - 기초 조사의 의뢰 또는 수행
  - 포괄적인 이행계획(목표, 전략, 프로그램, 재정 포함)의 형성
  - 국가적 실행방안 이행 촉진
  - 프로그램, 목표 달성수준 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후속조치
- UNDHRE 이행을 위한 매개 역할
  - 각종 정보와 지원의 전달 벨트이자 대외적 보고 담당

## 2단계 : 기초 조사의 수행

### 1. 조사내용

#### 조사 범위

- 모든 영역수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인권·민주주의 관련 교과과정
- 인권교육과 관련된 정부기구·비정부기구의 활동상황
- 인권존중과 이행에 관한 법적 기준
- 인권관련 핵심 문서 또는 인권교육 자료의 활용가능성(접근성)
- 인권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현황
- 인권일반 NAP, 여성·아동·소수자·선주민 등을 위한 기본계획들
- 극복해야 할 인권교육 장애물
- 인권교육 수요측정(자국의 인권문제, 새롭게 출현한 인권교육 수요 등 포함)

#### 탐구과제

- 잠재적 대상 집단은 물론 일반 국민의 인권에 대한 지식
- 인권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
- 주변화된 집단을 위한 인권교육적 접근
- 대중매체(텔레비전·라디오·신문·대중잡지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 2. 조사방법 : 정당성, 신뢰성, 객관성의 확보

- 인터뷰, 자료 수집과 설문조사의 병행
- 주요 관계집단(또는 국가위원회 멤버)을 통한 정보 습득

- 수요 측정을 위한 bottom-up approach(지방, 농촌지역 기초 교육 종사자들과의 지역 세미나와 워크숍, 이 분야에 종사하는 비정부기구 대표의 참여)
- 주요 인권협약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해당 위원회의 권고내용, 이행상황 점검

### 3단계 : 우선순위 설정과 수요집단 확인

#### 1. 기초조사 결과에 근거한 과제의 반영

- 단기, 중기, 장기 과제의 설정에 따른 우선 순위
- 긴급성, 기회라는 측면에서 판단

#### 2. 인권교육 수요 집단의 예

- 사법관리
  -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 공직자, 교도관, 판사와 검사 등
- 여타 행정부 및 입법부 공직자
  - 의회 구성원, 법률입안·정책집행 관계 공무원, 군인 및 안전요원, 이민·국경관리 담당 공무원
- 핵심 전문 집단
  - 교사, 사회복지사, 의료전문인, 언론인, 법률 전문가
- 일반 조직과 집단
  - 여성조직, 선주민 집단, 소수자 집단, 노조, 개발기구, 기업체, 노동자와 고용주 조직, 지역사회 지도자, 사회정의 실현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집단들, 종교 지도자
- 학교 부문
  - 아동, 청소년, 전문직업훈련생 등
- 기타
  - 난민, 추방자, 농촌·도시 빈민과 이들 가운데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 HIV/AIDS 환자·장애인·극빈층·노인과 같은 취약집단,  
수용자 및 기타 구금자, 일반 대중 등

#### 4단계 : 국가 계획의 개발

### 1. 구성요소

- 기초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요와 국가적 맥락에 부응하여 인권교육의 목표·전략·프로그램과 평가기제를 포함
- 전반적인 목적 또는 목표의 확인
- 일반 대중·공식 학교부문·특정 대상 집단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
- 전략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특수한 활동들 포함)
- 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한 단기·중기·장기적 조치
- 달성되어야 하는, 현실적으로 정의된 결과와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준
- 특별한 인권교육 기회
- 이행계획 실행과정에서 국가위원회의 역할
- 개인과 집단이 위원회와 접촉하여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
- 지방수준의 주요 인권교육조직을 위한 정보망

### 2. 목표

- 앞서 제시된 원칙(인권교육NAP관리의 원칙)에 상응하는 목표 설정

### 3. 포괄적 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

- 일반대중 의식 캠페인, 모든 수준의 공식적인 학교교육에 인권 주제의 도입, 인권교육 수요에서 특정화된 집단을 위한 주문형의 교육적 노력

#### 4. 일반 NAP, 여성·아동·소수자·선주민 등을 위한 기존 계획과의 통합성

#### 5. 프로그램

-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실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적 틀 (national-specific framework) 포함
  - 시행중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재구성의 대책 마련
  - 지방적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에 주력

#### □ 주요 절차적 요소

- networking support
  - 개인, 집단, 기관간의 실질적인(practical) 관계 또는 네트워크의 구축
  - 회합과 협력의 촉진
  - 유용한 자료와 경험의 취합 및 공유
  - 상호보충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 institutional/organizational support
  - 인권교육 훈련, 자료개발, 여타 교육수단 등을 촉진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개별 기관 또는 수행자의 체휴, 지원 등
  -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국가적 인권연구 및 훈련센터 설립(또는 강화)
    - 인권교육 프로그램 이행에 관심 있는 이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제공

• 센터가 이미 존재한다면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

- 센터가 없거나 UNDHRE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각국의 상황에 따라 (대학 또는 국가기관의 틀 속에서) 중심 구축

•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명확한 전달장치를 갖추는 일

### ○ 모든 수준의 공식 교육과 인권교육의 통합

- 취학전 교육에서 대학 및 그 이상의 모든 고등교육수준까지 핵심적인 인권 주제와 현안들이 프로그램·교육과정·절차에 포함되게

### ○ 수요 집단의 교육

- 인권교육이 요청되는 다양한 집단을 위한 통합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속적 시행
- 취약집단, 인권 옹호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집단, 분야별 인권의식과 실천을 증진시키는데 영향력 있는 개인/집단 포함

### ○ 대중적 의식 캠페인

- 대중매체, 비공식적 교육 기법, 현존하는 교육기관들, 비정부기구 네트워크 등의 활용
- 국제적 인권기준,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인권상황과 인권보호기제 등에 대한 인식과 이행을 촉진시키는 대중적인 또는 전문적인 접근

### ○ 교육 자료의 제작 및 수정

- 모든 수준의 문해력을 지닌 사람들,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핵심적인 국제인권문서의 축약판 및 인권 훈련자료를 자국

어로 개발

- 국제 인권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 자료의 내용 수정

○ 연구와 평가

- 효과적인 경험의 공유 및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평가

○ 법제 개선

- 기존 법제 검토 및 새로운 입법 등을 포함, 관련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개선 촉진(교사 자격 등)

## 6. 자원(resources)

NAP를 위한 재정 전략 개발

- 지방·국가·지역·국제적 수준 각각에서 기금 조성

- 국가적 기금에 대한 특별한 고려

제도적, 인적, 재정적 가용 자원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보충적 자원을 사적 부문과 기부자에서 구하는 방식으로

일단 계획이 광범위한 전문가 협의과정을 거쳐 전개되고 나면 계획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조직과 방식을 확정해야 함. 인권 그룹과 대학 교수들, 노조,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사이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함

<b>5단계 : 국가적 실행계획의 이행</b>
---------------------------

효과적인 이행은 국가계획의 신뢰성에 긴요

이행은 정책·법·기제·자원(인적 자원, 재정, 정보, 기술 등)의 상응을 포함한 수많은 수단들과 연계됨

나라마다 이행의 양상이나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권교육NAP 관리의 원칙'에 기초해야 함

## 6단계 : 국가 계획의 평가와 수정

### 1. 정기 평가와 수정

- 기초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을 위한 수정
- NAP 개시 1년후,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국가)위원회가 조직한 독립적인 평가자의 참여를 통해 수행
- 자기 평가와 독립적인 평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
- 기획과 현행 프로그램 이행이 갖는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이해,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위한 수정 등에 유용한 도구
- 평가내용은 데이터, 활용 가능한 인적·재정적 자원 등에 따른 조건의 차이, 문화적 맥락에 따른 교육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 태도변화나 기법 개발 등에 대한 평가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음
- 인권교육에 활용된 방법론이 참여적일수록 평가가 더욱 효과적인 경향이 있음. 따라서 각 나라별 프로그램에 적합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중요

### 2. 평가의 세 가지 영역

- NAP
  - NAP의 목표가 다음 사항들에 부합하는가?
    - 프로그램의 범위
      - data source : 현재의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NAP의 목표의

## 비교

### - 프로그램의 효율성

- 대중 의식, 초중등·대학·전문/기술 교육 등 모든 수준의 교육, 인권교육 수요 집단 등의 영역에서 효율성 평가

○ NAP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권 혹은 인권교육 영역에서의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 data sources : 최근의 인권 보고서, 새로운 법제도나 법원 판결, (잠재적) 인권교육 보급자·협력자와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지방적·국가적·지역적·국제적 사건 등

## □ 이행 프로그램

○ (대중의식 캠페인 등) 프로그램의 다양한 영역이 (비차별, 적극적 조치 등) 포괄성 기준에 부합하는가. 프로그램이 대상 청중의 최대한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련 부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력·가시성·추진력을 지닌 핵심 집단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는가?

### - 1차적 지표 : 확산(outreach) 기제와 횟수

- 공공 확산 : 신문 구독, TV 시청, 라디오 청취(논문, 프로그램, 광고 캠페인 등 포함), 포스터와 예술 프로그램과 같은 전시의 이용 등
- NAP와 관련된 핵심 지도력에 대한 확산. 대중매체, 교육 당국, 정부 관료, 사회정의 그룹, 훈련가 등 포함
- 특화된 영역에서의 확산
  - 저술 : 전문가용 신문 및 잡지의 독자층(수), 특정 정보 브로셔의 보급, 의식강화 및 훈련에 사용된 교재 등

- ▶ 강연 : 의식 강화 및 교육·훈련 활동 참여자
- ▶ 기타 : 포스터, 비디오 등의 시각 교재 보급
- 2차적 지표 : 기대 수치와 실제 도달한 수치의 비교
- 3차적 지표 : 향후 프로그램, 핵심 주체와의 관계 등에 기초한 보다 폭넓은 확산 계획
- 국가적 차원의 인권존중과 보호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해, 태도/가치, 기법/행동 등을 학습자에게 교육하는 데 프로그램이 효과적인가? (가능한 data sources)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전/사후 조사
    - 일상생활과의 상관성을 포함한 인권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지식과 태도
      - ※ 모든 참여자를 대상한 조사가 여의치 않다면 통제집단과의 비교방법을 포함한 무작위 표집으로도 가능
  - 참여자와의 개별적 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 인권에 관한 지식과 태도, 참여했던 권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인권 원칙의 적용을 위한 계획 등
    - 위 주제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인터뷰를 포함, 교육의 영향에 대한 장기적 데이터 수집
- 프로그램의 지속성
  - 인권교육 프로그램 전략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유지되는가
    - 직접적 형태 : 스탭진이 직접 수행하는 훈련활동
    - 간접적 형태 : 스탭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훈련활동

- 인권교육 전문가들이 확장되고 있는가
  - 주요 지표 : 향후 프로그램 계획(확산 관련 횟수와 테크닉, 재원 등), 향후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인권교육 전문가의 기간요원, 지역적 확산 프로그램, 타 집단과의 네트워킹 및 협력
- 프로그램이 제도화 되었는가
  - 주요 지표 : 모든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에 인권 포함, 국가적 수준의 인권 연구 및 훈련센터 설립과 작동

#### □ 국가 위원회의 기능

- 국가위원회가 국가적 실행방안을 시의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전개해왔는가? (기초조사 의뢰, 국가적 목표와 전략 및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등의 설정)
  - 주요 자료 : 위원회의 핵심 멤버와의 인터뷰, 추진일정계획과 (가능하다면) 실제 달성 시기와의 비교
- 주요 주체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성공적이었는가? (정부기관, 정부기구간 조직, 비정부기구, 전문가 협회, 개인, 기타 시민사회 그룹 등)
  - 주요 자료 : 국가위원회 멤버, 협력 기관의 지도자, 비협력 기관의 지도자 등과의 인터뷰
- 국가실행방안의 수행을 위한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적이었는가?
  - 지표 : 국가위원회 자체가 정부기구, 비정부기구의 대표성을 띠 수 있게 구성되었는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행에서 핵심적인 기관으로부터의 지원과 보증, 정부·당국·후원기관·협력중인 정부기구간 조직과 비정부

## 기구들의 공헌 방식에서의 기금 또는 지원

유엔 인권교육 10개년계획 사후조치 연구  
(E/CN.4/2003/101)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E/CN.4/2003/101  
28 February 2003

Original: ENGLISH

E

**COMMISSION ON HUMAN RIGHTS**

**Fifty-ninth session**

**Item 17 (c) of the provisional agenda**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EDUCATION**

**Study on the follow-up to the United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8, section B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208, the present report is being submitted in February 2003 so as to  
include as much updated information as possible.**

GE.03-11329 (E) 060303

## Executive summary

The present report i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7 of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2/74. In that paragraph, the Commission requested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develop and submit to the Commission at its fifty-ninth session a study on the follow-up to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including, inter alia, possible means of strengthening human rights education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s well as the elaboration of the concept of a series of intersessional workshops to take place in 2003/2004 to address major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issues. This report presents the findings of a series of activities organiz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in this regard.

## CONTENTS

Paragraphs	Page
I.	INTRODUCTION 1 - 5 4
A.	Background information 1 - 3 4
B.	Preparation of the report 4 - 5 4
II.	FOLLOW-UP TO THE DECADE: POSSIBLE ACTION 6 - 30 5
A.	International level 8 - 16 5
(a)	Follow-up initiatives 8 - 13 5
(b)	Further use of existing human rights mechanisms 14 - 15 7
(c)	Contribution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16 7
B.	Subregional and regional levels 17 - 21 8
C.	National and local levels 22 - 29 9
D.	All levels 30 10

i. introduction

A. Background information

1. At its fifty-eighth session,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paragraph 17 of its resolution 2002/74 of 25 April 2002, requested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develop and submit to the Commission at its fiftysession, in cooperation with all relevant actors and without financial implications, a study on the follow-up to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including, inter alia, the following issues:

(a) Possible means of strengthening human rights education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b) Elaboration of the concept of a series of intersessional workshops to take place in2003/2004 to address major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issues, inter alia the question of assessing the impact of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and criteria for "best practices"; the contribu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to the mainstreaming of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to the work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development agenc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 and the role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combating racism a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intolerance, and specifically in promoting religious tolerance.

2. This report presents the findings of a series of activities organizedby the Office in this regard, as detailed in section I.B below. A separate report on recent activities undertaken by various actors within the Decade, as requested by paragraph 18 of the resolution mentioned above, is also before the Commission (E/CN.4/2003/100).

3. It is important to stress that the global mid-term evaluation of the Decade, undertaken by the Office in 2000, reviewed the experiences of the first five years of the Decade and made overall recommendations, as well as recommendations for action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with a view to further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remaining years of the Decade. Many of those recommendations, which are contained in the report

A/55/360, are also relevant for the follow-up to the Decade, an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formulating policies for the future.

## B. Preparation of the report

4. The process of preparation of this report has benefited from the following:

(a) Correspondence. In October 2002, the Office sent notes verbales and letters to Governments, national institutions and chairpersons of the treaty bodies; the letter to national institutions was also posted on their international web site, which is sponso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s of 31 December 2002, seven Governments, one chairperson of a treaty body and three national institutions replied.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were also invited to provide written comments. As of 31 December 2002, one organization had replied:

(b) Consultative meeting wit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November 2002,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rganized and hosted a meeting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which 13 organizations were represented. The agenda of the meeting included the follow-up to the Decad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t the subregional and regional levels and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as well as ideas to mark the conclusion of the Decade in 2004; and

(c) Online forum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rom 18 November to December 2002,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rganized and funded the setting up of an online forum within an e-mail network of human rights educators and other interested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a human rights education listserv, managed by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The agenda of the forum included follow-up to the Decade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at the subregional and regional levels; and at the international level.

5. Some of the answers received through this process have conveyed information on past or current activities of the respondents. This information is beyond the scope of this report, and will be included in the nex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on the Decade to the General Assembly which focuses on activities undertaken by various actors within the Decade.

## II. FOLLOW-UP TO THE DECADE: POSSIBLE ACTION

6. Any consideration concerning the follow-up to the Decade must build necessarily on the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of the Decade and lessons learned from it (in terms of structures and legislative frameworks developed, the status of its implementation, as well as shortcomings and remaining needs). An analytical treatment of these aspects has been provided in the already mentioned report on the mid-term global evaluation of the Decade (A/55/360): the information collected for preparing this report mostly reiterated the findings highlighted there, and further elaboration of those findings is beyond the capacity of the current exercise.

7. Accordingly, this section only aims at highlighting practical courses of action for the follow-up to the Decade at the international (sect. II.A), subregional and regional levels (sect. II.B) and national and local levels (sect. II.C), as well as some priorities for all levels (sect. II.D) formulated by the Decade's actors on the basis of their related experience and gather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through the process described in Section I.

### A. International level

#### (a) Follow-up initiatives

##### 1. A second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8. The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has been mainly described as a useful anchor/umbrella and catalyst mechanism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e focus of its last years, for all partners, should be to institutionalize its achievements and share the "good" practices. A final evaluation of the Decade, based on clearly defined indicators, should be conducted, possibly through regional consultations; the evaluation would stress what has been achieved and what is still to be done.

9. The input received by the Office has strongly affirmed the importance to continue the decade framework, considering that human rights education is a long-term process. A second decade would:

- provide a sense of common collective vision, goals and action, as well as an opportunity to increase partnership at all levels;

- provide international support for regional and national programmes created in line with the first Decade, an incentive to continue them and to start new ones;
- represent the commit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continue to pursue human rights education;
- be an acknowledgement of the work that has been accomplished for those who have been supporting the first Decade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extend their programmes to other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 provide Governments which have not given attention to human rights education the opportunity to start programme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and institutions;
- constitute a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2001), given the role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preventing discriminatory attitudes and behaviour, combating bias and prejudices and appreciating cultural diversity;
- ensure some focus at the international level on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funding for some related activities.

10. A second decade would need to be properly structured, also through the organization of regular periodic events to create momentum and continuity. Adequate resources should be allocated to it. An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should be formulated in realistic terms, with an indication of at least minimum action for each country accompanied by indicators for evaluation of success; consultations at all levels, including regionally, should take place in the elaboration of the plan. A regular reporting system by Governments should be envisaged. Finally, the adoption of a second decade should promote human rights education as a cross-cutting undertaking and not lead to its isolation.

## 2. A fund for human rights education

11.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fund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particular, for civil society's activities) has been highlighted by many actors, keeping in mind the usefulness of the (Assisting Communities Together) Project, which provides grants to grass-roots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and is administered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Such a project could be expanded to involve other United Nations organizations.

12. The ACT Project and funds administered by the United Nations (such as the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could provide guidance and inspiration for the setting up of the fund for human rights education, which should not be necessarily limited to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ppropriate funding approaches, linked with public information and advocacy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for instance in partnership with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for Public Information. Also, if such a fund is established, it would be important to include mechanisms to evaluate and follow up on granted projects.

## 3. Other suggestions

13. Other suggestions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governmental or of a joint governmental/non-governmental committee, including major human rights education actors, to develop both monitoring systems and ongoing assess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effor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a specific normative instrument, i.e. a treaty, focusing on human rights education.

### (b) Further use of existing human rights mechanisms

#### 1. Treaty monitoring bodies

14. The potential of the treaty monitoring system in advanc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particular through the treaty bodies' review of country reports, could be maximized. Nonorganization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when they exist, should be more involved in this

process, and could coordinate their efforts in publishing reports on human rights education as a tool of cooperation with their Governments and with the exist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mechanisms. Treaty bodies could also consider adopting additional general comments concerning various aspects of human rights education, as appropriate.

## 2. Extra-conventional mechanisms

15. The mandate and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should fully include human rights education. In addition, all mandate-holders of country or thematic mechanisms could regularly encourage human rights education efforts through their activities and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in the framework of their field missions,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 and highlighting relevant recommendations of treaty monitoring bodies.

### (c) Contribution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16. The contribution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 particular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could be enhanced along the following lines:

-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looked at as part of any rights-based programming of United Nations agencies, and could be addressed in that framework;
- training of United Nations staff (both in the field and at Headquarters, in particular those involved in human rights promotion) should include not only human rights education content (i.e. human rights standards and mechanisms) but also human rights education methodologies. Production of materials for human rights training of United Nations staff is a priority, due to limited resources for organizing training courses;
- United Nations Country Teams should work more closely together in assisting national actors in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 human rights education component within their national human rights plans, as well as, when applicable, a specific national plan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Such assistance could be offered and enhanced in the framework of respective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s;

- financi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oth at their headquarters and at the regional/national level, should be more involved in supporting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s; and
- OHCHR should play a clearinghouse role for other actors wishing to develop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materials and programmes; it should expand its role as a depository of good practices, methodologies and programmes in human rights education that exist worldwide, including those by Governments, and share them. The Office could also encourage Governments to develop such programmes as well as advise them in their implementation.

#### B. Subregional and regional levels

17. Some actors hav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devoting adequate resources to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at the subregional and regional levels as a means to strengthen capacities at the national level: regional strategies can support national 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nsistent approaches for Governments and intergovernmental agencies.
18. Existing frameworks for regional cooperation among various actors offer valuable opportunities to highlight human rights education in policy-making. This would include meetings among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e. the Tripartite Meeting between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mong Governments (such as those organized by the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with heads of curriculum development departments or institutes of Member States, or those organiz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within its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as well as among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19. Regional and subregional workshops facilitate active cooperation between all actors and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ools of trainers.

Workshops on material development can facilitate th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materials as well as those from other regions, if appropriate. All these activities, as well as regional campaigns, should thus be encouraged. Workshops could include those actors who work in the non-formal educational system, as well as religious communities.

20. Regional offices or presences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s, as well as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could be main actors in bring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Governments' agendas and in monitoring government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education commitments.

21. Regional institut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are being developed on all continents in order to provide training to human rights educators or other actors, such as community leaders, who can then develop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s in their communities. Such efforts should be sustained.

#### C. National and local levels

22. Close cooperation between State and non-State actors should be promoted: solid partnership should be established among government agencie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all these sectors should be involved in planning and strategizing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ir staff participating as facilitators and trainees. The development of multi-actors platforms for human rights education was considered the best approach.

23. The Plan of Action of the Decade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at the initiative of Governments or other relevant institutions, of national committe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which should include a broad coalition of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ctors and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effective and sustainable national plan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Such plan could constitute a part of the overall national plan of action for human rights, when applicable, and should be complementary to other action plans such as those relating to discrimination and racism, children, indigenous peoples, etc. According to the feedback received, such a course of action is

considered useful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should be still strongly encouraged after the Decade is over.

24. As far as the educational system specifically is concerne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constitute the basis for the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systems in the context of national education reforms with a view to integrating the learning and practice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Education for All" plans (Ministries of Education). The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UNESCO) could collect and disseminate information and data on these efforts.
25. The importance for Governments to ratify international or regional treaties, which also include human rights education among their provisions, was pointed out. Concerning treaties already ratified, the need was stressed for human rights education specialists at the national level to work closely with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o support Governments in their reporting obligations concern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to disseminate relevant treaty bodies concluding observations and follow-up on the recommendations.
26. It was also highlighted that States could progressively increase the incorporation of obligations and principles about human rights education in special laws on education and other related laws, as well as the passing of specific laws in this area, with a view to design or reformulate public policies to be implemented by means of national plans and budget allocations. Such a process of progressive enrich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could also be undertaken by means of constitutional reforms that facilitate the processes of adjusting national legislation to incorporate international instruments.
27. It was stressed that a useful course of action for planning and evaluating human rights education efforts at the national level could be the organization of public inquiries to find out people's understanding and opinions about human rights. Such surveys would entail a discussion on what constitutes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for actors and beneficiaries of human rights education.

28. Support for national activities could be sought, when applicable, through the United Nations country teams.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s of United Nations agencies could be availed of by Governments in supporting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29. Specific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local level, such as municipalities, cities, also through the Advisory Committee of National Associations of Local Authorities. Human rights training of local administrators should be promoted.

#### D. All levels

30. Some courses of action were repeatedly mentioned as deserving priority attention at all levels; they are briefly summarized below.

- Training of educators and trainers: Training efforts at all levels should aim at reaching primarily those who are (or have a potential to be)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both as educators (from teachers to trainers of professional groups to member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s human rights education process managers (officials from Ministries of Education, member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tc.). Their training should be comprehensive, based on their specific function; it should not only include human rights standards and mechanisms of protection but also a range of skills for organizing and delivering educational activities such as needs analysis of the target group (including their broad context), curriculum/lesson/workshop design, active teaching/learning methods, selection of appropriate materials and activities and development of materials;
- Specific target groups: While priorities have to be set depending on local needs, some groups have been repeatedly mentioned by many actors as particularly in need of human rights education, i.e. government officials (in particular those working in education and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 media and the business community; and

- Evaluation of impact: Many actors have stressed the need to develop quality indicators for measuring impact of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and evaluation systems; it was considered essential to support research in this area. In particular, it was considered useful to conduct quality evaluations to examine how effectiv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s have been in the long term: how people's lives or school environments changed, how behaviours have been affected.

-----

**MEMO**



**MEMO**



**MEMO**

